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2017. 11.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2017. 11.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11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대표 이동범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이동범(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대표)

□ 참여연구원

연구원 류호철(안양대학교 교수, 문화재 정책 전공)

연구원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 이진수(아이앤아이리서치 수석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조대호(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최효진(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순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자문위원

장호수(前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심정보(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명예교수)

서병선(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박동석(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장)

이민우(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요 약

1) 문화재 활용 환경과 과제

(1)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 한국문화재단 민간위탁, 재현요소를 중점 활용(수문장 교대의식 등), 문화유산 활용의 대표콘텐츠로 자리매김.
- 궁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궁궐 특성별 활용전략 수립을 통한 궁궐별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궁궐 일대를 경복궁-청와대 연계 오픈하우스, 광화문종 제 자리찾기 등 문화유산 광장화 추진 필요.

○ 지역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 지역일반문화재 활용(생생문화재), 테마 문화재 활용(향교서원, 전통산사), 야간 문화재 연계형 활용(문화재야행) 등 요소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
- 지역 문화유산 활용은 궁궐에 비해 콘텐츠가 풍부하여 확장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역활성화에 연계 가능함. 또한 민간 활용시장도 점진적으로 증진되는 추세.
-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화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활용사업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활용사업의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
- 활용단체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기초연구개발, 활용단체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을 추진, 이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필요.

○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

- 문화재청의 타 부서에서도 각각의 업무특성에 따라 활용사업 추진.
- 대부분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나, 발굴현장·수리현장이나 무형문화재를 통한 활용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은 민간과 관련부서가 결합된 형태로 추진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 정책에서의 문화재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문화재를 보존에 대한 개념 없이 소재로만 활용. 타 부처가 관광산업 등 특정 목표에 따라 문화재를 소재로 활용할 때, 훼손이나 왜

꼭된 활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향후 문화재청에서는 보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타 부처에서의 문화재 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

(2) 문화재 활용 성과와 과제

-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 개방·공개 확대, 활용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대 등.
- 양적 성장과 가치 확산 : 관람객 등 수요자의 증가, 지역 문화재 활용 추진.
- 문화재 활용 기반 구축 : 민관 협력체계 구축, 콘텐츠 및 정보기반 마련 등.
- 활용의 한계와 과제 :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활용, 문화재 유형 및 지역간 불균형, 관이 주도하는 활용 등

(3) 문화재 활용 환경

- 활용을 통한 보존의 인식 : 활용이 보존에 주는 효과는 세계적으로도 입증, 정기적으로 활용할수록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문화재.
-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 :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가치 재인식, 문화재 향유 욕구 및 활용 수요, 문화재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국내 문화재 활용 시장의 형성 : 국민의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문화재 활용 전문 영리기업의 탄생, 활동하고 있음.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총 36개 업체('17년 기준)
- 산업환경의 변화 : 기존 고부가가치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위기로, 대안으로 콘텐츠 산업이 제시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문화유산 활용산업이 각광받는 추세.

(4) 문화재 활용 법령과 정책 현황

- 해외 활용 정책(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 활용정책 등)
 - 문화재 복원, 유지는 비용적 측면이 관건인데, 문화재 활용을 통한 비용창출로 해결함. 복원비용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
 - 지자체 정책으로 문화재 활용은 지역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함.
- 국내 유사입법례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활용의 근간이 되는 법령으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활용진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개정

필요.

2)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문화재보호법 개정)

(1) “문화재 활용”의 정의조항 신설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⑧ 생략 ⑨ 이 법에서 “문화재활용”이란 문화재보존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

개 정 안
제00조 (문화재활용계획의 수립과 기초조사) ① _____은 문화재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재활용기본계획(이하 “활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_____은 문화재활용의 현황, 실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③ _____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문화재활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_____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초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개 정 안
제00조 (문화재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_____은 문화재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_____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

개 정 안
제00조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
① _____은 문화재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활용 지원
2.
3.
② 지원센터에는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문화재청은 연합회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

개 정 안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문화재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개 정 안

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활용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문화재활용 촉진사업
2. 문화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문화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단체의 육성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문화재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6)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

개 정 안

제00조(문화재활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지원)

① _____는 문화재활용을 위한 교육콘텐츠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_____은 관련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_____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 2.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1)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과 경제효과 분석

-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 중 본고에서 제안하는 기초연구개발 등 4가지 항목에서의 10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36,294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산출하였음.
- 문화재 활용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화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예산과 연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재 활용 활성화사업으로 36,294백만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안정화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초 연구 개발	정례 활용연구 사업 추진	문화재 특성별 연구	1,700
		활용정책 및 활용활성화 연구	400
	다각적인 모니 터링과 컨설팅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 관한 모니터링	800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595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 화	연계문화재 신규브랜드 개발	1,000
		대표문화재로서의 '궁궐' 브랜드화	1,000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1,000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개별 이야기발굴과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12,240
		'히스토리 호텔스 오브 코리아' 전통숙박시설 가맹계 약사업	
		역사도시조성과 역사관광지구 설정, 지역재생 연구 방안 마련과 추진	2,068
전국 문화재 자가체험 활성화	300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200		
육성 사업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		1,066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사업 추진		1,225
지원 조직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운영 지원		1,000
교육 콘텐츠 마련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방안 마련과 추진		3,400
	생애주기별 문 화유산 교육개 발 지원	학교 문화재 교육 지원	1,100
		시민 문화재 교육 지원	800
		교수법, 교과목, 교구 개발 등 문화재 교육에 필요한 연구지원	3,400
	문화재 콘텐츠 확충		3,000
합계			36,294

제안사업 투입시 파급효과	총 사업비 (백만원)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수입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36,294	68,423	6,489	28,948	888

(2)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문화재 활용 시장규모를 추정 데이터인 통계데이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여 정밀한 수준의 측정이 어려움. 게다가 일부 통계수치에 오류가 발견되어 가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효과를 예측할 수 밖에 없음.
- 향후에는 제반 통계적 수치를 정밀한 수준으로 수집하여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함.

- 본고에서는 문화재 활용 시장규모의 측정 근거지표로서 관람객 수와 관람객의 지출액, 문화재 활용 주관단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할 것이다. 이밖에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문화재 활용사업의 관련 매출액을 합산한 결과 859,816백만원이 산출되었음.

구분	추정 매출액	소계(백만원)
직접매출	관람객의 연간지출예상	368,349
	문화재청 활용사업규모	68,667
	문화유산 활용단체의 총 매출	18,000
	타부처의 활용사업(문화체육관광부)	404,800
총계		859,816

-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시장 형성단계로 보고 있으나, 사업이 안정화되어 직접매출과 간접매출로서 약 859,816백만원의 사업규모로 정착된다면, 1,620,98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53,745백만원의 수입유발효과, 685,787백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1,042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수입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합계	1,620,985	153,745	685,787	21,042

목 차

요약문	5
-----------	---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18
2. 문화재 활용의 의미	18
3. 문화재 활용정책의 효과와 방향	26
4. 연구 방법	39

제2장. 문화재 활용 환경과 과제

1.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42
1)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42
2) 지역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47
2-1)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50
2-2) 향교서원 활용사업	60
2-3)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67
2-4) 문화재 야행 활용사업	69
3)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	73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 정책에서의 문화재 활용	77
5)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활동 현황	80
2. 문화재 활용의 성과와 과제	83
1)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83
2) 양적 성장과 가치 확산	86
3) 활용 기반 구축	89
4) 문화재 활용의 한계와 과제	91

3. 문화재 활용 환경	95
1) 활용을 통한 보존의 인식	95
2)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	99
3) 국내 문화재 활용 시장의 형성	101
4) 산업환경의 변화	104
4. 문화재 활용 법령과 정책 현황	105
1) 문화재 활용 분석의 필요성	105
2)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분석	105
3) 해외 문화재 활용 정책 사례	112
4)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국내 법령과 유사입법례의 분석	135
5. 문화재 활용 개선을 위한 과제와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139
1) 활용 법령 개선 방향	139
2) 문화재 활용의 정의 이해가 갖는 중요성 인식	140
3)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의 필요성	142
4)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문제	143
5)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의 필요성	143
6)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144
7)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의 필요성	144

제3장.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1. “문화재 활용”의 정의조항 신설	148
1) 개정이유	148
2) 현황 및 문제점	149
3) 주요 개정 내용	150
4) 조문대조표	152
5) 기대효과	152
6) 그 밖의 참고사항	153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	157
1) 개정이유	157
2) 현황 및 문제점	161
3) 주요 개정 내용	163
4) 조문대조표	163
5) 기대효과	164
6) 그 밖의 참고사항	165
3.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176
1) 개정이유	176
2) 현황 및 문제점	177
3) 주요 개정 내용	181
4) 조문대조표	183
5) 기대효과	183
6) 그 밖의 참고사항	184
4.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	210
1) 개정이유	210
2) 현황 및 문제점	210
3) 주요 개정 내용	211
4) 조문대조표	211
5) 기대효과	212
6) 그 밖의 참고사항	213
5.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	218
1) 개정이유	218
2) 현황 및 문제점	219
3) 주요 개정 내용	219
4) 조문대조표	221
5) 기대효과	222
6) 그 밖의 참고사항	223

6.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	228
1) 개정이유	228
2) 현황 및 문제점	232
3) 주요 개정 내용	233
4) 조문대조표	234
5) 기대효과	234
6) 그 밖의 참고사항	236

제4장.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과 경제효과 분석

1.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246
1) 개요	247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제안	250
3) 활용단체와 인력 육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 제안	259
4)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제안	271
5) 교육콘텐츠 마련을 위한 사업 제안	272
6) 제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76
2.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78
1) 문화재 활용사업의 시장규모 추정	278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84

제1장. 연구 목적과 방법

1. 연구 목적

- 1) 문화재 활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적 문화재 활용 정책방향을 마련한다.
- 2) 문화재 정책을 보존중심에서 보존과 활용의 통합적 인식하에 추진될 수 있는 선진화된 정책환경을 조성한다.
- 3)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조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2. 문화재 활용의 의미

1) 문화재를 보호하는 목적

(1)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

-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한국인이 예부터 한반도에 거주하였을 때부터 지내왔던 모습이나 행위를 원형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문화재를 보호하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여기에 대해 언급된 「문화유산현장」(1997)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라고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현장에는 원형 그대로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2)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위한 문화재 보호

-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법령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는 이유는 과거의 문화를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2) 문화재를 활용하는 목적¹⁾

(1) 문화재의 가치 인식 및 보호 필요성 인식 증진

-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에 담긴 다양한 가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리고 나누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재 활용을 통해 해당 문화재가 갖는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 활용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 인식이 높아지면 그러한 가치를 갖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크게 느끼게 된다.
- 결과적으로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의 가치와 문화재 보호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여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얻게 해준다.
- ‘문화재 활용 활성화 → 문화재의 가치 공유·확산 → 문화재 보호 필요성 인식 → 문화재 보존 강화 → 문화재의 가치 증진 → 문화재 활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보존과 활용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

(2) 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보존활동 강화

- 문화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보존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과 많이 지나다니는 곳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문화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문화재는 해당공간의 역사적 중요성과 관계없이 훼손·방치될 것이며,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으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게끔 하면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실내외를 깨끗이 쓸고 닦는 것부터 시작하여 문제시되는 보수사항을 점검, 수리하기도 용이해진다.

1) 류호철, 2017, 「문화재 활용, 새로운 정책 방향」, 1~6p 참조.

- 무형문화재 또한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 보존회에서는 꾸준히 방문하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옛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연습과 전수,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또한 활용을 하게 되면 흥행성 공연과 연출을 위한 재창조, 재해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든다.



그림 1 인적이 많아 깨끗이 관리되는 도로(좌), 인적이 드물어 너저분한 뒷골목(우)



그림 2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문화재(경남에 소재하는 모 서원)



그림 3 사람들을 맞이하는 문화재,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보수를 하는 문화재(밤가시초가)



그림 4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화재를 깨끗이 정돈하고, 문화재 안에서 체험하는 모습(밤가시초가)



그림 5 활용프로그램으로 문화재 내외부가 깨끗이 정돈된 서악서원

○ 문화재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행위는 세계적인 추세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관리하는 고택 등에 관광객을 맞이하고자 원형수준의 정비와 함께 정기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이때 관광객을 맞이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은 보존활동비로 사용되어 더욱 완벽한 수준의 복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활용과 보존활동을 담당하는 직원 채용도 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²⁾
- 문화유산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관광객에게 ‘옛 모습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부분까지의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활용을 통한 보존 정책인 ‘프리저브 아메리카(Preserve America, 행정명령

2)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2016년 총 수익 522,165천유로 중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350,822천유로(67.18%)를 지출했고,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직원은 2009년 4,938명에서 2016년 6,211명으로 증가했다.

13287)’의 주요 조항으로서 「문화유산 관광을 통한 보존 진흥」(Promoting Preservation Through Heritage Tourism, Section. 5.)이 있으며, 이 법안의 슬로건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즐겨라!(Explore and Enjoy Our Heritage)”라 하여 활용과 보존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이 법안으로 지역 문화재 활용과 보존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화재에 담긴 기록물을 재현하는 행위도 보존적 효과

- 문화재에 담긴 기록물을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보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화재에 담긴 내용들을 재현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문 연구자들에게만 공유되는 것으로 그쳐질 것이다. 그러나 재현을 하면 기록물에 있는 것을 상세히 검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현실적 고증을 거치는 보존적 효과를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콘텐츠의 창출도 가능케 한다.
- 예를 들어, ‘정조대왕 능행차’로 유명한 행렬은 재현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연구자들에게만 기억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나, 이를 재현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었다. 정조대왕 능행차 추진단³⁾은 원형재현 복원하고자 이 내용의 추진근거가 되는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의 내용 중 행사 준비물과 참여 인력, 참가자들의 복장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았고,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정조대왕 능행차가 기록물 밖으로 꺼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이며, 나아가서는 능행차가 축제화 되어 국내외 관광객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이 재현 자체가 사진·영상 등 이미지로 새로 기억·저장되며, 보다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관련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3)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운영사무국



그림 6 노량주교도섭도를 원형 재현한 모습(2017 정조대왕 능행차)

○ 문화재 활용은 보존과 결합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보존과 결합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을 일반적 축제형식 등으로 진행한다면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굳이 문화재청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 보존과 개발은 상충되지만, 보존과 활용은 상충되지 않는다.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위에서 이루어지며, 문화재는 활용을 해야 제대로 보존이 된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은 항상 보존과 같이 결합된 형태 속에서 진행된다.

(3) 문화재에 담긴 가치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성과가 축적·공유되고 있으며,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지정·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 분류 및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이 문화재의 연구성과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경로는 많지 않다. 유적지, 박물관 등에 있는 안내판 또는 해설사의 해설이 전부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재 안내판은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문화재 안내판을 보며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생생문화재 등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

- 우리나라는 1950년대 전쟁의 피해를 겪어 최빈국 수준이었던 적도 있으나, 국가GDP 1조 4,981억달러의 규모로 세계 12위 수준(2017년 기준)의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 문화재는 전통적인 풍경과 녹지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한다. 또한 우리에게 문화재 속에 담긴 고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준다.

(5) 문화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활성화

- 문화재 활용은 시대상을 반영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된다. 전통공예는 생활공예와 결합하거나, 전통공연요소는 현대적인 퍼포먼스와 결합하는 무형문화재의 사례를 여럿 볼 수 있다.
- 문화재 활용으로 관광 등 부가가치를 얻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보존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한다.

보호 필요성 인식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보호해야하는 필요성도 느낌 •활용을 통한 보호의 강화는 또다시 활용활동으로 선순환
보존활동 강화	•문화재를 이용, 재현하는 것만으로도 보존에 긍정적 영향 •문화재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영국, 미국 등)
가치의 효율적 전달	•문화재는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를 활용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
문화 향유	•경제적 발전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 •문화재의 아름다운 경관과 고유의 이야기 등 전달
부가가치 창출	•시대상을 반영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로 재생산 •관광 등 부가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표 2 문화재를 활용하는 목적

3) 문화재 활용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1) 문화재 보존 정책의 한계 극복

-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기 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보존관리분야에 주력하여왔다. 2000년대 이후 문화재의 효율적 활용 대두로 국민의 활용과 보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었다. 한편 보존 중심의 정책은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 제고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유주 및 지역주민들에게 적대적 반감을 고취시킴에 따라 보존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요하게 된다. 세계기준에서는 활용을 통한 교육과 향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보존의 이유이자 중심가치임을 들어, 보존과 활용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2)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의 문화재 활용 사업의 대두

- 새로운 산업 흐름, 즉 문화산업, 콘텐츠 및 관광산업 등의 발달로 인해 문화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영역이 대두된다. 문화재청은 활용을 통한 보존활동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한국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활용정책과 신설(2005년), 문화재활용국을 개편(2009년)하고 다양한 활용사업을 실시한다.

(3) 문화재 유형과 특성에 맞는 문화재 활용정책 필요

- 문화재는 시기별, 유형별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활용정책은 문화재 유형과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하였다. 활용 목적과 활용 형태, 활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향의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국민이 문화재를 바라볼 때 ‘박물관의 유물’처럼 ‘관람만 해야하는 대상’이 아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문턱을 보다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4) 그동안의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 활용 고도화

- 특히 2000년대 들어 문화재 활용은 점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

이 역사·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당한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조선 궁궐과 고도(古都) 문화재에서 나아가 근대건축물, 향교·서원, 전통 산사(山寺), 민속마을 등 주요 지역 문화재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문화재 활용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재 자체의 가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활용 방법 다양화, 지역 간 평준화, 문화재 유형 간 균등화, 의미와 가치 중심 활용 강화, 지역과 민간 역량 강화’ 등 하위 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함으로써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점에 있다.
- 그동안의 경험을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한 새로운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문화재 활용을 한 차원 고도화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3. 문화재 활용정책의 효과와 방향

1) 문화재 활용정책의 효과

(1) 문화재의 문턱이 낮아지다

-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재는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서 관람만 하는 ‘재미없는 존재’였다면, 현재는 문화재를 통해 공연도 보고 체험을 즐기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문화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고, 문화재 관람인원과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증가하는 등의 활성화가 있었다.
- 또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화적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에서는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개발하며 운영하여왔다.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어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등과 연계되었다.

(2) 문화재 활용 사업의 성장과 활용 효과의 입증

-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문화재 관람객 등 수요자의 증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재 활용 사업의 기반이 갖추어진다.

-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상향되고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의 수익은 2012년 약 37억원에서 2016년 약 384억원으로 급증하였다.
-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문화재가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의 발굴과 탐방루트 개발 등의 활용 시도도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로 작용하였고, 이에 지역 문화유산 활용이 점차 증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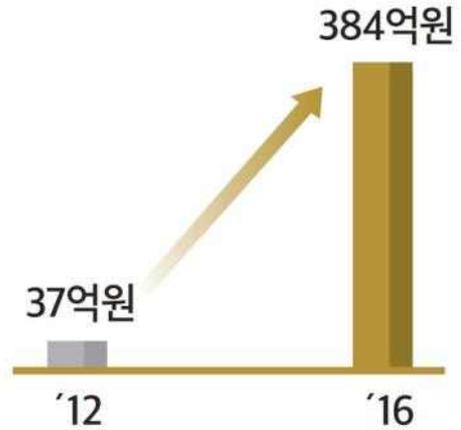


그림 7 생생문화재 사업 등 활용사업의 경제적 성과(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17~'21)



- 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문화재 발굴 통한 활용 극대화
- ②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의 발굴과 탐방루트 개발을 통한 활용 시도
- ③ 지역주민들의 도심속 문화향유 통한 문화복지 새로운 가치 창출
- ④ 지역 문화유산 활용, 문화활성화 사업 시작

그림 8 문화재 활용사업의 효과

(코리아헤리티지센터, “문화재 활용사업 블루오션인가?”, 2017. 08. 21. 활용단체 세미나)

-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세계에서 각광받는 분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영국의 활용정책적 지원 속에 출범한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유산을 매입, 보존, 활용하고, 활용사업과 관광사업 등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 영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로 성장하였다.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의 유산을 보존·활용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져, 내부 직원의 규모와 급여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항목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원(명)	4,938	4,964	5,006	5,285	5,427	5,572	5,899	6,211
고객연봉자(명) ⁴⁾	66	77	67	71	88	80	88	93
근로만족도(%) ⁵⁾	-	46	51	55	55	58	59	61

표 3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직원 관련 현황('09~'16)

- 미국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에서의 산업적 효과를 보면, 자동차 제조업 등 다른 산업보다 비용투입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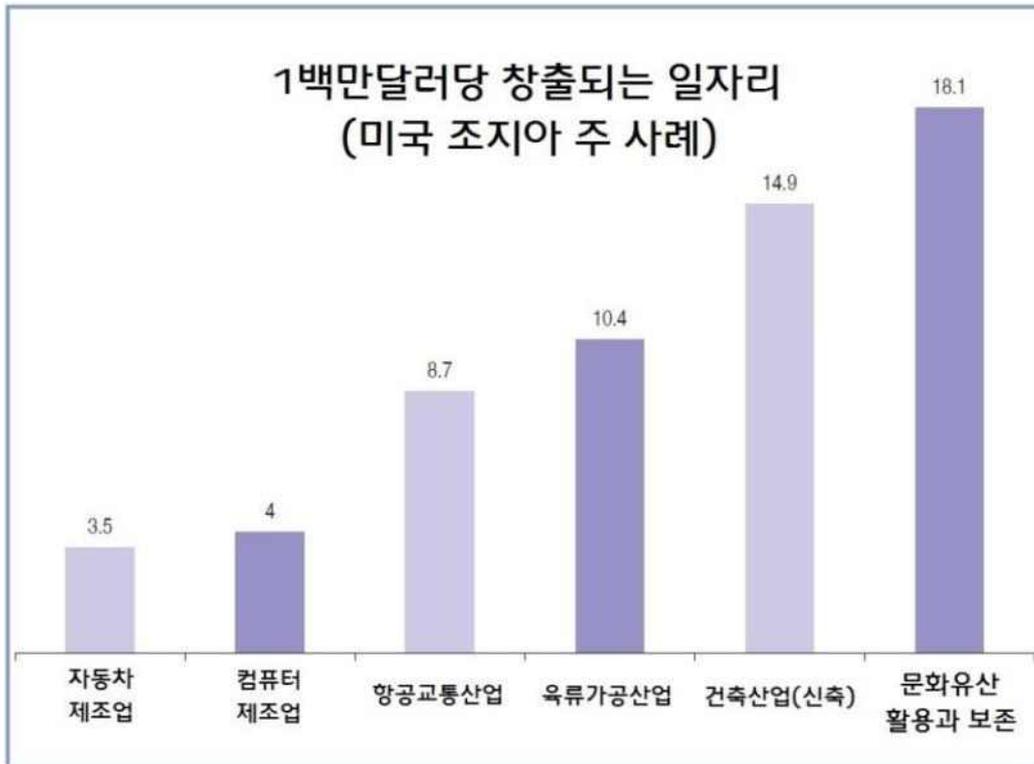


그림 9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 활용정책의 조지아 주 사례, 1백만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4) 6만유로 이상

5) 직원의 근로만족도 점수는 응답자의 평가 중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율에 근거한다.

6) Good News in Tough Times: Historic Preservation and the Georgia Economy (2011)

- 특히 미국과 같이 적극적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보존을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문화재 인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 역사문화관광수익 증대, 문화재로 인해 낙후된 도시의 재생이라는 환경적 정비효과, 지역인프라 증대 등의 효과를 경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서 실시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효과 국가	부동산 가치 상승	관광객, 수익 증대	도시재생과 환경정비, 지역인프라 증대
미국	켄터키 주 루이빌(Louisville) 지역에서는 문화유산인근 주택이 2000년~07년 사이에 21% 성장. ⁷⁾ (관련사업의 사업비 150,000달러) ⁸⁾	조지아 주의 문화유산관광으로 117,000개의 일자리와 2억 달러 이상의 급여와 임금이 창출. ⁹⁾ (조지아주 총사업비 624,747달러) ¹⁰⁾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는 100여개의 빈 건물들이 호텔, 사무실, 주거시설, 소매시설, 콘도 등으로 재개발. ¹¹⁾ (관련사업의 사업비 126,235달러) ¹²⁾
한국 (경주)	2015년 월세 100만원이었던 곳이 2017년 월세 400~500만원 호가 ¹³⁾	수십년간 죽어있던 동네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다. 2016년부터 20~30대 고객 유입 ¹⁴⁾	황리단길 자연 조성, 거리경관정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외벽 정비, 간판정비 등

표 4 미국과 한국(경주)의 문화유산 활용 등의 효과 비교

7) Historic Preservation's Impact on Job Creation, Property Valu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09)
 8) The Portland Neighborhood: Linking Our Heritage to Our Future
 9) Good News in Tough Times: Historic Preservation and the Georgia Economy (2011)
 10) PRESERVE AMERICA GRANTS – SUMMARY AND PROJECT DESCRIPTIONS
 11) The Economics of Preservation in Missouri (2008)
 12) Discover Cape Girardeau: Where the River Turns a Thousand Tales
 13) 중앙일보, “1년새 임대료 10배 폭등한 경주 '황리단길' 왜?”, 2017.06.26
 14) 한국일보, “황리단길로 경주 관광 ‘심폐소생’”, 2017.06.20



그림 10 철물점이 카페로 바뀌고, 문단은 폐상가의 외관이 정돈된 경주 황리단길(포석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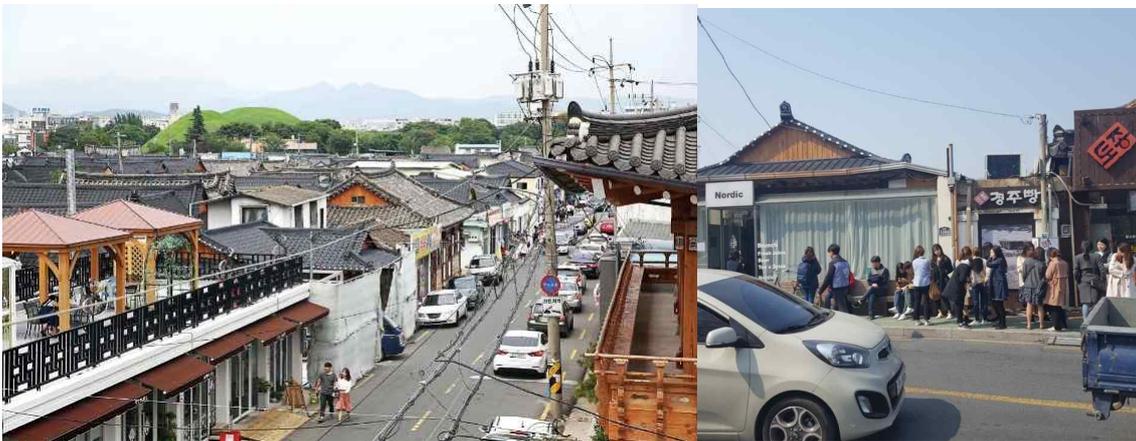


그림 11 거리가 정돈되고 사람과 차량이 붐비는 경주 황리단길(포석로)

○ 미국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 사례

- 미국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보존활동을 추진하는 ‘프리저브 아메리카(Preserve America)’를 실시한다. 미국 49개 주에서 281개 프로젝트를 통해 21.7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721개의 세부 프로젝트는 56.5백만달러 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되었다. 프로젝트는 해설과 교육(Interpretation and Education)부문 84개 사업, 활용진흥(Promotion)부문 77개 사업, 계획수립(Planning)부문 53개 사업, 연구조사와 목록화사업(Research and Documentation)부문 53개 사업, 훈련사업(Training) 14개 사업 등 5가지 분야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는 역사문화관광, 교육, 문화유산 보존계획을 통해 각 주(State)와 지역도시의 보존사업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NPS)이 역사보존자문위원

회(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ACHP)와 협력하여 교육, 기획, 진흥사업 및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조사와 기록화(documentation)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프로젝트별로 2만달러에서 25만달러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프로젝트는 역사문화관광, 문화유산 보존계획과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범적 역할을 한다.
- 일례로 아칸소 주의 문화유산 보존 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5%의 관광객 유입 증가, 1,100개의 새 일자리 창출, 16백만달러의 소득증대, 3.7백만달러의 연간 세수 증가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고된다.¹⁵⁾ 이때 아칸소 주의 총 사업비는 1,043,883달러이다.
- 미국의 역사자원 보존을 통한 경제효과 분석 자료¹⁶⁾에 따르면, 해당 활동으로 ①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부동산 지가 상승, ③역사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④환경친화적 변화, ⑤낙후된 도시의 재생효과라는 5가지의 주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칸소 주의 활용정책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달러)	사업목표
유레카 스프링 백스토리 ¹⁷⁾	활용환경 마련을 통한 관광객 증진	62,720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관광, 교육,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초조사와 계획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인프라 개선 등의 관련
농촌 지역유산 개발사업 ¹⁸⁾	특정테마의 문화유산 기초조사	100,000	
문화유산중심도시를 위한 아웃리치 계획 수립 ¹⁹⁾	역사문화자원 관광개발	46,680	
헤리티지 ⁶¹ , 코튼 하이웨이 ²⁰⁾	투어코스 개발과 문화유산 교육 프로젝트	100,000	
아칸소 주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 ²¹⁾	문화유산 보존계획과 지역유산 관광활성화 종합계획	150,000	
아칸소 델타 가스펠 인스티튜트 마스터 플랜 ²²⁾	가스펠 음악 활용계획 수립 등	60,590	
블라이빌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 해설 프로젝트 ²³⁾	방문객 안내소 설치 등	55,088	
아칸소 내전 150주년 마켓 프로젝트 ²⁴⁾	이야기자원 활용개발 등	50,000	

15)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Preserve America Grants: Assessment of Effectiveness」, 2009, 7p 참조.

16)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 「Measuring Economic Impacts of Historic Preservation」, 2011

17) Eureka Springs Backstory: Bringing the Past to Street Level

아칸소 주의 활용정책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달러)	사업목표
히스토릭 헬레나 프로모션 ²⁵⁾	지역유산 활용개발사업	203,500	사업 실 시.
아칸소 주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커뮤니티 프로그램 ²⁶⁾	보존사무소 운영지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등	100,000	
노스 리틀락의 역사유적 브랜드 사업 ²⁷⁾	역사적 특성 등 기초조사와 발굴사업, 관광기반조성계획 등	69,220	
파크힐 국립 역사지구의 확장 사업 ²⁸⁾	지구 주변 건조물문화유산 기초연구조사 등	30,000	
포카혼타스 문화유산 진흥 계획 ²⁹⁾	안내자료개발, 광고, 표지판 설치 등	16,085	
총 사업비		1,043,883	

표 5 아칸소 주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사업과 사업비

아칸소 주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사업 경제효과				
총 사업비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효과	소득증대효과	연간 세수증가
1,043,883달러	1,100개	5% 증가	16백만달러	3.7백만달러

표 6 아칸소 주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총사업비와 경제적 파급효과

- 이밖에 무형문화유산 활용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국의 주민참여형 대규모 공연은 장이머우(張藝謀) 등 유명 감독과 콘텐츠 기획자들이 결합되어 지역 곳곳으로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18) Rural Heritage Development: Survey, Research, Documentation and Interpretation
19) Developing an Outreach Plan for Historic Central City Properties
20) Heritage 61 - The Cotton Highway
21) Planning for Preservation and Heritage Tourism in Arkansas
22) Arkansas Delta Gospel Institute Master Plan
23) Blytheville Greyhound Bus Station Interpretative Project
24) Arkansas Civil War Sesquicentennial Markets Project
25) Promoting Historic Helena
26) Preserve America Community Program for Arkansas
27) Branding the City of North Little Rock National Register Historic Riverfront and Historic Sites
28) Expansion of the Park Hill National Register Historic District
29) Implementation of Pocahontas Historic Assets Promotion Plan



그림 12 중국 항저우 인상서호 공연모습



그림 13 주말 인상서호 매표소 앞

※ 중국 항저우 인상서호(印象西湖) 공연사례³⁰⁾

- 지역콘텐츠 개발과 유명 감독(장이머우)의 참여
- 서호(西湖) 전체의 10%를 무대로 활용
- 민간의 적극참여, 400여명의 출연진 참가(대부분 지역주민,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공연 → 지역소득증대)
- 공연 객석 수 2,000개, 보통객석 360위안,贵宾석 680위안, 하루 1회 공연 실시
→ 1년 약 73만명 수용 가능, 연간입장료 약 2억 6천 위안 이상의 수익 창출
- 지역 인프라 구축(숙박시설, 식당 등)

- 문화재와 주변의 야간 경관의 조성과 활용방안도 상당부분의 가치를 창출한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문화재야행’사업으로 2016년 기준 105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등의 효과를 보았다. 문화재 야간 활용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사가현(佐賀県) 내에 있는 국가지정 기념물인 미후네야마 라쿠엔(御船山樂園)의 경우에는 관람로에 조명을 비추는 것부터 계절별 테마에 맞추어 조명경관을 꾸며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재 주변 녹지경관정비와 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재 상시 관리효과도 누리게 되었다.

30) www.yinxiangxihup.com (2017년 11월 기준)



※ 일본 미후네야마 라쿠엔 야간경관 활용사례

- 큐슈(九州)지역 다이묘였던 나베시마(鍋島) 가문의 정원.
- 약 15만평의 공간. 사계절 8개 프로그램 중 4개의 야간경관 프로그램 운영
 - 테마의 변경에 따라 조명시설 등 야간경관 변경
 - 행사 전후로 문화재 경관 수시정비와 점검 실시
 - 야간입장료 성인 600~1600엔, 어린이 300엔~800엔(프로그램에 따라 조정)
 - 시세이도(Shiseido) 등 대기업의 참여, 문화재와 기업홍보의 병행, 시너지 효과
 - 주변의 온천, 료칸(旅館), 유적지 등과 연계관광 운영 중. 숙박시설 등 인프라 발달
 - 연간 약 24만명의 입장 추정³¹⁾



그림 14 일본 미후네야마가 그려진 옛 그림(좌)과 이를 야간에 재현한 모습(우)

테마	기간(2017년)	주간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비고
초봄	3.17.~4.14.	08:00~18:30	18:30~22:00	
봄	4.15.~5.7.	08:00~18:30	18:30~22:00	
초여름	5.8.~6.5.	08:00~17:00	운영 안함	여름 프로그램 준비
우기	6.6.~7.13.	08:00~17:00	운영 안함	
여름	7.14.~10.29.	08:00~18:00 08:00~19:30	18:00~22:30 19:30~22:30	
초가을	10.30~11.2.	08:00~17:00	운영 안함	가을 프로그램 준비
가을	11.3~12.10	08:00~17:30	17:30~22:00	
겨울	12.11~미정	08:00~17:00	운영 안함	봄 프로그램 준비

31) PREMIUM JAPAN, “毎年10万人が訪れる 御船山楽園の絶景「紅葉まつり」が開催” 2017.11.04.

-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 활용 전문 기업과 마을기업이 몇몇 등장하여 시장을 차츰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활용 산업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활용환경 개선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3) 활용 기반의 구축

- 활용사업의 초기대상은 문화재청이 궁과 왕릉을 중심으로 한 직접 활용이나 불교계의 산사 활용 등 제한적이었으나,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활용정책 결과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활용기반이 다양하게 구축되어 가고 있다. 지역문화재가 적극적 활용대상으로 들어오고, 운영주체면에서는 지킴이중심의 봉사조직에서 다양한 활용단체로 확장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콘텐츠 및 정보들이 웹과 모바일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기반이 빠르게 확장되고, 디지털 기술의 접목 등의 2차적인 활용 시도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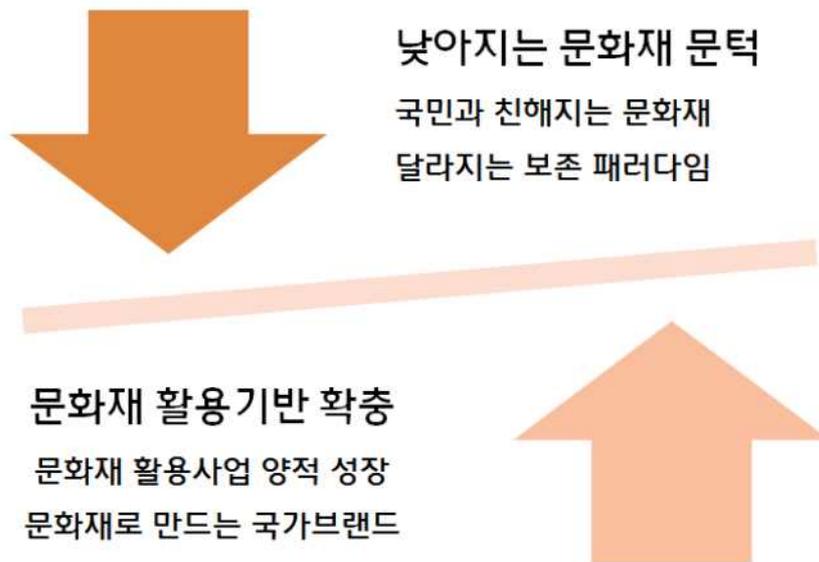


그림 15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

(4) 문화재와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인식 개선

- 문화재 활용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근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에서 ‘현실적으로 가치는 없으면서도 없애버릴 수도 없는

것'으로, 다시 '현실적 활용 가치를 갖는 귀중한 자원'으로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컨대, 인천과 군산, 목포, 부산 등 개항 도시의 근대건축물은 활용을 통해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 문화재 활용을 경험해봄으로써 활용하는 것이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활용은 문화재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등 문화재 활용에 관한 생각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게 된다.

(5) 문화유산채널 등 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 문화유산채널을 구축하여 2016년 현재 동영상, 사진, 이야기 등 9,070편에 이르는 문화재 콘텐츠 제작·서비스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등으로 현장에서의 문화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해가고 있다.
- 시대적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반 문화재 활용은 앞으로의 과제가 산적해있기도 하지만, '국가문화유산포털'과 '조선고궁포털', '국가기록유산', '조선왕릉' 등 인터넷 사이트와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은 디지털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토대로 만들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활용 정책과 개선방향

(1) 활용 정책 1, 201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화재청은 2017년 주요업무로 ①문화유산 보존·전승체계 확립, ②문화유산 활용경쟁력 제고, ③국제위상 강화·국민참여 확대의 3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였다. 활용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①문화유산 브랜드 및 향유프로그램 개발·육성, ②지역문화유산 프로그램 고급화·차별화, ③미래세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④문화유산 발굴·보호체계 강화라는 4가지 성과목표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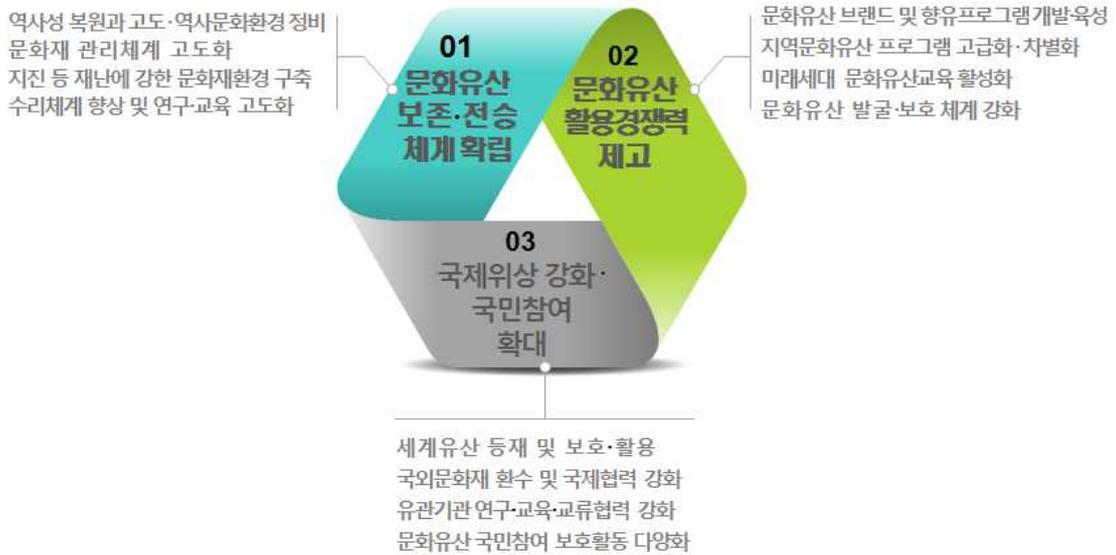


그림 16 201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개요

(2) 활용 정책 2,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추진

-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한 활용프로그램을 궁궐 및 지역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현 활용사업은 정부 주도, 서울 중심의 운영으로 경쟁력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자원화로서 궁궐 활용프로그램을 대표 관광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문화재야행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고하려 한다.
- 또한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탐방로 정비 등 활용시설 기반 구축, 근현대 문화유산을 원천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일자리 창출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정보 전달체계 구축,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연구개발 강화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개선 방향 1, 질적·보완적 성장기반 마련 필요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 활용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양적 활성화(공익적 측면)’를 최우선적 목표로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을 어떠한 형태로든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질적·보완적 측면의 계획(산업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문화재청의 향후 사업방향도 산업적 측면의 수익사업과 공익적 측면의 문화향유 사업이라는 두 가지 분야 모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적 측면의 확대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생산·보완·발전되면 관광객 증가·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며, 향유기회 확대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보장이 될 것이다.

(4) 개선 방향 2, 민·관·학의 역할분담과 협력환경 마련 필요

- 현재까지의 문화재 활용 정책 수립, 집행 등 활용활동은 대부분이 문화재청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은 문화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다소 획일적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해외의 문화재활용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사례를 보면 관은 보조 및 지원역할이 크며,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조직의 문화유산활용과 정부의 지원사례, 중국 항저우 ‘인상서호’와 같은 주민참여형 공연콘텐츠 개발과정 사례 등을 보면 모두 민간이 적극 나설 때 경제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이 모두 배가됨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역 주민과 기업 등 민간이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이 적극 주도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5) 개선 방향 3, 법령, 조직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필요

-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령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활용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6) 개선 방향 4, 지역 문화재 활용 확대를 통한 활용 대상 다변화

- 근대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재 활용에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활용 대상 문화재의 유형을 더욱 다변화해야 한다.
- 지역문화재 활용 활성화와 활용대상 문화재 다변화는 조선 궁궐과 근대건축물 등 특정 유형의 문화재에 집중되는 활용 수요를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활용 품질을 높이고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4. 연구 방법

1) 문화재 활용 현황 분석과 활용 정책 방향 모색

- 그동안의 문화재 활용 성과와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여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설정한다. 개념 정립은 문화재 활용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 문화재 활용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긍정적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활용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전통산사문화재, 문화재야행 등 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황을 각 사업별 모니터링보고서와 사업계획서, 사업홍보물 등을 토대로 참가자 현황, 프로그램 기획 현황 등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문화재 활용 환경, 문화재 활용 법령과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의 입법례와 국내 유사 입법례를 분석하여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상의 보완점을 조사한다.
-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문화재 활용 정책 및 사례 등을 조사한 후 이를 참고하여 우리 문화재 활용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2)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제시

- 현행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미비점을 참고, 앞에서 모색한 활용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안 마련으로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이유, 현황 및 문제점,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기대효과, 유사 입법례,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을 조목별로 제시한다.
- 문화재 활용 기반조성과 관련된 적정한 선행 연구와 유사 사례를 검토하여 장·단점을 분석, 시사점을 마련한다.

제2장. 문화재 활용 현황과 과제

1.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

해당 항목에서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와 타 부서가 추진하는 활용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문화재를 소재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육성정책 등을 같이 보고자 한다.

1)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1) 개요

-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은 한국문화재단이 일괄 위탁 운영 중으로, 조선 왕실이 간직한 유·무형의 문화요소를 재현·체험·답사·강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 2015년 기준, 7,700백만원의 사업예산에 6,304,317명에 이르는 내외국인 관람객이 참여하였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73,355명(총 관람객의 32.8%)에 이를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
-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특징은 기록물 등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만들어낸 ‘재현’ 행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당 사업비가 생생문화재 등 일반 활용사업에 비하여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재현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수문장 교대행사는 31억원의 대규모의 장기간 행사이며,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과 종묘 묘현례 등은 1억원 내외의 규모이다.
- 재현방식의 문화재 활용은 연구와 고증작업, 이를 구현하는 사람들과 도구가 필요하여 높은 사업비를 요구한다. 그러나 관람객의 참여도가 타 행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며, 기록물에 있는 내용을 고증·복원·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활용방안이다.
- 이 밖에도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궁궐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궁중음식과 궁중생활을 체험토록 하거나, 야간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체험·답사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구조	민간보조	
사업예산	12,435백만원(2017년)	
총 관람객	6,977,892명(2016년)	
지원내용	한국문화재단 민간위탁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보존 관리활용 5개년 계획	
사업일정	연중 추진	
사업담당자 배분	한국문화재단 내 문화유산활용실(활용기획팀, 활용진흥팀) 등에서 추진	
사업내용	재현	수문장 교대의식,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등 고증에 따라 개발된 공연요소. 세부사업 중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관람객 수가 가장 높다.[2015년 수문장교대의식 예산 3,100백만원(총 사업비의 39.9%)으로 내외국인 관람객 5,123,703명(총 관람객의 81.2%) 관람]
	체험과 공연	궁중음식 만들기와 같은 궁중생활문화 체험, 전통국악연주와 같은 일반 공연요소 등
	답사	4대궁과 종묘, 관련 문화유산 연계답사 등
	기타	전시요소 개발, 인천국제공항 활용, 축제요소(궁중문화축전) 추진

표 7 궁궐 활용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요

연번	장소	프로그램명	유형	예산(천원)	세부내용
1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3,115,500	수문장 교대, 광화문 파수의식, 수문군 훈련모습 공개, 복식체험장 운영, 수문장 임명식, 왕가의산책 재현
2	경복궁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칩종	재현, 체험	105,000	호위군 사열의식, 감사 선발 체험
3	경복궁	궁중음식 관람콘텐츠 확충(장고, 소주방)	체험, 공연	624,117 ³²⁾	궁중음식과 전통용기 시연 및 체험
4	경복궁	궁중음식 관람콘텐츠 확충(경복궁 별빛야행)	체험, 공연	245,500 ³³⁾	궁중음식체험, 국악실내악 공연, 야간관람, 누각 공연
5	경복궁	궁중음식 관람콘텐츠 확충(궁중야별참)	체험, 공연	165,907 ³⁴⁾	외소주방 식사체험 및 국악공연
6	경복궁	궁중음식 관람콘텐츠확충(생물방)	체험	174,000 ³⁵⁾	궁중약차 시음, 궁중병과 시식, 오색다식 만들기

32) 보조금 567,500천원, 수입금 56,617천원

연번	장소	프로그램명	유형	예산(천원)	세부내용
7	경복궁	건청궁 전시프로그램 개발	전시	170,000	곤녕합 관련 역사의 전시기획 등
8	경복궁 창경궁	고궁 주야간 전통 공연	공연	1,070,000	고궁음악회(전통국악, 크로스오버 등)
9	창덕궁	창덕궁 달빛기행	체험, 답사	782,200 ³⁶⁾	창덕궁 야간기행, 전통예술공연, 전통다과 시식 및 기념품 배포
10	덕수궁	덕수궁 풍류	공연	205,000	무형문화재 등 전통예술공연, 국악인과의 대담
11	덕수궁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재현	80,000	외국공사 알현례, 접견례
12	종묘	종묘 묘현례	재현	100,000	세자빈 혼례후 종묘참배, 홍보영상관, 제례악기체험, 신실 재현과 전시
13	4대궁 및 종묘	미디어과사드	공연	1,100,000	총 7개 미디어과사드 연출 ('홍례문, 빛을 받하다' 등)
14	4대궁 및 종묘	궁궐별 강연 프로그램	강연	54,740	정례 교양강좌 운영
15	4대궁 및 종묘	궁중문화축전	축제	2,087,075 ³⁷⁾	궁중문화축제 (33개 프로그램 185회)
16	경복궁 창경궁	궁궐 일상모습 재현 및 체험행사	공연 체험	200,000	궁궐 일상을 걷다(극 재현), 궁궐숙박프로그램, 다례체험
17	인천 국제공항	궁중생활 등 전통생활재현(전통혼례)	재현	100,000	전통혼례(전안례 등), 축하공연
18	인천 국제공항	궁중생활 등 전통생활 재현(왕가의 산책)	재현	300,000	왕가의 산책 퍼레이드
19	세계유산 및 관련 문화유산	세계유산 연계 체험 프로그램	답사	100,000	관련유적 답사
20	한양도성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운영	답사	483,000	탐방로 운영
합계				11,262,039	

표 8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현황(2016년)

33) 보조금 160,000천원, 수입금 85,500천원
34) 보조금 111,979천원, 수입금 53,928천원
35) 보조금 174,000천원, 수입금 72,310천원
36) 보조금 550,000천원, 수입금 245,640천원
37) 보조금 2,061,260천원, 수입금 25,815천원

(2) 시사점

- 조선 왕실 문화유산(문화재 포함)은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왕조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어 문화재청에서 관리소를 두어 직접 관리하며 체계적인 보존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 문화재 활용사업의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더라도 궁궐 문화유산 활용이 지역 문화재보다도 더 많은 규모가 투입됨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 궁궐 활용사업은 124억원으로, 생생문화재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총액 111억원보다 큰 규모이다.
- 궁궐 문화유산 활용은 2016년 기준 총 6,977,892명의 관람객이 집계되었다. 이중 6,050,428명(내국인 3,144,443명, 외국인 2,905,985명)이 수문장 교대의식이라는 재현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때 교대의식을 관람한 관람객은 2016년 경복궁 연간 입장객 6,020,118명(2016년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다소 오류가 있어보이나, 해마다 경복궁을 방문하는 관람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경복궁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킬러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미 궁궐 활용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활용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 재현행사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2016년 기준 3,800,500천원으로 총 예산의 3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높은 사업비로 고층에 충실한 재현행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림 17 수문장 교대의식 영문 소개 사이트(한국문화재단)



그림 18 수문장 교대의식 관련 웹 포스팅

(3) 향후 과제

- 향후에는 문화재 활용 ‘조선의 왕실 문화’라는 좁은 범위만을 활용할 것만이 아니라, 과거 선사시대부터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조선 및 근현대시대에까지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문화재에 대한 집중을 더욱 하여야만 할 것이다.
- 콘텐츠산업·관광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조선 왕실 문화유산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의 개발과 활용을 더욱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문화재 활용은 대부분 체험·교육 및 소규모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재현방식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고증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재 향유 면에서 보더라도, 궁궐 등 조선 왕실 문화요소는 서울을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다는 장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 국민 모두가 손쉽게 향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지역 문화유산 활용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로는 문화재 보존활동의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문화유산은 조선 왕실 문화유산에 비해 관리여건이 좋지 못하며, 일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한다. 게다가 조선 왕실 문화유산은 기록 등의 자료가 충실히 보존되어있는 상태이나, 지역 문화유산은 기록이 상대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거나 서서히 멸실되어가고 있다. 이에 지역의 문화유산을 연구하여 고증을 통해 재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궁궐은 국가브랜드로서 문화관광의 핵심적 자원 중 하나로, ‘궁궐의 브랜드화’를 통해 집중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 그리고 과거 경복궁 후원이 자리하였던 청와대 일대의 활용 방안을 세워야 한다.

2) 지역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1) 개요

- 본고에서는 위의 ‘궁궐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에서의 ‘개선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좁은 범위를 가진 궁궐활용사업보다 넓은 범위를 가진 지역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향후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활용진흥사업 현황을 자세히 찾아보고자 한다.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에서는 문화재활용활성화 사업의 하나로서 4가지의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각 지역에 포진되어있는 일반 문화재를 다루는 생생문화재사업, 특화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향교서원과 전통산사 활용사업, 지역구 문화재의 연계형 사업이자 야간경관과 접목한 프로그램인 문화재야행사업이 있다. 모든 사업은 공모를 통한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문화재활용 활성화	문화유산 활용진흥	생생문화재사업	3,600	서울시 등 97개 지자체
		향교서원활용사업	2,800	서울시 등 87개 지자체
		전통산사활용사업	1,000	서울시 등 25개 지자체
		문화재야행사업	3,500	서울시 등 18개 지자체

표 9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의 내역사업과 지원대상 등(2017년)

사업구조	공모사업 - 자치단체보조사업	
지원예산	11,100백만원	
지원내용	정률지원, 전체 사업비 중 생생문화재사업 40%, 향교서원 활용사업 50%, 산사활용사업 50%, 문화재야행사업 50% 국비지원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문화재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보존 관리활용 5개년 계획	
사업일정	공모기간 : '17. 6~8월(2개월) 사업 심사 선정 : '17. 9월 사업기간 : '18. 2~12월	
문화재청 사업담당자 배분	문화재야행, 전통산사 1인 /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1인	
장기목표	1지방자치단체 1생생문화재, 1문화재 1생생문화재	
사업 내용	생생 문화재	<지역일반 유무형문화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 활용사업
	향교서원	<향교 서원 문화재>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 서원 문화재의 활용사업
	야행	<지역구 문화재 연계형> 2017년 문화재 야행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품고 있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특색있는 야간 문화를 만들어감. 무형문화재 공연, 전통놀이, 역사체험,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경험이 펼쳐진다.
	전통산사	<불교 사찰> 전통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하여 전통산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

표 10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 개요

(2) 사업 공모 요건

- 4가지 활용사업은 대상만 다를 뿐 대상요건, 제외요건, 우대요건은 거의 같다.
- 대상요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부여 등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이 있다.
- 제외요건으로는 문화재의 가치 발현과 관계가 없는 관광위주의 축제사업, 단순 공개사업 및 원형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거나 현상변경 행위를 요하는 사업 등이 있다.
- 우대요건으로는 활용 기반시설(화장실, 교육관 등)이 갖춰진 사업, 숙박·체류형 사업, 자유학기제·문화가 있는 날 연계사업 등이다.

(3) 공모 심사기준

-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전통산사활용사업은 평가항목과 세부항목이 같으나 점수의 배점에서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형태이다.
- 문화재야행은 지역문화재와 문화시설 연계사업으로서 콘텐츠 우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구분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전통산사	문화재야행
평가항목	콘텐츠 우수성(30~40점), 사업추진체계·운영(30~40점), 사업 발전성(30~40점)			콘텐츠 우수성(50점), 사업 홍보성(20점), 사업 발전성(30점)
세부항목	문화재 진정성, 콘텐츠 경쟁력, 사업추진체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기여도			집객효과성, 문화재 연계성, 새로운 가치창출, 홍보마케팅 전략, 지자체 역량 및 지역네트워크, 사업이해도, 지자체의 추진의지

표 11 문화유산활용진흥사업 공모 심사기준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지역 문화유산은 궁궐에 비해 콘텐츠가 풍부하고 다양하여 확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관아문화재’ 등 테마 문화유산의 연계도 가능하다.
- 문화재 활용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활용단체에게 양질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활용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사업의 확장을 위해 적정 대가기준 마련으로 인한 적정 예산의 산정 등 사업기반의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 활용단체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기초연구개발, 활용단체와 인력의 전문화, 교육콘텐츠의 개발 등의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등에서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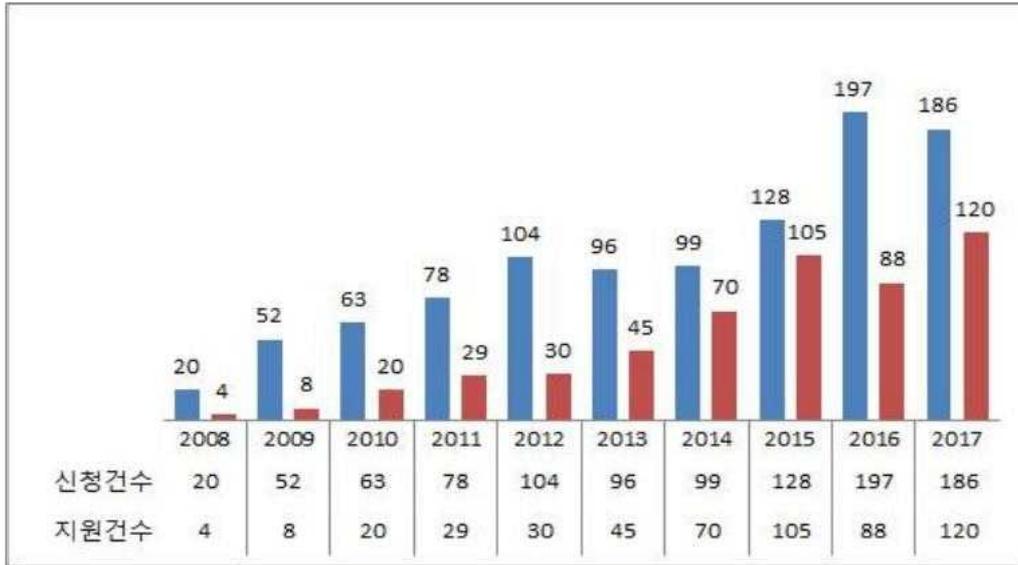
2-1)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1) 사업 개요

-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서로 힘을 합쳐 다양한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 2016년도 기준, 약 280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30만명 이상이 즐겼다. 공모 신청 프로그램도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며, 사업비의 지원액 또한 증액되고 있다.
- 생생문화재 사업 신청과 지원 건수도 문화재 향유에 대한 수요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생생문화재를 이끄는 사람들이 1만 6천명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신장되었으며, 다양한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지역별로 생성되거나 기존의 지역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화유산 활용 전문기업도 조금씩 생겨나 산업적 성장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 특히 발굴, 수리 및 복원, 보존관리 등 문화재분야의 협소한 산업분야를 활용영역까지 대폭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정책사업으로서 의의가 크다.
 - 문화재 활용사업 영역은 문화유산의 보존적 차원에서 효력이 입증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더욱 전문적인 인력이 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활용 단체와 인력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예산구조상 인건비 대가기준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열악하여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학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에도, 대가기준이 이에 맞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활용사업이 관광, 체험, 교육 등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원봉사나 단순인력 수급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생문화재 사업 신청 및 지원 건수

(단위: 건)



*공모기준 산출

그림 19 생생문화재 사업 신청 및 지원 건수('08~'17, 2016 생생문화재 모니터링)

(2) 활용사업 참가자 현황 (2015~2016 생생문화재 설문조사결과)

- 아래 표는 2015~2016년도 생생문화재 설문조사결과표 중 주요 항목에 따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년간의 설문조사결과는 순위와 수치면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이 표를 요약해보면 주로 '40대 여성'이 주축이 되는 '가족, 단체' 참가자가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주변의 추천'을 듣고는 '자가용 및 단체버스'를 타고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실상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연령으로서 설문조사결과로 참가자 수치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40대 여성이 어린이 자녀 등을 인솔하여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참가자층은 확보되었으며, 향후에는 다른 수요자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생문화재 설문조사항목 (‘15~’16) ³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자 성별	여성	남성			
참여대상	지역주민	지역주민 외			
연령	40~49세	15~20세(2015년) 30~39세(2016년)	30~39세(2015년) 50~59세(2016년)	50~59세(2015년) 20~29세(2016년)	20~29세(2015년) 15~20세(2016년)
참여목적	교육 및 학습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여행, 나들이	단체프로그램이어서
참여 동반자	가족	단체	친구/연인	혼자	기타
교통수단	자가	단체버스	대중교통	도보	기타
사업인지 ³⁹⁾	모른다	알고 있다			
홍보매체	주변 추천	인터넷포털	기타(2015년) 옥외홍보물(2014, 6년)	옥외홍보물(2015년) 기타(2016년)	이전방문경험
만족도	진행요원응대	프로그램안내 및 해설	전반적 만족	재미	프로그램이해
사업인식변화	지역활성화사업으로 가치있다	문화재 보존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문화재 가치가 더 높아졌다	관람객이 문화재 활용의 주체로 인식되었다	

표 12 생생문화재 설문조사항목별 응답순위(‘15~’16년 생생문화재 설문조사결과)

- 이때 생생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가 ‘알고 있다’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특정한 인솔 참여자 또는 인솔교사가 주변인 또는 학생을 자체 모집하거나 권유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바꾸어 말하면, 참가자들은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문화재 관광보다는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홍보성과에 대해서는 주변 추천과 이전방문 경험으로 방문하였다는 설문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홍보효과가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다.

38) ‘15~’16년도 설문조사항목 순위 중 공통된 부분은 연도 표시를 하지 않고 기입하였다.

39) 해당 지역에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

(3)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 현황(2017년)

- 2017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은 총 120개가 설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관 단체의 성격을 보면, 주식회사 등의 영리 기업은 24개이며 나머지 96개는 비영리단체가 맡고 있다. 이중에서도 영리기업 중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가 7개(29%), A&A문화연구소가 4개(17%)를 맡는 등, 특정 기업이 여러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형태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문화재 활용사업시장의 초기형성단계 정도는 갖추어졌으며, 수익지속성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장할 때, 영리기업이 더욱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비영리단체 중에서는 지자체 직접수행이 8개, 문화원 수행이 6개, 사찰 및 종교가 4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고루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람들로 구성된 조직과 극단 등이 나름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 앞서 ‘문화재 활용 현황’ 항목에서 제시한 ‘생생문화재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원건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의 문화재 활용 욕구 증가로 인해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원건수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역 프로그램을 비영리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영리단체의 분포 비율을 보면, 24개 프로그램 중 서울과 인천(5개)·경기(7개)·강원도(7개)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지역 문화재에는 영리기업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소도시지역의 문화재는 아직 영리기업이 크게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단체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과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영리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다음 표는 위의 분석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인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대상문화재 등에 대한 현황표이다.

연번	지역	문화재 유형	문화재명	주관단체
1	서울 서대문구	사적	독립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민간단체(기업)
2	서울 서대문구	보물	기사계첩	박물관(학교)
3	서울 마포구	사적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	민간단체(기업)
4	서울 송파구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민간단체(사단법인)
5	서울 동대문구	사적, 천연기념물	서울 선농단, 서울 선농단 향나무	민간단체(기업)
6	서울 동작구	시유형	양녕대군 이제묘역	중중
7	서울 동작구	시유형	사육신묘, 용양봉저정	민간단체(기업)
8	서울 송파구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 몽촌토성	민간단체(사단법인)
9	부산 서구	등록문화재, 시기념물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전차등	박물관(학교)
10	대구 동구	시기념물	신승겸장군유적	민간단체(사단법인)
11	대구 중구	시유형	구 대구 제일교회	지자체
12	광주광역시청	시무형	남도의례음식장	민간단체(재단법인)
13	광주 광산구	시기념물, 시문화재 자료, 등록문화재	용아생가, 김봉호 가옥, 광주 장덕 동 근대 한옥	문화원
14	광주 서구	시문화재자료, 시무형등	만귀정, 병천사, 가야금병창 이영애	민간단체(사단법인)
15	광주 남구	중요무형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문화원
16	광주 동구	시기념물	허백련 춘설헌	민간단체(재단법인)
17	대전 동구	시기념물	송요년 묘역 및 비지정문화재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18	인천 남구	시유형, 시기념물	인천도호부청사, 문학산성	민간단체(기업)
19	인천 계양구	시유형	부평도호부청사, 부평향교, 계양산 성	문화원
20	인천 강화군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저어 새, 노랑부리저어새, 두루미	민간단체(사단법인)
21	울산 동구	등록문화재	울기등대 구 등탑	지자체
22	울산 울주군	국보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23	세종	시기념물	김종서장군 묘 등	지자체
24	경기 고양시	도민속	일산밤가시초가	민간단체(기업)
25	경기 평택시	도유형	팽성읍 객사	민간단체(사단법인)
26	경기 수원시	사적	화성행궁, 수원화성	민간단체(재단법인)
27	경기 용인시	도민속	한산이씨 음애공파고택	민간단체(기업)
28	경기 용인시	도기념물	처인성	민간단체(기업)
29	경기 시흥시	사적	시흥 오이도 유적	지자체
30	경기 양주시	사적	양주 회암사지	민간단체(기업)

연번	지역	문화재 유형	문화재명	주관단체
31	경기 파주시	도문화재자료	반구정	민간단체(사단법인)
32	경기 여주시	사적, 국보, 도유형	영릉, 조선왕조실록, 명성황후 생가	민간단체(기업)
33	경기 포천시	천연기념물	한탄강 비둘기낭 폭포	민간단체(기업)
34	경기 연천군	사적	연천 승의전지	민간단체(기업)
35	강원 동해시	등록문화재	동해 구 상수시설	민간단체(기업)
36	강원 원주시	도무형	원주매지농악	보존회
37	강원 원주시	사적, 도문화재자료	법천사지, 거둔사지, 흥법사지	지자체
38	강원 원주시	사적, 등록문화재	강원감영, 원동성당	지자체
39	강원 원주시	도유형,도문화재자료	안심사관 제진언집 등	박물관(사찰)
40	강원 강릉시	사적, 중요무형	강릉대도호부관아, 강릉농악	보존회
41	강원 강릉시	중요민속	강릉선교장	중중
42	강원 강릉시	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	사찰
43	강원 속초시	도무형,도문화재자료	속초도문농요, 매곡오윤환선생생가	민간단체(기업)
44	강원 고성군	중요민속	고성 왕곡마을	민간단체(기업)
45	강원 인제군	천연기념물, 명승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설악산 대승폭포 등	민간단체(기업)
46	강원 영월군	사적	영월부 관아	민간단체(기업)
47	강원 정선군	도무형, 천연기념물	정선아리랑, 고씨굴 등	민간단체(기업)
48	강원 영월군	사적	영월 장릉	민간단체(기업)
49	충북 청주시	도무형	충북무형문화재	충북농업기술원
50	충북 청주시	도유형	청주 문의 문산관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51	충북 옥천군	도기념물, 도유형 등	옥천 조현 묘소, 조현 신도비 등	민간단체(재단법인)
52	충북 진천군	사적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민간단체(재단법인)
53	충북 보은군	천연기념물, 도무형	보은 속리 정이품송, 낙화장 등	보존회
54	충북 괴산군	도민속	괴산 흥범식 고가	민간단체(사단법인)
55	충남 논산시	등록문화재, 도유형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56	충남 공주시	도기념물	남혈사지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57	충남 논산시	중요민속, 도유형, 도기념물, 보물	논산명재고택, 논산백일헌종택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58	충남 계룡시	도기념물	사계고택	민간단체(사단법인)
59	충남 아산시	사적	아산 현충사	보존회
60	충남 아산시	사적	아산 맹씨 행단	민간단체(기업)

연번	지역	문화재 유형	문화재명	주관단체
61	충남 당진시	중요무형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62	충남 서산시	사적, 보물, 국보	서산 보원사지, 보원사지 석조 등	사찰
63	충남 예산시	중요무형	대목장	민간단체(기업)
64	충남 예산시	사적	매현윤봉길의사 충의사	민간단체(사단법인)
65	충남 예산시	천연기념물	황새	민간단체(영농법인)
66	충남 홍성군	사적	홍주읍성	민간단체(사단법인)
67	충남 부여군	사적	부여 정암리 와요지	민간단체(재단법인)
68	충남 금산군	사적, 도기념물 등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등	지자체
69	충남 태안군	도기념물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민간단체(예술단체)
70	충남 홍성군	도기념물·문화재자료	한용운선생생가지, 결성동헌	민간단체(예술단체)
71	전북 정읍시	중요민속	김명관 고택	학교 산학협력단
72	전북 정읍시	사적	정읍 황토현 전적, 정읍 전봉준 유적 등	특수법인 (문화체육관광부)
73	전북 군산시	도기념물, 등록문화재	구 군산세관, 구 일본 제18은행군 산지점 등	지자체
74	전북 전주시	국보,사적,도유형·민속	조선태조어진, 경기전, 조경묘 등	박물관
75	전북 김제시	사적, 도무형, 등록	벽골제, 옹기장 안시성, 옹기가마	민간단체(사단법인)
76	전북 고창군	사적	고창읍성	보존회
77	전북 부안군	도유형	위도관아	민간단체(재단법인)
78	전북 임실군	도민속, 도유형	이용재고택, 삼계강사계안	민간단체(사단법인)
79	전남 강진군	중요민속	영랑생가	지자체
80	전남 나주시	사적,도유형중요무형등	나주읍성,금성관,목사내아,염색장 등	문화원
81	전남 순천시	사적,도문화재자료등	낙안읍성, 충무사, 정충사, 순천왜성	민간단체(사단법인)
82	전남 목포시	도문화재자료	목포진지	민간단체(예술단체)
83	전남 목포시	사적,도문화재자료등	구 목포일본영사관,이훈동정원 등	민간단체(예술단체)
84	전남 여수시	국보, 사적, 보물	여수 진남관, 여수 선소유적,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 등	민간단체(재단법인)
85	전남 화순군	도기념물,문화재자료	화순 정암 조광조선생 적려유허비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86	전남 진도군	중요무형, 도무형	진도 씻김굿, 진도 다시래기 등	보존회
87	전남 곡성군	보물	충정공 마천목사당과 좌명공신녹권	민간단체(사단법인)
88	전남 해남군	사적, 중요무형, 보물	해남 전라우수영, 강강술래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89	전남 장성군	도유형, 도기념물	오산창의사, 박수량 백비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90	전남 보성군	등록문화재	구 보성여관	특수법인(문화유산 국민신탁)

연번	지역	문화재 유형	문화재명	주관단체
91	전남 신안군	등록문화재	태평염전, 석조소금창고	박물관
92	경북 청송군	등록문화재, 도유형	소류정, 찬경루	민간단체(재단법인)
93	경북 영양군	도민속,도문화재자료	석계고택,원리주곡고택,석천서당등	문화원
94	경북 영덕군	도기념물	갈암종택	민간단체(사단법인)
95	경북 칠곡군	도민속,도문화재자료	해은고택, 감호당, 지경당, 진주택	학교 산학협력단
96	경북 봉화군	명승, 도유형 등	청암정과 석천계곡,봉화추원재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97	경북 김천시	보물,도유형,도무형등	김천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 등	민간단체(예술단체)
98	경북 영주시	사적	영주 순흥 벽화 고분	민간단체(협동조합)
99	경북 안동시	국보,중요민속,무형 등	하회마을, 하회탈,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
100	경북 경주시	사적, 국보, 보물 등	태종무열왕릉, 김인문묘 등	민간단체(기업)
101	경북 구미시	도민속,도문화재자료	용와종택 및 침간정	학교 산학협력단
102	경북 의성군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도유형 등	의성 탐리리 오층석탑, 의성 만취당, 의성 가로숲 등	민간단체(기업)
103	경북 울릉군	등록문화재	울릉 도동리 일본식 가옥	특수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
104	경북 포항시	도유형	포항 분옥정	민간단체(기업)
105	경북 성주군	도문화재자료	성주 사우당	민간단체(사단법인)
106	경남 고성군	중요무형	고성 오광대	보존회
107	경남 남해군	명승,천연기념물,사적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등	민간단체(재단법인)
108	경남 밀양시	중요무형, 보물 등	밀양백중놀이, 감내계줄다리기 등	보존회
109	경남 거창군	명승, 도유형	수승대, 요수정, 구연서원 관수루	민간단체(사단법인)
110	경남 거창군	중요민속	거창 동계종택	민간단체(사단법인)
111	경남 산청군	사적	목면시배유지	민간단체 (문화관광해설사회)
112	경남 통영시	국보, 사적	통영 세병관, 통영 충렬사 등	민간단체(재단법인)
113	경남 김해시	사적, 도무형	구지봉, 수로왕릉, 봉황동유적 등	박물관(학교)
114	경남 함양군	중요민속,도유형 등	일두고택,노참판댁고택,동호정 등	문화원
115	제주 서귀포시	명승, 도기념물	정방폭포, 서귀포 외돌개, 서귀진지	민간단체(사단법인)
116	제주 서귀포시	중요민속	제주 성읍마을	민간단체(사단법인)
117	제주 제주시	도기념물	배령연대, 별도연대, 산방연대 등	민간단체(사단법인)
118	제주 서귀포시	도무형	제주도 옹기장	보존회
119	제주 제주시	중요무형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보존회
120	제주 제주시	도무형	제주농요	보존회

표 13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대상문화재 등 현황표(2017)

생생문화재 주관단체의 성격



그림 20 생생문화재 주관단체의 성격

생생문화재 영리기업 참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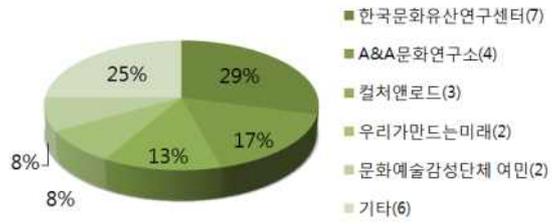


그림 21 생생문화재 영리기업 참가비율

생생문화재 영리기업 분포비율



그림 22 생생문화재 영리기업 분포비율

생생문화재 비영리단체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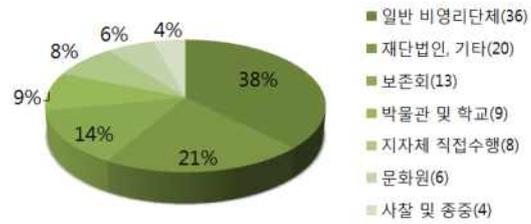


그림 23 생생문화재 비영리단체의 성격

(4) 활용대상 등 프로그램의 유형

- 생생문화재는 유적 및 유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나, 무형문화재를 접목시키는 시도가 21건(18%)이 있다. 또한 명승과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의 활용도 12건(10%) 정도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의 유형(2016년 기준)은 일반 체험형 프로그램이 48%로 가장 많고, 공연·교육·탐방형 활동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생생문화재 활용대상 유형



그림 24 생생문화재 활용대상 유형

프로그램 유형(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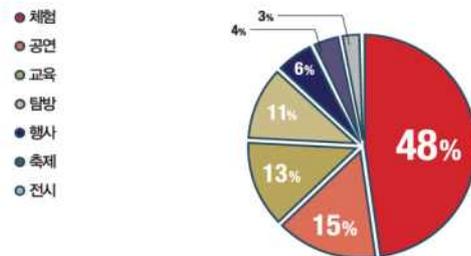


그림 25 프로그램의 유형(체험, 공연 등)

(5) 생생문화재 사업의 시사점

- 위와 같이, 전국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은 2008년 4개 프로그램에서 2016년 120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었고, 향후에는 ‘1문화재 1생생 문화재 사업’까지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중 20%의 프로그램이 문화재 활용 전문 영리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리기업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어, 문화재 활용의 시장형성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여건이 더욱 좋아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리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에는 생생문화재 사업의 비중과 예산책정을 더욱 늘려 문화재 활용 전문기업의 사업여건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반이 마련될 때 생생문화재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사업 추진 등에 투입되는 대가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에서부터, 활용단체와 인력의 전문화 등의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 문화재 보존에 기반한 활용프로그램으로서 대표성을 갖는 프로그램으로서 보존과 활용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운영인력을 전문직군화 하기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현행 대가기준은 단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인력 유지 역할을 할 뿐 활용을 통한 문화재 보존이라는 ‘문화재 활용’의 고유 역할은 맡기 어렵다.
- 현재 문화재 활용 전문기업이 생성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맡아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리기업은 비영리단체와는 달리 수익창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영리기업의 사업기반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문화재 활용의 전문직군화 및 영리기업의 사업기반마련에는 ①문화재 활용사 및 활용기관 인증제 도입, ②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③문화재 활용단체 연합 운영 지원, ④인건비, 개발비 등의 대가기준 현실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2-2) 향교서원 활용사업

(1) 사업 개요

- 조선시대 행정구역마다 포진되어있는 관립학교·사립학교인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특화 프로그램. 향교·서원이 과거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었듯이, 현재의 활용 프로그램도 옛 성현의 말씀에 기반하는 전통교육문화의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프로그램 진행 3,218회를 실시하여 1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공모 지원 건수와 지원액은 생생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26 향교서원활용사업 신청건수와 지원건수('14~'17)

- 전통의 현대적 계승, 우리 사회에 깊이 내린 유교의식을 진단하고 이를 오늘날의 시민의식으로 이어가는 교량자(전승체)로서 가치가 크다.⁴⁰⁾
 - 학교교육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사회윤리, 공동체의식, 국가관, 가족관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 관점(유교)에서 다원화된 현대사회관으로 이끌어내는 교육과정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소화할 기획자와 강사진, 기획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큰 과제이다.
 - 이로 인해 천편일률적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기획자 및 강사진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40) 『한국 유교와 서원의 나아갈 길』 토론자료, 2017.8.24

- 향교와 서원문화재는 일반 문화재와는 달리 유림이라는 전통적 관리집단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유림과의 협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역량이 부족한 향교서원측 유림에서 초기에는 전문집단의 도움을 받은 뒤 바로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면서 유림과 전문집단 간의 협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향교서원 활용사업 참가자 현황 (향교서원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항목 ('14~'16) ⁴¹⁾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응답자 성별	여성	남성			
참여대상	지역주민	지역주민 외			
연령	15~20(2016) 40~49(2015) 60세이상(2014)	40~49(2016) 15~20(2014~2015)	30~39(2016) 50~59(2015) 40~49(2014)	50~59(2016) 60~69(2015) 50~59(2014)	20~29(2016) 30~39세 (2014~2015)
참여목적	교육 및 학습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단체프로그래머이어서(2016) 프로그래머이마음에들어서(2014~2015)	프로그래머이마음에들어서(2016) 단체프로그래머이어서(14~15)	여행 혹은 나들이 (2015~2016) 우연히(2014)
참여 동반자	단체	가족 (2015~2016) 혼자(2014)	친구 / 연인 (2015~2016) 가족(2014)	혼자 (2015~2016) 친구 / 연인 (2014)	기타
교통수단	자가	단체버스	도보(2016) 대중교통 (2015)	대중교통 (2016) 도보(2015)	기타
사업 인지	모른다(2016) 알고 있다 (2015)	알고 있다 (2016) 모른다(2015)			
홍보매체	주변인 추천	기타('14,'16) 옥외 홍보물 ('15)	옥외 홍보물 (2014,2016) 기타(2015)	이전방문경험 (2014,2016) 인터넷포털 (2015)	인터넷포털 (2014,2016) 인쇄매체('15)
만족도 (2015~2016)	진행요원응대 (2016) 프로그램 안내및해설('15)	프로그램안내 및해설(2016) 진행요원 응 대(2015)	재미 전반적 만족 도(2015)	프로그램 이 해 재미(2015)	참신
사업인식변화 (2015~2016)	문화재 활용 은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서 가치있다	문화재를활용 하는 것은 문 화 재 보존 의 좋은방법이다	해당 프로그 램의 문화재 가치가 더 높 아졌다	관람객이 문 화재 활용의 주체로 인식 되었다	

표 14 향교서원활용사업 설문조사항목별 응답순위('14~'16)

- <표 14>는 2014~2016년도 향교서원활용사업 설문조사결과표 중 주요 항목에 따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중에서 ‘행사참여시 1인당 지출비’, ‘만족도’, ‘사업인식변화’ 항목은 2015~2016년도 결과자료이다.
- 이 표를 요약해보면 주로 ‘40대 또는 학생 단체’ 참가자가 ‘교육 및 학습’을 위해 ‘주변의 추천’을 듣고는 ‘자가용’을 타고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 사업 인지도 면에서는 ‘알고 있다’와 ‘모른다’가 수치상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수준으로, 크게 증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향교서원활용사업도 생생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주변인 추천에 의해 참여한 사람들이 대다수로, 홍보효과가 저조하다고 여길 수 있다.

(3) 향교서원 활용단체의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 현황

- 2017년도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총 87개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일반 생생문화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향교·서원문화재의 특성상 향교·서원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례가 여럿 보인다.
- 향교서원문화재는 조선시대의 지역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과 내용은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체험과 지역전통문화 재현, 강학 등으로 펼치는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주관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이며, 문화재 활용 전문기업 및 마을단체가 일부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향교서원문화재의 활용은 ①일부 향교·서원 직영사업 추진, ②어린이·청소년 위주의 전통문화교육중심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 이를 볼 때, 향교서원활용은 특징적인 지역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과 심도있는 내용의 교육콘텐츠를 구상·개발하여 접목시키는 것이 사업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향교서원과 민간단체의 결합으로 사업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41) ‘14~’16년도 설문조사항목 순위 중 공통된 부분은 연도 표시를 하지 않고 기입하였다.

연 번	지역	유형	문화재명	프 로 그 램 주요 주제	주요 대상	주관단체
1	서울 강서구	향교	양천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2	부산 동래구	향교	동래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향교
3	대구 북구	서원	구암서원	체험중심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사단법인)
4	대구 북구	향교	칠곡향교	교육중심	어린이, 일반인	향교
5	대구 달성구	서원	도동서원	체험중심	누구나	민간단체(재단법인)
6	광주 광산구	서원	월봉서원	체험중심	누구나	민간단체(예술단체)
7	광주 광산구	서원	무양서원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재단법인)
8	광주 남구	향교	광주향교	교육중심	일반인	향교
9	대전 서구	서원	도산서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사단법인)
10	대전 대덕구	향교	회덕향교	교육중심	누구나	지자체(평생학습원)
11	인천 남구	향교	인천향교	체험, 공연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인	민간단체(예술단체)
12	인천 강화군	향교	교동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인	민간단체(재단법인)
13	울산 중구	향교	울산향교	체험중심	청소년	민간단체(예술단체)
14	세종	향교	전의향교	교육중심	일반인	민간단체(마을단체)
15	세종	향교	연기향교	교육중심	일반인	향교
16	경기 평택시	향교	진위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문화원
17	경기 양주시	향교	양주향교	교육중심	유아, 어린이	향교
18	경기 양평시	서원	운계서원	체험중심	청소년	민간단체(재단법인)
19	경기 포천시	향교	포천향교	교육, 체험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20	경기 포천시	서원	용연, 화산 서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21	경기 김포시	서원	우저서원	체험중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서원
22	경기 김포시	향교	통진향교	체험중심	유아,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사단법인)
23	경기 고양시	향교	고양향교	체험중심	유아, 어린이, 청소년	향교
24	경기 오산시	서원	화성 쉼리 사	교육, 체험	유아,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사단법인)
25	경기 파주시	서원	자운서원	체험중심	어린이	민간단체(기업)
26	경기 수원시	향교	수원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재단법인)
27	강원 춘천시	향교	춘천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민간단체(기업)
28	강원 동해시	서원	용산서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29	강원 홍천군	향교	홍천향교	교육중심	누구나	향교

연 번	지역	유형	문화재명	프 로 그 램 주요 주제	주요 대상	주관단체
30	강원 영월군	향교	영월향교	체험중심	가족단위	민간단체(기업)
31	강원 평창군	향교	평창향교	교육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32	강원 정선군	향교	정선향교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향교
33	강원 고성군	향교	간성향교	체험중심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34	충북 청주시	향교	청주향교	체험, 공연	청소년, 일반인	향교
35	충북 청주시	향교	문의향교	체험, 공연	일반인, 유림	향교
36	충북 괴산군	서원	화양서원	체험중심	일반인	민간단체(사단법인)
37	충북 진천군	향교	진천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향교
38	충남 보령시	향교	보령향교	체험, 탐방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사단법인)
39	충남 아산시	향교	온양향교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기업)
40	충남 서산시	향교	해미향교	체험중심	청소년	민간단체(마을단체)
41	충남 논산시	향교, 서원	연 산 향 교, 충곡서원	교육, 체험	어린이, 청소년	향교
42	충남 논산시	서원	돈암서원	체험중심	유아, 청소년	서원
43	충남 부여군	향교	부여향교	체험, 공연 (재현)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사단법인)
44	충남 서천군	서원	문헌서원	체험, 탐방	일반인	민간단체(기업)
45	충남 홍성군	향교	결성향교	교육, 체험	일반인	민간단체(예술단체)
46	충남 예산군	향교	예산향교	교육중심	어린이, 청소년, 일반 인	민간단체(협동조합)
47	충남 공주시	서원	충현서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재단법인)
48	전북 전주시	향교	전주향교	체험중심	일반인	향교
49	전북 군산시	향교	임피향교	교육, 체험	유아,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재단법인)
50	전북 정읍시	서원	무성서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서원
51	전북 남원시	향교	남원향교	체험중심	청소년, 일반인	향교
52	전북 김제시	향교	김제향교	교육중심	어린이, 청소년	민간단체(사단법인)
53	전북 완주군	향교	고산향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재단법인)
54	전북 임실군	향교	임실향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재단법인)
55	전북 순창군	향교	순창향교	체험중심	누구나	향교
56	전남 나주시	향교	나주향교	교육, 체험	일반인	박물관(학교)
57	전남 담양군	향교	창평향교	교육, 체험	일반인	민간단체(재단법인)
58	전남 곡성군	향교	곡성, 옥과 향교	체험중심	누구나	문화원

연 번	지역	유형	문화재명	프 로 그 램 주요 주제	주요 대상	주관단체
59	전남 구례군	향교	구례향교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향교
60	전남 화순군	향교	능주향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향교
61	전남 화순군	향교	동북향교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사단법인)
62	전남 강진군	향교	강진향교	체험중심	청소년	문화원
63	전남 영광군	서원	내산서원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서원
64	전남 장성군	향교	장성향교	교육중심	청소년	향교
65	전남 해남군	향교	해남향교	교육중심	청소년	문화원
66	경북 포항시	향교	연일향교	체험중심	일반인	민간단체(사단법인)
67	경북 경주시	향교	경주향교	체험중심	누구나	향교
68	경북 경주시	서원	옥산, 서악 서원	체험중심	누구나	민간단체(사단법인)
69	경북 안동시	서원	목계서원	체험중심	어린이	민간단체(사단법인)
70	경북 구미시	향교	인동향교	체험중심	일반인	민간단체(기업)
71	경북 구미시	서원	동락서원	체험중심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교 산학협력단
72	경북 영주시	서원	소수서원	교육중심	누구나	학교 산학협력단
73	경북 영천시	향교	영천향교	교육, 체험	어린이, 청소년	향교
74	경북 상주시	서원	옥동서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기타)
75	경북 청송군	향교	청송향교	교육, 체험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재단법인)
76	경북 고령군	향교	고령향교	체험, 공연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기타)
77	경북 성주군	향교	성주향교	체험중심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학교 산학협력단
78	경남 진주시	향교	진주향교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향교
79	경남 진주시	서원	가호서원	교육, 체험	누구나	서원
80	경남 사천시	향교	사천향교	교육, 체험	누구나	향교
81	경남 사천시	향교	곤양향교	체험중심	누구나	향교
82	경남 김해시	서원	월봉서원	교육중심	일반인	서원
83	경남 밀양시	향교	밀양향교	체험중심	누구나	민간단체(기타)
84	경남 창녕군	향교	창녕향교	체험중심	일반인	향교
85	경남 고성군	향교	고성향교	교육중심	어린이, 청소년	향교
86	제주 제주시	향교	제주향교	교육중심	어린이, 청소년	향교
87	제주 서귀포	향교	정의향교	교육중심	누구나	향교

표 15 2017 향교서원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프로그램 주제 등 현황표

향교서원활용사업 단체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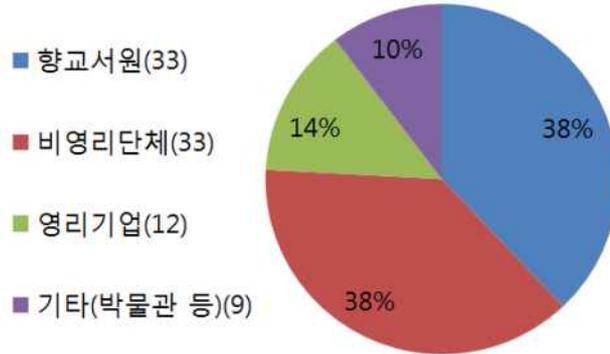


그림 27 2017 향교서원활용사업 단체 분포 비율

(4) 향교서원 활용사업의 시사점

- 향교서원은 조선시대의 지역 교육기관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유림이라는 관리주체를 두고 있다. 활용단체는 유림이라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원활한 협업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 향교서원활용사업이 이처럼 특정 테마를 가진 프로그램인만큼, 향후에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 콘텐츠의 연구와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향교서원 활용사업에서 향교서원측의 전문성이 취약한 만큼 기획자 및 전문강사진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학술세미나와 워크샵, 활용박람회 개최 등 전문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향교서원 유림측과 활용전문단체가 상생 운영할 수 있도록 보전협약 및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에 따른 활용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 또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전체적인 보전협약을 맺고 이들 단체가 개별활용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

2-3)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1) 사업 개요

- 2017년 첫 선을 보이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25개소 불교사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산사에 계승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 활용을 통한 보존, 보존을 위한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산사에서 문화유산 활용은 무형유산적 요소를 우선으로 하며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무형유산적 가치를 더욱 대중화하여 그것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나, 현행 산사프로그램은 주로 1회적 공연이나 종교적 천도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산사 지원프로그램(스태이)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 산사문화재의 계승유산 가치에 기반한 활용은 미약하고, 기존 사찰에서 진행해오던 공연이나 스테이 프로그램에서 크게 차별화된 요소가 없다.

(2) 활용단체의 산사문화재 프로그램 기획과 참여 현황

- 2017년도 전통산사활용사업은 총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사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단체가 포함되어있는 형태이다.
-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요 사찰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었던 ‘괘불이운’, ‘법요식’ 등 공연요소 및 다도(茶道) 등 체험요소가 주를 이루며, 주요 대상은 대체로 어린이 등 특정대상을 위해 설정하지는 않았다.
- 이를 볼 때, 전통산사활용사업은 기존 진행하고 있는 공연요소와 체험요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운영주체의 개입, 특정 대상층을 목표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번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 주 요 주제	주요 대상	주관단체
1	서울 은평구	태화산 수국사	공연요소	누구나	사찰
2	인천 강화군	낙가산 보문사	공연요소	누구나	사찰
3	광주 북구	무등산 원효사	체험중심	누구나	사찰, 청소년수련관
4	경기 성남시	영장산 봉국사	공연요소	누구나	사찰
5	강원 강릉시	만월산 용연사	교육, 체험	누구나	사찰
6	강원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공연, 전시	누구나	사찰
7	강원 고성군	금강산 건봉사	공연, 전시	누구나	민간단체(사단법인)
8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	체험중심	누구나	사찰
9	충북 제천시	구학산 경은사	체험중심	청소년, 일반인	사찰
10	충남 서산시	부춘산 서광사	공연, 체험	누구나	사찰
11	충남 부여군	만수산 무량사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사찰
12	충남 서천군	건지산 봉서사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사찰
13	전북 정읍시	내장산 내장사	체험, 답사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사찰
14	전북 남원시	지리산 실상사	체험중심	누구나	사찰
15	전북 김제시	모악산 금산사	체험중심	일반인	사찰
16	전북 완주군	종남산 송광사	교육중심	청소년, 일반인	사찰
17	전북 고창군	도술산 선운사	공연, 전시	누구나	사찰
18	전남 순천시	송광사, 선암사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민간단체(사단법인)
19	전남 해남군	두륜산 대흥사	체험중심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사찰
20	경북 김천시	불령산 청암사	체험중심	누구나	사찰
21	경북 안동시	천등산 봉정사	공연, 체험	누구나	사찰
22	경북 영덕군	운서산 장육사	공연, 체험	누구나	사찰
23	경남 양산시	영축산 통도사	공연요소	누구나	사찰
24	제주 서귀포	한라산 쌍계암	체험중심	누구나	사찰
25	제주 서귀포	한라산 선덕사	체험중심	일반인	사찰

표 16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주관단체와 프로그램 주제 등 현황표

(3)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시사점

- 선정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산사 문화재와 지역전통유산에 기반한 고유의 정 신문화를 지역사회로 토착화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 발굴해야 한다.
- 축제를 통한 지역자원화를 피할 경우 그 준비과정과 지역민의 참여과정이 활 용프로그램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산사의 문화유산이 중심으로 결합되어 야 한다.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은 현재 추진되는 형태와 같이, 향후에도 해당 사찰의 간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민간단체나 지자체 등이 결합하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재청(40%), 지자체(30%), 산사(30%)’로 매 칭하여 예산배분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2-4) 문화재 야행 활용사업

(1) 사업 개요

-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를 통해 사람들의 나이트 라이프(Night Life)를 충족시 키는 프로그램으로, 야경(夜景), 야로(夜路) 등 밤에 할 수 있는 체험과 감상 등 모든 요소인 ‘8야(夜)’를 특화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총 18개의 문화재 밀 집지역에서 참여중이다.
- 2016년 10개의 야행사업으로 ‘문화재 시설 약 166곳 개방, 전체 약 310개의 야행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야행 관람객 약 105만명, 문화재 가치 및 문화재 활용 인식효과 증가(70점 이상의 점수 도출), 문화재 방문기회 제공 : 첫 방문 비율 약 25%,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약 33,659원(지역민 15,266원 / 관광객 55,620원), 전체사업의 관광객 점유비율 36%, 체류비율 약 20%(1박2일 17%), 20대 여성 참가자의 적극 참여’⁴²⁾라는 성과를 보였다.
- 생생문화재 등 여타 활용사업이 어린이, 청소년 단체 위주의 교육체험 프로그 램 중심인 것과 다르게 문화재 야행은 20대 여성이 주로 참가하는 문화재 관 광과 향유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2) 문화재청, 2016, 「2016 문화재 야행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문화재 개방영역을 야간시간대까지 넓힘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양한 역사체험의 기회와 밤마실문화를 살린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 그러나 야행프로그램이 2~3일간의 단기적 축제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문체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축제·지역축제와 변별성을 갖기 어렵고, 문화재를 소재로 삼는다는 것 외에 타부처에서 하는 축제와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
 - 문화재 야행과 ‘일반 문화유산 답사 및 관광’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야행을 수행하는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프로그램의 특화를 더욱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문화재 활용은 보존을 위한 활용, 활용을 통한 보존 같이 문화재의 보존과 본질적으로 결합된 통합 개념으로써 정착되어야 하나, 현행의 문화재 야행사 업처럼 일반적 축제형식으로 간다면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이밖에, 평소 개방되지 않는 문화재와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잠재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였고, 평소 관심이 부족하였던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평상시 인적이 드문 침체된 원도심에 야행을 진행하여 지역 숙박시설이 매진되는 등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문화재야행 활용사업의 프로그램 기획 현황

- 2017년 18개 문화재 야행이 운영중이며, ‘8야’의 요소 중 문화재에서의 하룻밤인 ‘야숙’과 밤에 감상하는 역사이야기인 ‘야시’를 배제한 형태로 기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대다수의 야행은 주변 문화재의 연계성을 고려하다보니 시설간 거리가 미처 고려되지 못한 곳이 있었으며, 문화재의 경관적 요소의 보강이 취약하였다. 야행의 특성상 거리를 밝혀서 활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문화유산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나, 야간 조명이 부족하여 문화재 연결구간 내 어둠으로 이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다.
- 가수 초청 등 문화재와 무관한 부가적인 문화향유 행위로 인하여, 기존에 기획한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요소로는 문화적 향유요소 외에도 ‘숙박·음식·교통’등 부가적 서비스산업이 있는데,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등의 자료를 보아 문화재야행에서는 ‘야숙’을 유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더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의 연구와 개발로 관람객들이 해당 도시에 하루쯤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번	지역	개요	대상문화재(문화시설은 목록에서 제외)	미활용요소
1	서울 정동	근대문화유산일번지 정동을 통해 본 생생한 역사문화 체험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증명전, 구 신아일보 별관, 구 러시아 공사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경운궁 양이재,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서울특별시의회, 일민미술관, 서울도서관, 그레뱅 뮤지엄 등	야숙, 야시
2	서울 성북동	옛 문인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을밤의 여행	이태준 가옥, 이종석 별장, 만해 한용운 심우장,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구본원, 서울선잠단지, 서울 한양도성, 최순우옛집 등	야숙
3	부산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가 녹아있는 피란수도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 부산전차, 임시수도기념관, 부산주교좌성당, 구한국은행 부산본부, 영도대교 등	-
4	대구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경상감영 설치 이후 영남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선화당, 징청각, 대구근대역사관, 대구화교협회, 대구제일교회, 대구 구 교남YMCA회관, 대구 계산동성당, 선교사 스위트주택, 선교사 챔니스주택, 선교사 블레어주택 등	야숙, 야시
5	광주	호남의 인문, 자연유산이 전해오는 광주 동구에서 달빛걸음	광주읍성유허, 광주전라남도청 구본관, 전남도청회의실, 광주서석초등학교 본관 별관 체육관, 학동 느티나무,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광주 조선대학교 본관, 오지호가, 문빈정사, 춘설헌, 증심사, 약사암 등	-
6	인천	개항을 통해 서구의 문화와 신문물이 유입된 인천 개항장 야행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구 일본 제58은행지점, 청일 조계지 계단,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중구청, 인천 구 대화조사무소, 제물포구락부 등	-
7	경기 수원	정조임금이 설계한 최초의 계획도시,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화성	화성행궁, 화령전, 화서문, 수원화성, 동북각루 등	-

연번	지역	개요	대상문화재(문화시설은 목록에서 제외)	미활용요소
8	강원 강릉	‘밤에도 역사는 늙지 않는다’라는 콘셉트, 오색달빛 강릉여행	강릉대도호부관아, 임당동성당 등	-
9	충북 청주	1500년 이상 중부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청주의 이야기	청주 망선루, 청주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청주 압각수, 청주 척화비, 청주 청녕각,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청주 충청북도청 본관, 청주 구 충북산업장려관, 청주 문화동 일양절충식가옥, 청주 성공회 성당, 청주 충청북도지사 구관사, 청주향교	-
10	충남 공주	구석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유적 산재, 한반도 역사가 압축된 곳	공주역사영상관, 반죽동 당간지주, 공주제일교회,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선화당, 금강철교	-
11	충남 부여	백제 성왕이 국가중흥의 뜻을 품은 역사문화의 고장	공남지, 정림사지 오층석탑, 부소산성, 신동엽 가옥터	야시
12	전북 전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	경기전, 풍남문, 전동성당, 전주향교	야시
13	전북 군산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군산 해망굴,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 동국사,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 군산세관 본관,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야화
14	전북 고창	고창읍성의 정령들이 깨어나 천년을 거슬러가는 달빛 대향연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 취석정, 오거리당산(중앙, 중거리, 하거리), 멀구슬나무, 고창향교 대성전,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어사각	-
15	전남 순천	순천도호부읍성과 근대 선교유적과 관련된 의료, 교육 근대문화유산 탐방	순천 팔마비, 순천 행동 푸조나무, 순천향교, 순천 임청대, 순천 옥천서원 옆 느티나무, 옥천서원, 순천 구 남장로교회 조지와 츠기념관, 순천 매산중학교 매산관, 순천 구 선교사 프레스턴가옥, 구 순천선교부 외국인 어린이학교, 순천 코잇선교사가옥 등	-
16	경북 경주	수많은 문화재와 설화 등 신라시대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경주 천년야행	동궁과 월지, 월성, 석빙고, 계림, 경주향교, 최씨고택, 교동법주, 승혜전, 대릉원, 신라미추왕릉	-
17	경북 안동	달빛아래 소중한 사람들과 거닐며 즐기는 월영교의 정취와 다양한 전통문화 향유	석빙고, 임청각, 법흥사지 칠층전탑 등	-
18	경남 김해	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야와 사랑 이야기	수로왕비릉, 김해향교, 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 봉황동유적지 등	야숙

표 17 문화재야행 활용사업 대상문화재와 활용요소 등 현황표

(3) 문화재야행 활용사업의 시사점

- 야행프로그램이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생생문화재 대상을 야간 관광영역까지 확장시킴으로써 활용대상의 지평을 넓혔다.
- 그러나 문화재 활용사업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활용, 활용에 의한 보존이라는 ‘문화재활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생생사업에 포함시켜 생생문화재 대상을 야간 관광영역까지 확장시켰다.
- 그러나 문화재활용사업이 보존을 위한 활용, 활용에 의한 보존이라는 ‘문화재활용’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야행사업의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야행형 활용 프로그램이 문화재의 상시적 활용을 통해 그 가치를 공유하고 활용을 통한 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회성·축제적 성격에서 벗어나 행사를 자주 추진하거나 상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생생문화재 예산을 증액(1.5~2배)하여 집행하여 행사의 횟수를 증설시키고, 지역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초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 야행사업은 미리 가이드라인을 두어 활용에 따른 상시적 관리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사전에 야간활용을 통한 보존계획 용역 시행시 대상 선정에 인센티브 부여)

3)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

- (1) 문화재청의 타 부서에서도 각각의 업무특성에 따라 교육, 체험, 관광, 정보화(대국민 서비스)요소 등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 사업의 규모면에서 보면 활용정책과의 문화재 활용 사업이 가장 크며, 국가기록유산 포털 등 정보구축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3) 사업의 내용 면에서는 대부분 민간이 주체가 되어 생생문화재 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발굴현장, 수리현장이나 무형문화재를 통한 활용사업 및 정보화사업 등은 민간과 관련부서가 결합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발굴·수리중인 문화재, 무형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주제로는 현재까지 큰 규모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나, 문화재 활용 전문단체와의 결합 등으로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서	사업명	유형	수행주체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2016)
문화유산 교육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교육	문화재청, 한국문화재 재단, 민간 단체, 지자체	1,628 ⁴³⁾	문화유산 방문교육, 고고학체험교 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회소 외계층 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등
정책총괄 과*	디지털 문화 유산 콘텐츠 제작	정보화	문화재청	601	다양한 유무형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디지털문화유산 영상 관 건립에 따른 전시콘텐츠 구축
정보화담 당관실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정보화	한국문화재 재단	2,336	동영상 콘텐츠 제작,보급(연 100여 건), 지상파 등 문화유산 관련프로 그램 협업 제작,방영, 자체 홈페이 지 운영 및 외부 플랫폼 보급,확대
정보화담 당관실	문화재 정보 관리체계 구 축 및 운영	정보화	문화재청	3,900	문화재 공간정보 등 DB구축공유 개방, 문화재 3D 원천 데이터 확 보, 대국민서비스(웹, 모바일 관리 개선),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국립고궁 박물관	구글 CI 페이 지 구축	체험 및 정보화	유물과학과	4	구글에 소장품과 전시장 공개, 들 러보기 페이지 구축 등 ⁴⁴⁾
국립고궁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정보 연계· 공유 추진	정보화	유물과학과	없음	전국 박물관의 정보공유와 대국민 정보공개
궁능문화 재과	경희루 특별 관람	관광	경복궁관리 소	1	경희루 해설사의 해설과 함께 특 별관람
궁능문화 재과	집옥재 왕실 문화강좌	교육	경복궁관리 소	20	강좌를 통한 조선시대사 및 왕실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궁능문화 재과	창덕궁 후원 에서 만나 는 권의 책	체험, 교 육	창덕궁관리 소	12	책읽기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장소 운영(후원 자유관람 기간 중 시행)
궁능문화 재과	석조전 어린 이교육 프 로그램	교육	덕수궁관리 소	9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내부 탐방, 게임 등 체험을 통한 대한제국 역 사 교육

43) 직접운영비 114백만원, 문화유산교육사업지원 1,514백만원

44) Google Cultural Institute

부서	사업명	유형	수행주체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2016)
궁능문화재과	석조전 음악회	공연	덕수궁관리소	34	실내악, 성악 등 클래식 음악 공연
궁능문화재과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교육	덕수궁관리소	18	사전 공연 및 강사와의 질문 및 답변
궁능문화재과	2018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특별전	교육	덕수궁관리소	310	고종의 복식 재현 제작 및 유물 등 기획 전시
궁능문화재과	창경궁 왕의 숲이야기 및 생태체험행사	교육 및 체험	창경궁 관리소	1	창경궁내 자연물(조경 등) 강의, 자연물 공예 공작물 만들기
궁능문화재과	종묘대제 제수진설 체험행사	체험	종묘관리소	15	종묘제례 체험, 제복체험, 제수진설 강의 등
궁능문화재과	고궁 야간 특별관람	관광	궁능문화재과	1,000	경복궁 및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궁능문화재과	조선왕릉 활용	체험 등	조선왕릉관리소, 민간 보조사업자	712	조선왕릉 체험·전시·공연·교육행사 개최, 조선왕릉 제향 지원
궁능문화재과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전	체험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20	세종대왕 탄신 승모제
유적관리소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행사	체험	현충사관리소	100	탄신 기념행사(궁도대회, 다도체험 등)
유적관리소	만인의사 순의제향	교육, 체험	만인의총관리소	40	제향행제, 추모공연 등 부대행사
유적관리소	만인의사 위업선양 추모 예능대회	교육	만인의총관리소	20	전라북도 내 초·중학교 대상 그림 그리기, 글짓기, 서예 대회
유적관리소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체험	칠백의총관리소	68	칠백의사 순의 제향, 추모 및 활쏘기, 보릿짚공예 체험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	체험, 교육	무형문화재 전승자, 보유단체	1,65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무형문화재과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 활성화 사업 지원	체험 등	민간보조사업자	320	종목 전승활동 지원, 전통지식분야 전승활동 지원

45) 중요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 및 기록화 9,900백만원, 중요기록유산 국역사업 4,420백만원

46) 문화재청의 총 활용사업비는 2016년 기준 68,667천원이며, 이중 활용정책과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부서	사업명	유형	수행주체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2016)
국립무형유산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관광 등	국립무형유산원(주관 한국문화재단)	210	개막식, 전시, 공연, 체험관과 행사관 운영, 명사초청강연,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진흥 사업(직접사업)	교육, 공연, 전시	국립무형유산원(직접사업)	4,509	무형유산 교육협력 운영, 상설 기획공연과 전시 운영 등
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정보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240	포털 확대서비스 및 모바일 웹 서비스 개편, DB구축·품질개선, 지식자원화 활용촉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문화재연구원	맞춤형 문화재 발굴현장 공개	체험, 교육	행정운영과, 지방소	118	발굴조사현장 주야간 개방 및 답사, 유적 사진촬영대회, 발굴조사 및 유물처리과정 체험, 발굴체험 교육, 연구현장 탐방
문화재연구원	문화재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체험, 교육	지방소, 보존실, 복원실,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자연실	232	지역주민 대상 고고분야 특강, 보존과학 교육 및 체험,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 연수교육(ACPCS), 자연문화유산 체험교육
문화재연구원	전시를 통한 조사연구 결과 환류	전시	지방소, 자연문화재연구실	84	지방소 전시실 및 천연기념물센터 전시실 연중 개방, 발굴성과 등 활용 특별전 개최
수리기술포럼	문화재수리현장 중점공개	교육	지자체	없음	덕수궁 돈덕전지 발굴 등 17개 사업 중점공개
유형문화재과	국가기록유산 포털(DB구축 및 기록화사업)	정보화	유형문화재과(동산문화재과)	14,320 ⁴⁵⁾	중요전적문화재 원문DB구축(491건), 기록화(159건), 기록유산 국역(173건)
합계				32,632⁴⁶⁾	

표 18 문화재청 타 부서의 활용프로그램 현황(2016)

비는 23,600천원(34.4%), 공권 활용사업비는 12,435천원(18.1%)으로 총 활용사업비의 52.5%를 차지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 정책에서의 문화재 활용

- (1)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문화재청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활용의 목적과 활용 방법 등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를 들어 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 활용을 ‘지역문화유산 발굴’,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ICT기술 접목 등 콘텐츠의 재창조’, ‘전통한옥숙박체험과 한옥 개보수’를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으로, 추진방향에 따라 사업대상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발굴도 가능케 할 수 있다.
- (3)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지역문화유산의 발굴과 관광자원화는 옛 이야기와 유물의 원형적 차원에서의 발굴만이 아닌, ‘재미요소를 부각한 재창조’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통한옥숙박체험과 한옥개보수’는 전통한옥기능의 원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숙박편의시설(화장실 등)을 고려한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형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념과 가이드라인 등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 한옥의 원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 (4)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를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재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관광산업육성정책의 목표 자체가 ‘관광산업의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의 중복·유사사업을 모두 관리하여 문화재 원형발굴과 보존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활용을 통한 보존’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 활용사업의 총괄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문화재 활용과의 관계
여행패턴을 고려한 입체적 관광 콘텐츠 육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명소화	지역스토리 등 무형의 관광자원 발굴, 융합, 관광지 환경정비 등	지역문화유산 발굴
	역사와 문화를 융합, 차별화된 즐길거리 창출	한반도 둘레길 등 걷기여행길, 생태자원 체험관광 프로그램(습지, 철새도래지, DMZ 등)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지역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8개 권역별로 연계, 개발, 추진, 관광자원 확충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시행	숙박 및 쇼핑분야 관광서비스 등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빅데이터 기반 여행수요에 맞는 여행 플래너 서비스, 대표 여행지를 활용한 VR콘텐츠 등	콘텐츠 재창조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방관광 여건 개선	시티투어 육성, 고속철도 연계상품 도입 등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전통한옥 시설개보수(객실·욕실 등), 전통한옥체험, 우수숙박업소 지정, 관광호텔 인허가 지원 등	전통한옥 숙박체험 활용, 개보수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내용	문화재 활용과의 관계
관광벤처기업 체계적 육성 및 양질의 고용 창출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창업지원,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지원, 도약 및 성숙지원 등	
	관광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융자지원 확대, 신규채원 발굴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질적 체질개선	방한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 안정성 강화	일본, 동남아, 중화권 관광객 유치 등	
	중국시장 안정적 관리	한중 관광시장 관리감독 실무회의 정기개최, 개별관광객 상품 개발 등	
	방한관광 고품격화	한류비자 신설 연계, 방한상품 개발, 단체관광 모니터링 강화 등	
	개별관광객 특화 정책 집중 추진	1박2일 등 관광상품 개발, 음식관광 개발, 마케팅 효율화 등	
의료·웰니스관광 및 마이스(MICE)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웰니스관광 육성	의료관광 등 육성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앙-지방 협업, 신규시장 확대	

표 1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육성정책(2017)

5)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활동 현황

- (1) 문화재청은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2)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개 업체가 지정되었는데, 해당 기업은 문화유산의 체험, 교육, 관광, 상품개발, 관리, 시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문화재 활용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 (3)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의 매출규모는 년 2억원 미만부터 10억원 내외, 직원 수는 5인~10인, 직원 평균연봉은 3천만 원 미만 정도로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생생문화재 등 지역문화유산 활용에서부터 문화상품개발 등 문화산업 전반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 활용이 현재까지는 수익 창출면에서 매력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 (4) 여타 사업의 발전단계와 같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기타 활용단체는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 활용단체가 핵심사업으로서 활용사업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할 때 사업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때 문화재청의 활용예산 증액이나 대규모 투자 등이 뒷받침될 때 활용단체는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단체의 규모가 확장된다면 역량에 따라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조해낼 것이다.
- (5)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6)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성장을 위해 문화재 활용시장영역의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 등 문화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감하고 있어,⁴⁷⁾ 문화재 활용사업영역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47) 2016년 기준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직원이 6,211명에 달하는데, 이는 코스피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직원 수와 비슷한 규모이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사례를 보면, 1백만달러 당 창출되는 일자리는 18.1개로 자동차제조업(3.5개), 항공교통산업(8.7개) 등 기존 고부가가치사업보다 월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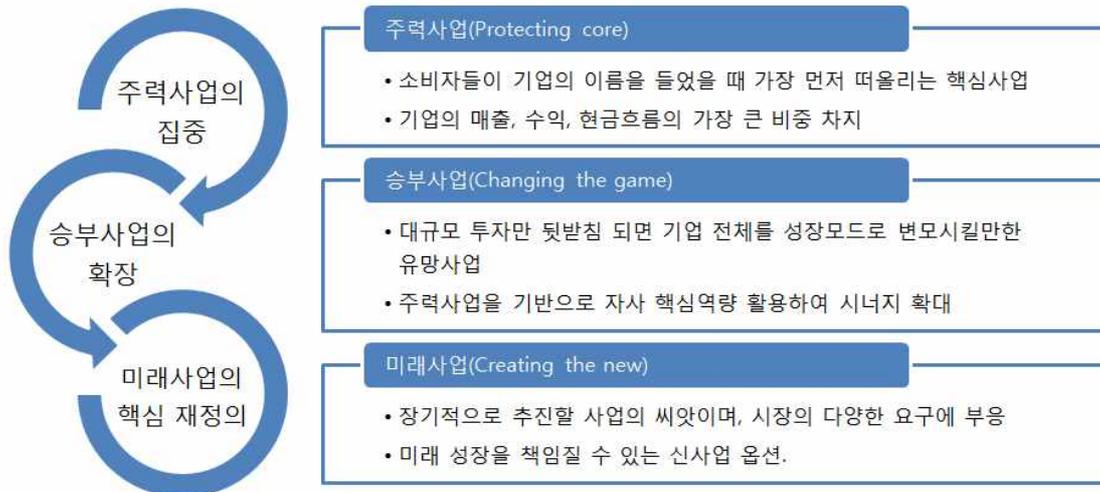


그림 29 사업의 성장단계

(출처 : The 3 Horizons for Growth(Steve Coley, Mckinsey, GS칼텍스)

(* 표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

년도	지역	기관명	주요사업
2012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거래문화사업단*	문화유산 경상관리, 교육, 체험
	경북	(사)답실문화유적보존회	전통문화체험
	전남	문화유산국민신탁 보성여관사업단	문화유산 교육, 체험(숙박,카페)
	서울	(주)문화희망 우인	문화유산 관광, 교육
	대전	백제문화원*	문화유산 교육, 체험
	경북	(사)신라문화원 문화보존활용센터*	문화유산 관광, 교육
	서울	위례역사문화연구회	문화유산 교육, 체험
	제주	(사)제주전통용기전승보존회	문화유산 체험, 상품개발
	충북	충북문화유산지킴이*	문화유산 경상관리, 교육, 홍보
	광주	(주)칠석고싸움놀이 청년문화사업단	문화상품 개발, 전통문화교육
	서울	(주)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유산 컨설팅, 연구용역, 콘텐츠개발
	서울	(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문화유산 교육, 체험
	서울	(재)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 사회문화사업단	문화유산 경상관리
경기	(사)화성연구회	문화재 경상관리, 교육	
2013	서울	(주)마인드디자인*	문화행사 기획, 문화상품

(* 표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

년도	지역	기관명	주요사업
	강원	(주)배다리문화원*	문화재관리, 문화체험
	광주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	문화공연, 문화예술교육
	서울	(주)애기꾼	문화기획, 스토리텔링
	충북	(주)에이치앤크래프트초이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교육
	제주	제주미디어(주)*	문화체험, 홍보
	인천	(주)한국공예전승협회*	전통문화상품 개발
	서울	(주)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문화유산 교육, 활용
	충남	(사)한옥체험업협회*	문화재관리, 문화체험
	경기	(주)한채당한옥	전통문화상품 개발
2014	서울	(사)대한불교청년회 내 참교육문화사업단	문화체험교육
	서울	악당이반(주)	전통, 근현대음원기록 및 음반제작
2015	서울	(주)소사이어터 알렙	전통주 관련 체험, 홍보, 플랫폼 조성 등
	경기	출판도시활판공방주식회사	활판인쇄문화 보존 및 활용(체험교육 등)
	서울	한옥협동조합	한옥 시공 및 교육
2016	경기	고사리협동조합	문화, 역사, 지질 답사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서울	(주)문화나눔연구원	문화유산교육,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개발, 문화유산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
	경기	(주)이크택견	택견 공연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전남	(사)진도개공연단	진돗개 묘기 공연, 자견분양, 위탁훈련소 운영 등
2017	울산	(주)답사친구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 등
	서울	(주)케이앤아츠	문화유산 창작예술 및 공연
	서울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	문화유산 교육 및 공연 컨설팅

표 20 연도별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단체 목록

2. 문화재 활용의 성과와 과제

그동안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의 가치를 찾고 그것을 나누려는 여러 주체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수리·보수 등 보존적 관리에서의 보존’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재 활용분야에서 활용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는데, 향후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속할수록 국민의 인식은 변화할 것이고,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한편 보존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 활용에 따른 성과는 크게 ‘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양적 성장과 가치 확산’, ‘활용기반 구축’ 등의 세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문화재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⁴⁸⁾

1)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1) 개방·공개 확대

- 문화재 개방·공개와 관람은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온 가장 기본적인 문화재 활용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형·무형 문화재를 관람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체감한다.
- 특히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은 그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했던 곳으로 국민이 보기 어려웠던 곳이나, 발굴조사과정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현장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과 공개 확대는 활용 대상을 결과물(발굴성과 공개)에서 과정(조사·복원 등)으로 확대해나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건축문화재 수리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기존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처럼 결과물의 공개만 이루어졌으나, 수리 과정을 공개하여 우리 건축물과 문화재에 관한 이해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방법으로 작용한다.

48) 류호철, 2017, 「문화재 활용, 새로운 정책 방향」, 19~32p

※ 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현장 개방 사례

- 경주 월성 발굴현장개방(‘문화가 있는 날’ 연계)
 - “천년 궁성, 월성을 걷다” (’16. 3.) : 현장설명 및 퀴즈 맞추기 등
 - “빛의 궁궐, 월성” 야간개방행사 (’16.10.) : 건물지 1곽 조명설치
-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촬영대회(’16. 5.)
 - 수상작 선정 및 전시, 발굴현장 개방, 포토존 운영 등
- 경주 월성 상시개방 : 매주 금요일 14:00~17:00
- 경주 쪽샘유적발굴관 현장 개방(’14. 5.~) : 일3회 현장 안내
- 경주 쪽샘유적발굴관 연중 운영 체제 전환(’16.10.~)



그림 30 부여 백제 사비도성의 빙고유적 발굴현장 공개(2015)



그림 31 의성 탑리 오층석탑 문화재수리 현장 공개(2015)



그림 32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전시관 전경(좌)과 전시관 내부의 복원현장(우)

(2) 활용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속적 확대

-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여 문화재 활용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소극적 활용에서 나아가 살아있는 문화를 시각 등 감각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3 수문장 교대의식 후 기념촬영 그림 34 정조 능행차 재현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3)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여러 형태의 문화재 활용 중 미래적 관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큰 것이 문화유산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은 미래 세대들이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해주는 활용 방법이자 문화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역사와 문화 등 관련 분야 교육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그동안 문화유산 교육적 활용은 ‘문화유산 방문교육’, ‘고고학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2016년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32회 수행
 - 2016년 왕실문화 교육프로그램 48종 840회 수행
 - 2016년 국립고궁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 140회 수행 등

(4) 다양한 활용 시도와 경험 축적

-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지역 민간단체 등 여러 주체들은 지금까지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 문화유산의 재현·체험·교육·전시·공연에서부터 정보서비스 제공·미디어 파사드 등 콘텐츠의 재창조로 활용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림 35 궁궐 미디어파사드



그림 36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 양적 성장과 가치 확산

(1) 문화재 관람객 등 수요자 증가

-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될수록, 해당 문화재를 관람하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 특히 경복궁과 덕수궁 등 주요 전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재야행과 같은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참가자도 증가 추세이다.

(단위 : 명)

관광지	관광객	총계	4대궁 및 종묘 내외국인 관광객 총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복궁	내국인	17,546,028	3,098,348	2,953,338	3,657,756	3,347,046	3,122,183
	외국인	10,081,569	1,423,823	1,446,982	1,917,948	1,714,487	2,897,935
	합계	27,627,597	4,522,171	4,400,320	5,575,704	5,061,533	6,020,118
종묘	내국인	1,296,979	187,554	211,673	235,852	222,228	253,909
	외국인	573,299	217,862	121,728	74,035	54,505	75,494
	합계	1,870,278	405,416	333,401	309,887	276,733	329,403
창경궁	내국인	3,877,168	558,571	608,215	705,240	807,487	845,388
	외국인	221,875	39,634	29,179	34,727	41,602	49,749
	합계	4,099,043	598,205	637,394	739,967	849,089	895,137
창덕궁	내국인	6,194,022	871,571	1,077,987	1,155,526	1,226,217	1,287,308
	외국인	2,689,940	587,397	496,714	454,707	405,780	532,728
	합계	8,883,962	1,458,968	1,574,701	1,610,233	1,631,997	1,820,036
덕수궁	내국인	5,329,746	765,343	1,035,879	1,151,792	1,108,388	1,268,344
	외국인	950,548	167,739	144,338	182,096	178,593	277,782
	합계	6,280,294	933,082	1,180,217	1,333,888	1,286,981	1,546,126

표 21 2012~2016년 4대궁 및 종묘 내외국인 관광객 총계(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016년과 2017년 문화재청이 한국문화재단 및 지역단체들과 함께 한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문화재 활용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⁴⁹⁾

유형	명칭	횟수	대상 문화재	지역
직접	수문장 교대 의식	일 2회	경북궁	서울
	경복궁 자경전 다례체험	연 32회		
	수라간 시식공감(궁)	연 34회		
	대장금과 함께하는 경북궁 별빛야행	연 90회		
	경희루 야간음악회(궁)	연 7회		
	왕가의 산책(궁)	연 16회		
	고궁음악회(궁)	연 225회	경북궁·창경궁	
	창덕궁 달빛기행	연 92회	창덕궁	
	왕실 내의원 한의학 체험(궁)	연 5일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 답사(궁)	연 8회		
	궁궐 일상을 걷다 - 영조와 창경궁(궁)	연 22회	창경궁	
	궁궐속 인문학순회강좌	반기 10회		
	1750 시간여행 그날(궁)	연 2일		
	야외 궁중극(궁)	연 4회		
	영조와 창경궁(궁)	연 4회		
	덕수궁 풍류	연 20일	덕수궁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궁)	연 22일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 - 대한의 꿈(궁)	연 3회		
	대한제국과 가배차(궁)	연 9일		
	대한제국 음악회(궁)	연 3회		
종묘 묘현례(궁)	연 6회	종묘		
종묘제례악 야간공연(궁)	연 4회			
지원	생생 문화재	120건('17)		지역 (전국)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87개소('17)	향교·서원	
	문화재 야행 사업	18개('17)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25개소('17)		
	자연유산 민속행사	67건('17)	천연기념물·명승	
	문화유산 방문교육	27단체('17)	지역 문화재	
	고고학 체험교실	10단체('17)	매장문화재	

표 22 문화재 활용사업의 횟수 등 현황 (궁) = 궁중문화축전에 포함되는 활용 프로그램

49) 류호철, 「문화재 활용정책에 관한 거시적 평가와 새로운 활용정책 방향 모색」, 『동아시아고대학』 제 4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7.

- 여기에 경복궁 등 궁궐을 야간에 개방한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야간 특별관람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2016년에는 연간 120일 간으로 확대할 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경복궁 등 4대 조선 궁궐과 종묘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천만 명을 돌파했다. 2015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에는 18만 5천 명에 이르는 인파가 찾았고, 2013년에는 하루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에 몰려들어 큰 혼잡을 겪기도 하였다.

(2)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성장

- 문화재 활용은 여전히 조선 궁궐을 대표적인 활용 자원으로 삼고 있으나, 궁궐 이외 다른 유형의 문화재,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문화재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따라 생생문화재, 향교서원활용, 전통산사문화재활용, 문화재야행사업 등 활용사업과 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생문화재	45건/12억	70건/18.3억	103건/20.5억	88건/20.7억	120건/28억
향교서원문화재	-	38개소/12억	71개소/21.2억	77개소/22.2억	87개소/28억
문화재야행	-	-	-	10개사업/30억	18개사업/45억
전통산사문화재	-	-	-	-	25개소/10억
합 계	45건/12억	108건/30.3억	174건/41.7억	175건/72.9억	250건/111억

표 23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예산과 건수('13~'17)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단체수		예산	단체수		예산	단체수		예산	단체수		예산	단체수		예산	단체수	
		신청	지원															
방문교육(학교방문 체험교육)	500	27	20	500	26	22	700	54	31	630	50	27	672	44	25	720	42	27
고고학체험(발굴현장 활용)	100	21	10	107	20	11	100	23	10	100	18	10	100	14	10	100	15	10
톡톡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																215	25	7

표 24 문화유산교육사업 예산과 참여단체 현황('12~'17)

3) 활용 기반 구축

(1)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실행 기구 역량 확보

- 문화재 활용 정책은 현장에서의 실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로 문화재청이 수립한 정책을 문화재청 산하 법인인 한국문화재단 등을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둘째로 문화재청은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맡고 각 지역 민간단체와 개인 등 민간이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 지역단체 등 민간의 조직과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제한된 공공 자원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지역별 특성화를 이루는 등 정책 목표를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불가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정부 예산만으로 다 보전할 수 없는 문화재를 시민의 힘으로 보호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 세계적으로 촉진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국민신탁’ 등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규모면에서 초기단계이지만, 영국·미국(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 내 영향력있는 시민단체로 성장하였다.

(2) 문화재 콘텐츠 및 정보 제공 기반 마련

- 문화재 활용 정책을 적극화하면서 문화재 콘텐츠와 정보 서비스도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하나로 문화재에 관한 주요 설명과 사진 몇 장씩 제공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채널’,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기록유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2017. 11. 기준 / 단위 : 건)

구분	국보	보물	국가민속	시도유형	총계
문화재 지정	331	2,085	296	3,136	5,848
원문구축현황 (2017.11.)	70	880	93	204	1,247
문화재 지정대비 구축비율	21.14%	42.20%	31.41%	6.50%	21.32%

표 25 국가기록유산 원문검색가능자료 구축현황(2017.11. 기준)

◆ 문화유산 콘텐츠 플랫폼 이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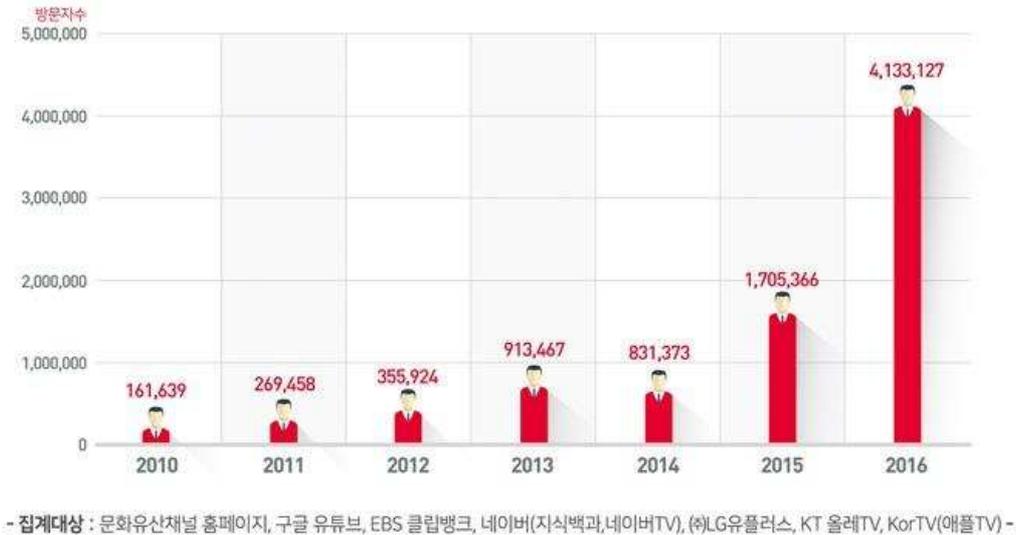


그림 37 문화유산채널 문화유산 콘텐츠 플랫폼 이용 현황('10~'16)

(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문화재 간접(2차적) 활용 시도

- 문화재 활용은 수요자가 문화재 실물을 직접 접하며 그 가치를 누리는 활용이 있는데 비해, 사진이나 영상물 등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전자를 직접활용 또는 1차적 활용이라고 하며, 후자를 간접 활용 또는 2차적 활용이라 할 수 있다.
- 문화재의 간접 활용은 문화재 실물을 직접 대할 수 없는 없어져버린 문화재를 활용할 때 효과적이다. 예컨대 경주 황룡사지를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재현하여 옛 모습을 여행하듯 가치를 누리볼 수 있다.
- 한편 문화재 간접 활용은 공개되지 않는 문화재를 재현할 수도 있다. 공주 무령왕릉이나 경주 석굴암 등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나, 이를 첨단기술로 재현할 수 있다.
-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문화재 간접 활용은 직접적인 1차적 활용과 마찬가지로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발현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재현시켜야 한다.



그림 38 디지털 기술로 복원되어 어디서든 관찰 가능한 석굴암 내부(출처 : JIKIO)

4) 문화재 활용의 한계와 과제⁵⁰⁾

문화재 활용은 공급도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점점 활성화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온 한편으로 그동안의 문화재 활용은 몇 가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활용 활성화를 모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를 넘어설 때 문화재 활용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면서도 문화재 자체의 가치도 증진시키는 바람직한 활용을 실현할 수 있다.

(1) 양적 성장에 치우친 활용

- 문화재 활용이 갖는 한계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활용 품질과 수요자의 만족도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활용 사업 성과를 관람객 수, 참여 인원,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양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알 수 있다.
- 경복궁 등 조선 궁궐에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궁궐의 멋과 풍정(風情)을

50) 류호철, 「문화재 활용 정책에 관한 거시적 평가와 새로운 활용정책 방향 모색」, 『동아시아고대학』 제4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7 참고.

느끼며 조선과 조선의 왕, 조선시대 사람들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하나, 밀려드는 관광객들과 그들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이러한 궁궐 향유는 생각조차 해보기 어렵게 되었다. 궁궐의 참 멋과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 되었다.

- 양적 성장은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문화재로서의 풍부한 가치를 향유하며 만족도를 증진함하며 이루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용에는 오히려 상당한 부정적 요인이 된다. 이제는 양적 성장에 몰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문화재 활용의 품질을 높이고,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품격 있는 활용을 지향할 때가 되었다.

(2) 특정 가치에만 주목하는 단편적 활용

- 문화재는 사람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면서 형성하고 유지해온 산물로 다채롭고 풍부한 복합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 자연현상을 읽는 지혜, 자연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전통지식, 사람들 사이의 관계, 풍속과 관습, 갖가지 기술과 예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문화재에 녹아들어 있다.
- 그런데 문화재 활용은 이러한 풍부한 의미와 가치를 두루 살피며 다각적으로 누리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중 특정 가치, 일부의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재를 단편적으로만 활용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경복궁을 찾는다면, 전각들을 보며 건축물로서 외형적 구조나 건축양식 등에만 집중하거나, 각 전각의 용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큰 틀에서 궁궐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입지적 특성은 무엇이고 왜 그곳에 궁궐을 건설했는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였고 왜 그렇게 하였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주변 산과 하천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풍수지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고 왜 그런 것들이 궁궐 안에 있는지, 우리 궁궐의 특성은 무엇이며 왜 그런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등이 모두 궁궐에 담긴 의미이자 가치이다.
-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재의 가치들 중 단지 일부에만 주목하여 문화재

를 제한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재 활용이다. 문화재의 가치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때 문화재 활용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3) 문화재 유형 간, 지역 간, 지정·비지정 문화재 간 불균형

- 조선 궁궐에서부터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여 2016년 궁궐에서 이루어진 활용 프로그램이 총 650회에 이르고 4대궁과 종묘 관람객이 내국인만 1천만 명, 외국인을 합하면 1천 370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문화재 활용은 전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⁵¹⁾, 조선 궁궐과 근대문화재, 향교·서원 등 일부 유형의 문화재에 활용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 지역적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경주 등 고도(古都)에 문화재 활용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거점을 중심으로 활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거점으로부터 각 지역으로 활용 활성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 지정·등록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누어 볼 때는 문화재 활용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집중되어 있고, 시·도지정문화나 비지정문화재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근현대에 형성된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형태의 것들은 박물관과 전시관, 도서관 등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을 뿐이다.
- 이처럼 문화재 활용이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에 집중된다면 문화재 활용의 폭이 그만큼 협소해지고 활용의 다양화와 문화재의 가치 증진도 어려워지게 된다. 지정·등록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간 연계·융합 활용 등의 방법을 모색한다면 문화재 활용의 지평을 넓히며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재 활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하향식 활용

- 지금까지의 문화재 활용은 주로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청이 주도하고 지역과 민간은 이를 따르는 관 주도형 성격이 강했다. 문화재청이 큰 틀을 마련하면

51)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재청, 2016, 2쪽;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 문화재청, 2016, 5쪽.

지역과 민간은 그 틀 안에서 공모 지원 등을 통해 문화재 활용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 이처럼 관이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특성이 비추어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장 실행 주체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활용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관 주도형 활용은 활용 방법의 획일화와 지역 주민 소외, 민간의 창의성 배제 등 활용 활성화에 역행하는 활용 방법이 될 우려가 크다. 관 주도형 활용,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은 각 지역 문화재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획일화된 활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문화재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과 민간 등 각 주체가 자신들의 특성과 역량, 위치 등에 맞추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할 때 문화재 활용은 지역적 특성을 담아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드러낼 수 있다.

3. 문화재 활용 환경⁵²⁾

1) 활용을 통한 보존의 인식

(1) 문화재 정기적 활용을 통한 정기적 관리와 원형 유지

앞서 서론에서 건조물 문화재의 예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재의 활용 행사를 준비·진행할 때마다 개별 문화재들은 점검되고 정돈된다. 그러나 행사를 통해 사람이 다니지 않는 문화재는 방치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재는 활용을 통해서 정기적인 관리와 원형 유지가 수월해진다.

(2)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양질의 보존활동 수행

- ‘시민의 유산’으로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유산을 활용·보존하고 있는 내셔널 트러스트는 문화유산 활용 등으로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양질의 보존활동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회비수익 다음으로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수익이 높은 편이며, 창출된 수익의 대부분을 문화유산 보존과 운영, 취득에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더욱 많은 수익을 거둘수록 더 많은 문화유산에 관리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 천 유로)

2014~2016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주요 수익과 지출구조							
수익	2016	2015	2014	지출	2016	2015	2014
문화유산 활용 등 직영 사업 수익 ⁵³⁾	155,452	145,145	132,816	문화유산 보존과 운영비	350,822	330,608	305,162
엔터프라이즈활동 수익 ⁵⁴⁾	71,512	65,260	60,858	문화유산 취득지출	16,817	7,465	5,785
회비수익	178,084	160,998	150,302	엔터프라이즈활동 지출	53,769	47,221	44,704
그밖의 수익	117,117	122,705	116,322	그밖의 지출	119,155	114,608	112,286
총 수익	522,165	494,108	460,298	총 지출	540,563	499,902	467,937

표 26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주요 수익과 지출구조('14~'16)

52) 류호철, 2017, 「문화재 활용, 새로운 정책 방향」, 39~45p, 일부 인용.

53) 홀리데이코티지 고택숙박사업, 요식업, 주차장과 캠프 수익, 렌트사업, 입장료 등

54) 활용 이벤트(축제 행사 등), 리테일사업, 매거진 판매 등

(3) 무형문화재의 전승, 공유 강화 및 재창조

- 문화재 활용활동이 활발할수록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전승과 공유 등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가 열의를 가지고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보존회는 공연과 체험 등의 추진실적이 높으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도 높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고성오광대보존회는 생생문화재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2016년 기준 44개 회차를 생생문화재에 할애하여, 다른 공연 프로그램보다도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보존회는 공연과 체험 스케줄을 충분히 소화하면서도 관람객에게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연습도 꾸준히 하였다. 2016년 보존회 전승자 출석부를 보면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가 꾸준히 참여하여 공연 연습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 고성오광대 공연 등 추진실적						
연번	구분	추진	행사명	행사 기간	회차	행사내용
1	교육	주최, 주관	2016 동기탈춤캠프	1.10.~2.06.		일반인 등 전수
2	교육	주최, 주관	2016 하기탈춤캠프	7.10.~8.13.		일반인 등 전수
3	교육	주최, 주관	강습프로그램 “오광대가 좋다. 말뚝이가 간다”	3월~10월		고성오광대놀이 강습
4	공연	주최, 주관	상설공연 “관2016”	4월~10월	9회	공연
5	체험	주최, 주관	2016생생문화재,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4월~10월	44회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6	공연	주관	신나는 예술여행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5월~10월	8회	인형극 공연
7	공연	주관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해설이 있는 공연)	3월~10월	8회	공연
8	공연	참여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공연	4.30, 5.15.	2회	공연
9	공연	참여	진주탈춤한마당 공연	5.28.	1회	공연
10	공연	참여	2016대한민국 탈춤제 공연	6.04.	1회	공연
11	공연	주최, 주관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진주해광학교)	8.10.	1회	공연
12	공연	주관	해외공연(루즈크)	8.19~26.		공연
13	공연	참여	2016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10.09.	1회	공연

표 27 2016 고성오광대 공연 등 추진실적

2016 고성오광대 전승자 상반기 출석부									
날짜(모두 6일간)	1.11 ~1.16	1.18 ~1.23	2.01 ~2.06	3.15 ~4.10	5.13 ~6.17	7.11 ~7.16	7.18 ~7.23	7.25 ~7.30	비고
보유자	6일	개근							
조교1	6일	개근							
조교2	3일	2일	2일	6일	5일	3일	2일		
조교3	6일	개근							
조교4	6일	6일	6일	6일	6일	6일	5일	6일	1회결석
조교5	6일	6일	6일	6일	6일	5일	4일	6일	3회결석
이수자1	6일	6일		6일	6일	6일	6일	6일	
이수자2	6일		6일	3일					
이수자3		6일	6일	3일		6일		6일	
전수자1	1일	1일	1일	2일	2일	1일	1일	1일	
전수교육생1			6일	4일		6일	5일	5일	

표 28 2016 고성오광대 주요 전승자 상반기 출석부

(단위 : 천원)

'2017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대상 중 생생문화재사업 참가 무형문화재					
번호	지자체	지정문화재	국비+지방비	2017생생문화재참여	2016 우수사례 ⁵⁵⁾
1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제7호고성오광대	142,500	참여	우수사례
2	동래구	국가무형문화재제18호동래야류등	97,500		우수사례
3	수영구	국가무형문화재제43호수영야류등	72,500		
4	강릉시	국가무형문화재제13호강릉단오제	70,000		우수사례
5	강릉시	국가무형문화재제11-4호강릉농악	70,000	참여	우수사례
6	원주시	시도무형문화재제18호원주매지농악	70,000	참여	
7	임실군	국가무형문화재제11-5호임실필봉농악	62,500		
8	사천시	국가무형문화재제11-1호진주삼천포농악등	62,500		
9	제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71호제주칠머리당영등굿	60,000	참여	우수사례
10	통영시	국가무형문화재제82-4호남해안별신굿	55,000		
11	당진시	국가무형문화재제75호기리지시줄다리기	50,000	참여	
12	안동시	국가무형문화재제69호하회별신굿탈놀이	50,000	참여	우수사례
13	창원시	국가무형문화재제30호가곡	45,000		
14	청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101호금속활자장	32,500		
15	광양시	국가무형문화재제60호장도장	32,500		
16	나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115호염색장(윤병윤)	32,500	참여	
17	제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67호탕건장	32,500		
18	충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76호택견	30,000		
19	공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5호관소리	30,000		

55) 국가무형문화재 우수활동 보유단체 모범사례집에 소개된 우수사례

(단위 : 천원)

‘2017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대상 중 생생문화재사업 참가 무형문화재					
번호	지자체	지정문화재	국비+지방비	2017생생문화재참여	2016 우수사례 ⁵⁾
20	순창군	시도무형문화재제32호금과들소리(들소리)	30,000		
21	곡성군	국가무형문화재제60호장도장	30,000		
22	남원시	시도무형문화재제7-4호남원농악	27,500		
23	나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115호염색장(정관채)	27,500	참여	
24	평택시	국가무형문화재제11-2호평택농악	25,000		
25	강릉시	시도무형문화재제5호강릉학산오독떼기	25,000		
26	고성군	시도무형문화재제16호각자장	25,000		
27	정읍시	시도무형문화재제7-2호정읍농악	25,000		
28	나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99호소반장	25,000		
29	부안군	시도무형문화재제29호사기장(청자)	22,500		
30	진주시	국가무형문화재제12호진주검무	22,500		
31	부천시	국가무형문화재제29호서도소리	20,000		
32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제11-3호이리농악	20,000		
33	진주시	시도무형문화재제27호진주오광대	20,000		
34	청주시	시도무형문화재제7호배첩장	17,500		
35	김천시	시도무형문화재제8호금릉빛내농악	17,500	참여	
36	인천광역시	시도무형문화재제1호삼현육각등	15,000		
37	광주남구	국가무형문화재제33호광주칠석고싸움놀이	15,000	참여	
38	남원시	국가무형문화재제65호백동연죽장	15,000		
39	보성군	국가무형문화재제31호낙죽장	15,000		
40	익산시	시도무형문화재제1호익산목발노래	12,500		
41	과천시	국가무형문화재제58호줄타기	10,000		
42	구리시	시도무형문화재제15호구리갈매동도당굿	10,000		
43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제83-2호이리향제줄풍류	10,000		
44	김포시	시도무형문화재제23호김포통진두레놀이	7,500		
45	당진시	국가무형문화재제86-2호면천두견주	7,500		
46	완주군	국가무형문화재제55호소목장	7,500		
47	익산시	시도무형문화재제25호익산기세배보존회	7,500		
48	곡성군	시도무형문화재제35호곡성죽동농악	7,500		
49	청도군	시도무형문화재제4호청도차산농악	7,500		
50	진주시	시도무형문화재제31호두석장	7,500		
51	마포구	국가무형문화재제30호가곡	5,000		
52	해남군	국가무형문화재제8호강강술래	5,000	참여	
53	진주시	시도무형문화재제10호장도장(은장도)	5,000		
54	구미시	시도무형문화재제27호구미발갱이들소리	2,500		
합계		54개소	1,650,000		

표 29 ‘2017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대상 중 생생문화재사업 참가 무형문화재

2)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

(1) 문화재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가치 재인식

-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따른 등재유산의 증가, 궁궐 야간 개장 등 개방·공개와 활용 확대, 다양한 활용 사업 증가 등의 현상은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을 대변한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 증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석굴암과 불국사(이상 1995년 등재)를 시작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등재)까지 총 12건 등재. 기록유산(2017년 기준 16건)과 무형유산(2016년 기준 19건)도 등재.
문화재 개방 공개와 활용 확대	2005년, 경회루 44년만에 일반 개방 2010년, 경회루 제한적 특별관람 재개 2013년, 궁궐 전각 내부 개방은 불가 원칙이며 심의를 받아 한시적 개방·운영하던 것을 심의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확대 실시. 2016년, 4대궁 및 종묘 등에서 16개 프로그램 운영

표 30 국민의 문화적 욕구 증대를 대변하는 문화재 개방 등의 효과

(단위 : 건)

구분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세계유산	3	5	7	7	8	10	11	12	12	12
기록유산	0	2	4	4	6	7	11	13	13	16
무형유산	0	0	1	2	3	11	17	18	19	19
계	3	7	12	13	17	28	39	43	44	47

표 3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문화재 등재 현황('95~'15)

(2) 문화재 향유 욕구 및 활용 수요 증가

-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에 참여하기 위해 경복궁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경복궁에서는 야간특별관람의 개방일수를 증가하는 추세.
- 2013년 봄 경복궁 야간 개장에는 궁궐의 밤 풍경을 즐기려는 인파가 하루 4만 명 넘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었고,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1일 최대 관람 인원을 4만 명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 사이에 문화재의 가치가 그만큼 넓게 확산되었고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를 누리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성황리에 진행되는 각종 활용사업과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생생문화재를 예로 들면, 2012년에 비해 2016년 총 참가자수는 꾸준히 증가.⁵⁶⁾ 이에 따라 생생문화재 사업 신청 및 지원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복궁 야간특별관람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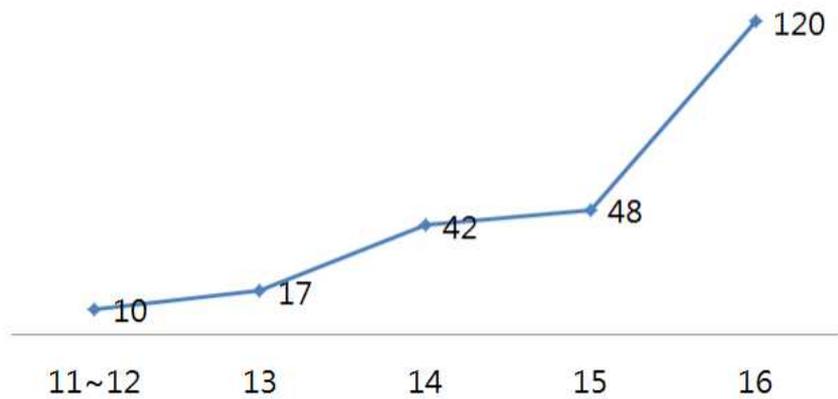


그림 39 경복궁의 연간 야간 특별관람 일수('11~'16)

생생문화재 총 참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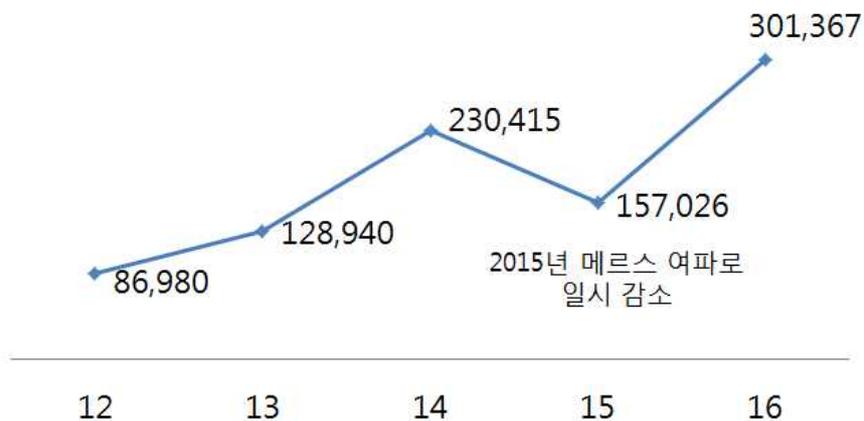


그림 40 생생문화재 총 참가자 수의 변화('12~'16)

56) 2015년 메르스 여파로 프로그램이 일시중단되어 참가자수도 일시 감소한다.

(3) 교육 소재로서의 가치 부각과 교육적 활용 수요 증가

- 궁궐과 고도 등 주요 문화유적, 또는 박물관 등 문화재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재가 갖는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해진 결과. 교과서 속 역사교육을 넘어 생생한 현장 교육으로서의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다.
- 문화재청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를 인식, 문화재활용국 내 문화유산교육팀을 따로 신설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교육 관련 사업 예산과 참여단체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문화유산교육팀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용
2006년 이후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행	2006년 8개 단체 / 215개교(25,449명) ⇒ 2016년 25개 단체 / 712개교(110,699명)
교재 발간 등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등 개발·보급	어린이교양도서·세계유산 교육지침서 번역출판 등 6종 8권 발간, 세계문화유산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 4종, 자유학기제 교재 발간(2016년~2017년 5월) 및 배포(2017년 9월)
고고학 체험교실 운영 (2011년 이후)	문화재 발굴, 복원 현장 등을 현장교육으로 운영
테마문화재학당 등	충무공 이순신(특특 이순신 충무공 탐험대), 항일과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 교육 등

표 32 문화유산교육팀 주요사업 추진현황

3) 국내 문화재 활용 시장의 형성

(1)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인식 개선

- 문화재 활용은 곧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팽배하였으나, 점차 변화되고 있는 추세. 문화재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활용은 오히려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켜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2016년 문화재야행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주 등 기존 문화재 밀집지역의 경우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서울·대구·청주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야행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참가자들이 문화재의 가치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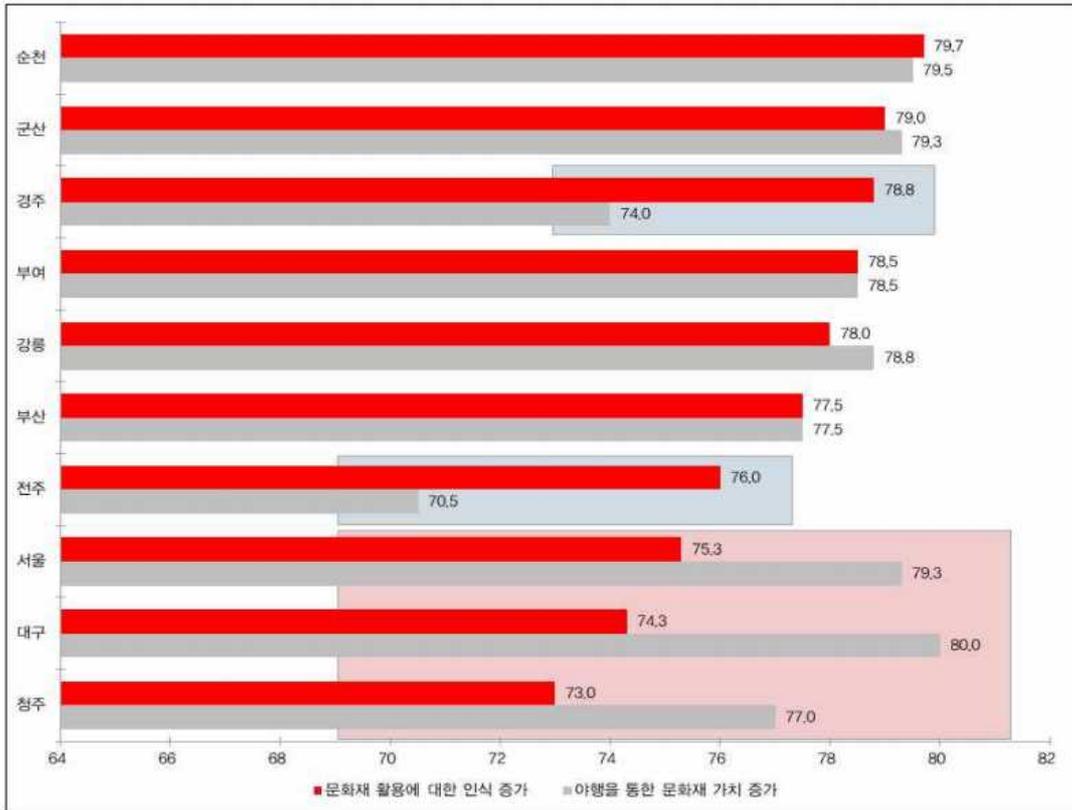


그림 41 문화재 밀집지역과 대도시지역의 문화재여행사업 효과
(2016 문화재여행 모니터링)

(2) 지역사회의 문화재 활용 욕구 증가

- 문화재 활용이 대체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대도시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도 문화재 활용 수요 증가. 생생문화재 사례로 보면, 2013년 전체사업 45개 중 부산 등 광역시 프로그램 15개(33.3%), 충남 등 광역도 30개(66.7%)였으나 2017년 전체사업 120개 중 광역시 프로그램 23개(19.1%), 광역도 프로그램 97개(80.8%)로 나타남.
- 이처럼 광역도 활용프로그램 지원건수와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에서도 문화재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7) 해당 문구와 아래 그래프는 '문화재청, 「2016 문화재여행 모니터링」, 27p'에서 인용한다.

연도	광역시		광역시도		총 지원 건수(건)
	건수(건)	전체대비 비율(%)	건수(건)	전체대비 비율(%)	
2013	15	33.3	30	66.7%	45
2014	21	30	49	70%	70
2015	30	28.6	75	71.4%	105
2016	21	23.9	67	76.1%	88
2017	23	19.1	97	80.8%	120

표 33 생생문화재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원건수('13~'17)

생생문화재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원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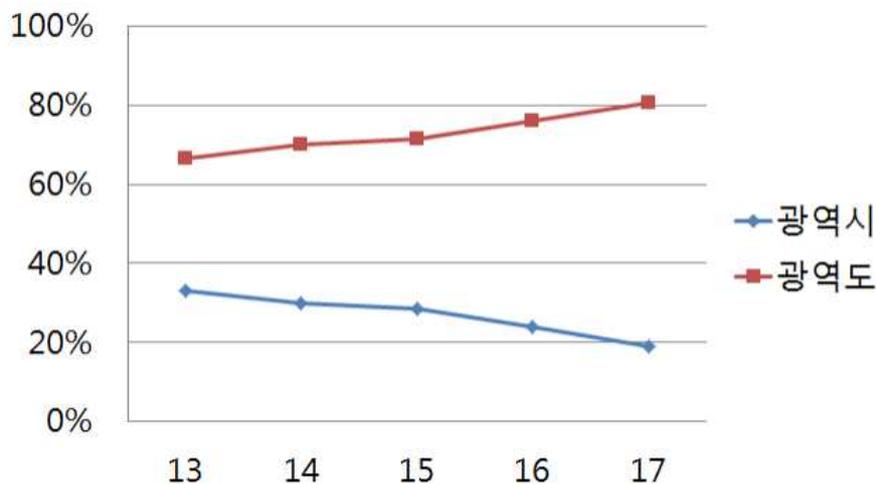


그림 42 생생문화재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원건수 비율('13~'17)

(3) 문화재 정보 및 활용 정보 수요 증가

- 현대사회의 정보 서비스 발달은 문화재 활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기록유산 등의 사이트, 문화유산채널 등 문화재에 관한 고품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각종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에서도 문화재 관련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4) 문화재 활용 전문 영리기업의 탄생과 활동

- 이처럼 국민은 활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 활용에 대한 욕구와 정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재 활용 전문 영리기업이 등장·활동하고 있다.

- 문화재청에서는 2017년 기준, 총 36개의 업체가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4) 산업환경의 변화

(1) 국내 제조업의 위기, 대안으로 콘텐츠 산업의 제시

- 우리나라 제조업 현재까지 주력 산업중의 하나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에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한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특정한 산업이 영구적으로 캐시카우(Cash cow)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산업구조 자체가 대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대중교통산업이었던 택시사업은 우버(Uber)나 디디추싱(滴滴出行)같은 차량공유서비스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의 개발로 또한번의 산업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대안 중 하나로 지목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다.

(2) 세계적으로 문화유산 활용산업이 각광받는 추세

- 앞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사례와 미국의 문화유산 활용정책인 ‘프리저브 아메리카’ 사례를 보았듯이, 자동차 산업 등 기존 고부가가치사업보다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산업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사업으로 보고 있다.⁵⁸⁾

58) 앞서 ‘문화재 활용정책의 성과와 방향’ 항목의 미국 사례로 제시한 그래프, ‘1백만달러 당 창출되는 일자리’ 그림 참조.

4. 문화재 활용 법령과 정책 현황

1) 문화재 활용 분석의 필요성

문화재 활용의 적합한 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분석뿐만 아니라 제도적 분석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정책적 분석임은 재언할 필요가 없으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제도도입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은 법제도의 마련일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비교법적 분석이 일반적이다. 즉 국내의 유사입법례 및 해외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되도록 시행착오를 줄이는 입법의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 유사입법례와 해외 입법례로 내용을 구별하여 그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도 문화재를 문화적 자산이라고 보면서 그 활용을 통한 이익창출이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과⁵⁹⁾ 문화재 보존과 상충하지 않는 문화재활용에 관한 이론이 발전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⁶⁰⁾ 그 입법례를 참고하는 것이 우리의 제도마련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2)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분석

(1) 개관

- 상기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도 문화재활용은 문화재보존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문화재의 복원 및 유지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비용의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인데, 문화재 활용을 통한 비용창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⁶¹⁾ 물론 활용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문화재의 보존에 적합한 방법

59) 문화재를 문화적 자산으로 보면서 이를 통한 수익의 창출이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해외의 논문으로는 Navrud, Ståle, and Richard C. Ready, eds. *Valuing cultural heritage: Applying environmental valuation techniques to historic buildings, monuments and artifacts*. Edward Elgar Publishing, 2002; Bedate, Ana, Luis César Herrero, and José Ángel Sanz. "Economic valu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application to four case studies in Spai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5.1 (2004): 101-111; Sable, Karin A., and Robert W. Kling. "The Double Public Goo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hared Experience' Values Associated with Heritage Conserv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5.2 (2001): 77-89 등 다수.

60) Kalamarova, Martina, et al. "The support of the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in historical town reserve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26 (2015): 914-919.

61) *Ibid.*

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⁶²⁾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적인 정책이 문화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문화재활용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는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⁶³⁾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법제도(예컨대 조례)의 정비가 문화재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존재한다.⁶⁴⁾

(2) 문화재활용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분석 1 - 일본의 문화재 활용 정책

○ 개요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문화재를 보존 및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분류하여 그 중요성을 고려하고, 국가는 문부과학대신 또는 문화청장관,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 시정촌의 경우에는 시정촌장에 의한 지정, 선택, 선정, 인정 또는 등록에 의해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
- 더불어 「고도⁶⁵⁾에서의 역사적 풍토에 관한 특별조치법」(古都における 史的風土の保存にする特別措置法, 1966년 1월 13일 법률 제1호)을 제정하고 현재까지 고도보존에 관한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도보존법의 제정취지는 시가지의 확장과 난개발로부터 역사적 풍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에 있어 보존지구의 지정은 시가지주변의 자연녹지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 지구유형은 역사적풍토보존구역과 역사적풍토특별보존지구로 나뉘어지며, 전자는 국가가,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보존지구의 유형에 따라 행위제한이 다르게 나타난다.

62) *Ibid.*

63) 이에 대한 상세는 Gražulevičiūtė, Indrė.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Research, Engineering & Management* 37.3 (2006).

64) Gražulevičiūtė, Indrė.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Research, Engineering & Management* 37.3 (2006).

65) 「고도」란 과거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 등으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갖는 도시를 말하는데, 일본의 경우 교토시, 나라시, 가마쿠라시 및 정령으로 정하는 기타 지역(시·정·촌)을 말한다(일본의 고도보존법 제2조 참조).

○ 문화재활용의 정의

- 일반적으로 문헌에서는 문화재의 활용을 각 지역에 현존하는 문화재의 매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재 보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 그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여 흥미·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⁶⁶⁾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⁶⁷⁾이다.
- 더불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제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정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며 그 활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문화재 보호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

○ 문화재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 일본의 문화청은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의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차세대 상속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⁶⁸⁾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대상사업은 1)역사문화기본구상책정사업⁶⁹⁾, 2)역사문화기본구상개정사업⁷⁰⁾이다.⁷¹⁾

○ 문화재활용을 위한 조직

- 일본은 2017년 문화처의 조직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2018년 법개정을 목표로 조직확대를 염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문화 예술을 통해 공공·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다양한 가치 창출되고, 한층 더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창조에 활용되도록 시책의 전개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개선될 문화청은 문화예술 선진국을 목표로 문화 예술의 고유한 의의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오늘의 정책 요구에 대응하고, 관련 분야의 시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취할 조직 체제를

66)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문화재의 효과적인 발산·활용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보고서(文化財の効果的な発信・活用方策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2014년, p. 4

67)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日本の歴史・伝統文化情報発信推進事業) 国庫補助要項

68)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地域文化遺産活性化事業) 国庫補助要項

69) 지역의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 사회적 상황, 문화재의 상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

70) 사회정세의 변화와 지역 내의 새로운 조례 등의 제정과 관련된 행정계획 등의 변경 등을 근거로 기존의 기본구상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71)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歴史文化基本構想策定支援) 国庫補助要項

구축 할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⁷²⁾

- 특히 문화정책의 확대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상생 및 지방공공단체 문화정책 연계”로 보고,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문화 예술 자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⁷³⁾

○ 문화재활용을 위한 자료개발

- “고도의 역사적 풍토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마을만들기법)⁷⁴⁾
- **정보사업** : 문화예술 진흥보조금 (문화유산 종합 활용 추진 사업) 교부요강에 따라 지역의 관광 자원인 문화재에 대해 외국인 여행자의 요구에 맞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해설 작성, 정보의 다언어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할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⁷⁵⁾

○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근거

-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은 “국가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와 그 저장 기술 (이하 “문화재 등”이라한다)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 등에 관하여 복구 방재 대책, 공개 등에 대한 지원 추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⁶⁾ 기본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4조는 “각 지역의 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등의 지원, 지역 고유의 전통 예능 및 민속 예능(지역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민속 예능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정하여 “지역”에 초점을 맞춘 국가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72) 新·文化庁の組織体制の整備と本格移転に向けて (案) 資料1 (2017.08)

73) 新·文化庁の組織体制の整備と本格移転に向けて (案) 資料1 (2017.08)

74)

http://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shokan_horei/bunkazai/rekishifuchi/index.html

75)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 (日本の歴史・伝統文化情報発信推進事業) 国庫補助要項

76)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3조(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

(3) 문화재활용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분석 2 - 미국의 문화재 활용 정책

○ 개요

- 미국의 문화재 보호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산하의 미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립공원청은 미대륙선주민, 각 주정부, 지방정부, 각종 비영리기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등과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문화재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립공원청’(또는 미국 국립공원 서비스국, National Park Service; NPS)은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소속의 연방정부기관으로 국립공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⁷⁷⁾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률은 미국립공원청법(Title 54 of the United States Code (54 U.S.C.), National Park Service and Related Programs)이며, 이는 1) 미국 국립공원 체계, 2) 야외휴양프로그램, 3) **국가 보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 유산 보존 프로그램이 문화재활용과 관련된 정책방향,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법제를 분석한다.

- 또한 2003년 행정명령인 “프리저브 아메리카(Preserve America)” 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제이다.⁷⁸⁾ 이는 2003년 3월 발효된 것으로서 연방정부 소유의 문화유산의 보존에 있어 주정부, 지역정부 등의 관계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과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공공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용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⁷⁹⁾ 프리저브 아메리카는 역사유적 자산의 주된 활용 방식으로 문화유산 관광을 꼽는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한다. 미국의 관광 산업 규모는 연간 1조 3천억 달러에 이르며, 2005년에는 미국 성인의 56%에 달하는 1억1,800만명이 문화유산 관광을 경험하였다. 펜실바니아 주의 경우에는 관광이 두 번째 주요 산업 분야일 만큼 관광 산업은 미국 내부에서도 주요한 산업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문화유산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 역시도 미국의 문화재활용정책 - 특히 지역과의 협력 -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77) 정상우 외,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78)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79) “Preserve America”,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287 of March 3, 2003, Section 1(Statement of Policy)

○ 문화재 활용의 정의

- 미국의 2003년 행정명령인 프리저브 아메리카⁸⁰⁾에서는 “문화재(historic property)”를 문화재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of 1966, 16USC470, NHPA)제301조 제5항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⁸¹⁾ 이에 따르면 문화재는 역사적 지역, 장소, 건축물, 구조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NHPA의 요건에 적합한 국가등록문화재(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를 포함하는 것이다. 미국립공원청법상의 정의 규정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⁸²⁾
- 이를 전제로 “문화유산관광(heritage tourism)”을 현장의 역사, 풍경 및 문화의 고유하고 특별한 측면의 근거가 되는 장소 또는 지역에 방문하는 자들을 유인하고 수용하는 사업 및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⁸³⁾ 또한 이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문화재산”에는 권리상실 등으로 정부기관이 취득하고 그 기간이 5년 미만인 재산이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 기본적으로 미국의 문화재 활용관련 법제는 연방정부 소유의 문화재산을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그 가치의 활용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⁸⁴⁾ 그러면서도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적절하고 타당한 집행 주체를 정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속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주정부의 역할임이 강조되는 것이다.⁸⁵⁾

○ 문화재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 프리저브 아메리카에서는 연방정부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지역 간의 협력과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⁸⁶⁾ 해당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이 문화재의 현재 상태에 평가를 진행할 것

80) “Preserve America”,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287 of March 3, 2003

81) Preserve America Sec. 7 *Definitions*

82) 54 U.S. Code § 300308 – Historic property

83) *Ibid.*

84) Preserve America Sec. 1(*Statement of Policy*)

85) *Ibid.*

86) Preserve America Sec. 4(*Improving Federal Agency Planning and Accountability*)

을 정하고 있다.⁸⁷⁾ 그 평가의 내용은 NHPA 제110조(a)(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의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은 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해당 계획에는 관리 대상인 문화재의 목록이 열거되어야 하며, 그 유지 및 관리방식은 해당 문화재의 특수한 역사적, 고고학적, 건축학적, 문화적 가치에 적합한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⁸⁸⁾

- 결국 해당 관리 기관에 문화재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의무를 부담시키고, 연방정부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관 및 주정부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구조이다. 같은 취지에서 연구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의 수립 또한 관련 기관 및 주정부 등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이다.

○ 문화재활용을 위한 조직

- 프리저브 아메리카는 위원회의 설치 외에 각 행정 기관은 역사유적 자산의 장기적 보존과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과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을 진행시켜야 하며, 이러한 자산이 주는 경제적 이득을 깨닫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각 행정 기관은 역사유적 자산의 장기적 보존과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과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 정책을 진행시켜야 하며, 이러한 자산이 주는 경제적 이득을 깨닫고 문화유산의 보존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규정한다. 각 기관 소유의 역사유적 자산은 그 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근거

- 연방정부 및 관련부처의 장은⁸⁹⁾ 문화재 보존의 목적 범위 내에서 문화재 등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⁹⁰⁾ 더불어 국가 문화재의 이용가능한 모든 요소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할 의무를 부담한다.⁹¹⁾

87) *Ibid.*

88) 2003년 행정명령에는 2004년 9월 30일까지 각 기관이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Chairman of 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89) Director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90) 54 U.S. Code § 100101 – Promotion and regulation

91) 54 U.S. Code Subtitle III – National Preservation Programs

- 프리저브 아메리카에서는 역사유적 자산이 공공 교육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역사유적 자산을 발굴, 보존해서 경제 효과를 창출해내는 노력을 기울이면, 민간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주의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 지원

- 미국립공원청은 “위원회” 및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 의무를 부담한다.⁹²⁾ 개인 혹은 단체는 이러한 자료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⁹³⁾

- 더불어 프리저브 아메리카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문화유산 관광>과 <민간 차원 보존(Private Preservation)>의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대통령상을 선정, 수상함으로써 문화재활용을 위한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 선정요건은 1) 문화/자연 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 부문에 있어서의 모범적 성과, 2) 미국 문화/자연 유산의 보존과 해석에 대한 실제적인 공약, 3) 문화·자연 유산을 현재의 지역생활에 조화시키는 작업, 4) 역사자원을 소개하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신뢰성 있는 접근을 서로 조합시키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3) 해외 문화재 활용 정책 사례

(1) 덴마크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법제도

- 덴마크의 문화재 관련 법령은 크게 박물관 및 고고학, 등록 건축물, 문화유산의 반출(수출), 국제협약과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2) Preserve America Sec. 4(Improving Federal Agency Planning and Accountability) (d)

93) *Ibid.*

- 박물관 및 고고학 분야는 박물관통합법(Consolidated Act on Museums)이 규율하고 있다. 박물관 통합법은 간단히 박물관법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종 행정명령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이다.
- 2001년 6월 7일 법률 제473호로 박물관법이 처음 공포된 이후 몇 번의 개정(2002년 3월 25일 법률 제145호, 2003년 5월 28일 법률 제393호, 2003년 12월 7일 법률 제1213호, 2004년 6월 9일 법률 제454호, 2005년 6월 24일 법률 제562호, 2005년 12월 21일 법률 제1403호)을 거친 후 2006년 6월 7일에 박물관 통합법으로 공포되었다. 현재의 박물관 통합법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2007년 6월 7일부터(법률 제504호) 시행한 것이다.
- 박물관 통합법의 내용은 제1장 목적, 제2장 문화유산박물관, 제3장 미술관, 제4장 자연사박물관, 제5장 국립박물관, 제6장 정부 지원을 받는 박물관, 제7장 박물관 협의회, 제8장 해당 작업의 고고학적, 자연사적 조사작업을 포함하여 건설공사 및 농임업 활동의 물리적 계획 및 준비와 관련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 제8a장 석벽, 토벽, 고대 유물 및 기념물 보호, 제9장 매장물 및 화석, 제10장 특별 조항, 제11장 회계 및 감사, 제12장 행정, 제13장 벌칙 조항, 제14장 종결 조항, 부록 1. 박물관법의 별첨-제29e조에 따라 보호 대상인 고대 유물 및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덴마크의 지하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박물관 통합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하유적지는 각종 건설공사 및 농임업 활동 등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고고학 조사를 실시한다. 고고학 조사는 40개 지역박물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매장문화재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하유적지의 고고학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유적지에 대한 모든 고고학 조사는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 지하유적지 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유적 보호 및 보존을 위해 개발 사업의 중요성 및 유형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고고학 조사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는다.
- 지하유적지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연 평균 1,200건 정도이다. 고고학 조사와 관련된 대략적인 절차를 보면, 지역박물관이 위원회에 프로젝트 계획 및 예산 제안서 제출, 위원회제안서 심사 및 승인, 지역박물관 고고학 조사 실시, 위원

회 조사보고 검토 및 내용 승인, 지역박물관 결과 및 관련 기록 보관 순으로 진행된다.

- 등록 건축물 분야는 등록 건조물, 건축물 및 도시환경 보존에 관한 법(The Act on Listed Buildings and Preservation of Buildings and Urban Environments)이 규율하고 있다. 등록 건조물, 건축물 및 도시환경 보존에 관한 법은 간단히 건축물보호법(Building Protecting Act)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은 박물관통합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각종 행정 명령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이다.

- 이 법은 2007년 8월 29일 통합법 제1088호로 공포된 후 2008년 12월 19일(법률 제1336호 20조)과 2010년 5월 7일(법률 제474호 1조)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현재의 법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2011년 6월 9일에 공포 및 시행한 것이다.

- 등록 건조물, 건축물 및 도시환경 보존에 관한 법은 제1장 목적 및 범위, 제2장 등록, 제3장 등록의 법적 효력, 제4장 등록된 건조물과 보존 가치가 있는 건조물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제6장 등록 및 계획, 제7장 사적 건조물 위원회, 제8장 행정 및 자문 등, 제9장 기타 조항, 제10장 제재, 제11장 발효 및 경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화유산의 반출(수출) 분야는 덴마크의 문화유산 반출에 관한 법률(The Act on Export of Cultural Assets in Denmark), 다른 국가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에 관한 법률(The Act on the Return of Cultural Objects Unlawfully Removed from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이 규율하고 있다.

○ 활용사례(근대건축물의 활용 :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북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외레순(Øresund)의 작은 마을인 홈레백(Humlebæk)에 위치하며, 외레순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 미술관은 원래 19세기의 저택이 있는 사유지였으나, 1958년에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미술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어 있고,

정원에는 호마 미로, 막스 에른스트, 헨리 무어, 알렉산더 콜더 등이 조각한 작품들이 있다. 또한 미술관은 콘서트홀과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음악·연극·영화 등을 위한 종합예술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루이지에나 현대 미술관은 덴마크의 19세기 건축물을 활용하여 건축과 자연 및 미술의 가장 완벽한 공존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종합예술 공간이자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비지정문화재(전통한옥 및 근대건축물 등)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림 43 옛 건물을 종합예술공간으로 활용한 루이지에나 현대 미술관

(출처 : 루이지에나 현대 미술관 홈페이지)

(2) 핀란드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법제도

- 핀란드의 문화재는 고대 유물법(The Antiquities Act-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 법령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함)에 의해 보호·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

- 고대 유물법(The Antiquities Act)은 1963년 6월 17일에 처음 제정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재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고대 유물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Mr. Mikko Haro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고대 유물법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문화재 파괴가 증가하여 문화재 보호·보존 및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립고대유물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보존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법 개정 요구가 상호 충돌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 고대 유물법은 제1장 고대 유적(Ancient Monuments), 제2장 유물(Movable Objects), 제3장 선박과 배의 발견(Finds of Ships and Vessels), 제4장 특별 조항(Special Provis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립고대유물위원회는 고대 유물법에 근거해 고고학 유적지를 결정한다. 현재 핀란드에는 27,000곳의 고고학 유적지가 있는데, 육상의 경우에는 1940년 이전에 해당하는 것만 유적지로, 물속에 있는 경우는 100년 이상 된 것을 유적지로 지정한다. 그리고 지정된 유적지 이외의 장소에서 새로운 유적 및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행정처리 절차 없이 고대 유물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 핀란드의 문화재 관련 정책 및 제도에서 특이한 점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문화재의 이전 및 파괴 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국립고대유물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를 이전하거나 파괴를 결정할 경우 반드시 국립고대유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를 이전하거나 파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 증명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자료 등도 제출해야 하며, 각종 행정 절차 또한 이행해야 한다.
- 그리고 문화재 보호·보존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국립고대유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중요 유적지 내에서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고고학 조사 허가를 신청할 경우 유적 보호 및 보존을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는 문화재 이전 및 파괴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결국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문화재 보호·보존 및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핀란드의 문화재 관련 법령과 제도 중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중요 유적지 및 고고학 조사 후 보존이 결정된 유적에 대한 국가의 토지 매입, 지하 유구를 보존한 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투자 목적이 아닌 소규모 개인 주택 및 오두막 신축 부지에 대해 국가에서 고고학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핀란드의 고고학 조사와 관련된 제도 및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핀란드에서도 고고학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조직인 국립고대유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고고학 조사에 대한 허가 신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받아야 한다. 고고학 조사를 위한 허가신청은 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개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고고학 조사를 하는 경우는 소규모 개인주택이나 오두막 신축 부지 등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대부분의 고고학 조사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립고대유물위원회, 박물관, 대학이 담당한다. 그 이외의 일정 부분은 개인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 고고학 조사와 관련된 비용 부담 주체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과 투자목적이 아닌 소규모 개인주택 및 오두막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그 외의 각종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고고학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사업시행자들이 고고학 조사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활용사례 1,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원로원 광장(Helsinki Senate Square)

-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원로원 광장은 헬싱키 알렉산테린 거리의 동쪽 끝에 위치한 헬싱키 대성당 앞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광장이다.
- 원로원 광장의 크기는 3,000m²이며, 약 40만개의 화강석이 바닥에 깔려 있다. 광장 중앙에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정면에는 핀란드 루터파의 총본산인 대성당(Tuomiokirkko)이 있다. 주변에는 대통령 관저, 정부중

합청사, 헬싱키 국립대학교, 카우파토리 노천시장 등이 있는데, 이들 건물은 대부분 1820~1840년 사이에 핀란드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원로원 광장은 핀란드의 종교, 정치, 학문과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는 상징적인 광장이자 현재 핀란드 서민들의 생활, 1800년대 핀란드 건축양식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자 각종 국가적인 종교 행사, 체험 행사 등이 거행되는 곳이다.

- 우리나라도 핀란드의 원로원 광장처럼 과거의 역사와 현재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각종 개발이익을 앞세워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 해서,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보호·보존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현대식 초호화 고층건물, 번쩍이는 큰 상가 간판, 화려한 밤거리 등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상한 모습이다. 이제 이런 식상한 모습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잘 보호·보존 및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고, 문화선진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정책수립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림 44 원로원 광장에서의 전통건축공법 체험 프로그램(출처 : travelunmasked.com)

○ 활용사례 2, 건축공원으로의 활용 : 세우라사리 야외박물관(The Seurasaari Open-Air Museum)

- 세우라사리 야외박물관은 핀란드 헬싱키의 서쪽에 있는 세우라사리 섬(국립공원)안에 위치한다. 야외박물관은 세우라사리 섬의 1/3 정도를 차지하며,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 야외박물관은 1909년에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잘 보존된 건물과 고대 사우나, 17세기의 교회, 중세의 풍차, 농가, 18~19세기의 민가

등 87개의 각각 다른 건축물을 전시하고 있다.

- 세우라사리 야외박물관은 핀란드 전역의 18~20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건축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자 중세시대 및 전원(田園) 지역에서 살았던 핀란드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건축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우라사리 야외박물관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건축물과 근대건축물 등을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다양한 전통건축물과 근대건축물 등을 한자리에 모아 건축공원이나 야외박물관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림 45 세우라사리 야외박물관 전경
(31개 전통건축물, 출처 : 박물관 홈페이지)

- 또한 이러한 건축공원이나 야외박물관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도록 가족이나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는 나들이나 소풍 장소 및 야외수업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 쉽게 문화재와 만나게 될 것이며,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3) 스웨덴의 문화유산 활용 사례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법제도

- 스웨덴의 문화재는 「문화유산보호법(Heritage Conservation Act)」에 의해 보호·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 문화유산보호법은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건축물, 고대 유적, 고고학 유적지, 유물, 기념물, 교회, 고고학 조사, 수중문화재 등 스웨덴의 모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과 국가유산위

원회 및 지방행정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문화유산보호법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고대유적 및 유물 발견법(The Ancient Monuments, Remains and Finds Act-1942 : 350), 문화유산 건축법(The Cultural Heritage Buildings Act- 1960 : 690), 스웨덴 유물 국외 반출 금지법(The Export from Sweden Prevention(Various Cultural Goods) Act- 1985 : 1104)을 하나로 통합한 법률로써, 1988년에 처음 제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문화유산보호법은 제1장 입문 규정, 제2장 고대유적 및 유물의 발견, 제3장 문화유산 건축물, 제4장 교회 문화유산의 소유, 제5장 특정 유물의 국외 수출 금지, 제6장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 부록으로 구성된다.
- 제1장은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의 책임, 문화유산의 범위, 국가유산위원회와 지방행정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법 적용, 문화유산의 명칭 및 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2장은 고대 유적 및 유물의 발견, 고대 유적·유물의 보호·보존 및 조사, 고대 유적 및 유물의 관리, 유적에 대한 금속탐지, 벌칙, 문화재와 관련된 보상 및 소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3장에서는 건축물의 소유, 보호범위 및 의무, 건축 문화유산의 지정, 보상 및 매입, 변경 및 해지, 배상 및 책임, 분쟁해결 및 소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4장에서는 교회건물과 대지, 교회물품의 관리 및 점검, 묘지의 관리 및 소유, 비상대비 조치, 교회에 대한 지원, 조치사항, 소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5장에서는 유물의 국외수출에 대한 허가신청절차 및 대상, 허가, 소송, 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6장에서는 대상 및 범위, 절차 및 보상, 정밀조사 및 범위, 처리방법, 소송 비용, 법 적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스웨덴에서는 문화유산 보호법의 준수 및 이행여부의 관리·감독, 고고학 조사의 필요성 여부 심의 및 허가, 문화재의 이전 및 현상변경 등과 관련된 업무

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고고학 조사가 필요한 지역, 건설공사 시 유적 및 유물이 발견된 곳, 육상 및 수중에서의 문화재 발견 신고 지역, 문화재 이전 및 현상변경 신청지역 등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공조달법(The Public Procurement Act-1992 : 1528)은 효력을 상실한다. 공공조달법의 효력 발생은 모든 문화재조사(고고학 조사 및 문화재 영향 평가 등)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

- 스웨덴은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방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나 터파기 시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지방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스웨덴의 고고학 조사와 관련된 대략적인 절차를 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과 관련된 자료 및 신청서 등을 지방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행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검토 및 사전 고고학 조사(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해당함) 등을 통해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 평가를 최종적으로 심의한다. 심의 결과 고고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지방행정위원회는 고고학 조사면적을 확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고고학 조사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 부지의 고고학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스웨덴에서 고고학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유산위원회, 지방행정위원회에서 허가한 박물관이 있음)을 섭외한 후 조사기관을 명시한 신청서를 지방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방행정위원회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기관, 비용, 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고고학 조사를 허가한다.

○ 활용사례 1, 유적공원으로의 활용 : 시그투나(SIGTUNA)

- 시그투나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멜라렌 호수를 마주하고 있다. 1250년 이전까지 스웨덴의 수도였다.
- 시그투나는 9~11세기 기독교의 전파에 의해 바이킹시대가 끝나고, 기독교인 최초로 왕이 된 올로프셰트코농이 건설했는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최초이다. 현재 시그투나에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왕궁 같은 건물이 없다. 단지 루닉 스톤(룬 문자⁹⁴)로 기록된 비문, 옛 상점들, 박물관, 1248년에 건축된 성

마리아교회, 그리고 폐허가 된 옛 교회 등만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그투나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유럽의 왕궁을 생각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 하지만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주는 시그투나는 유적의 보호·보존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역사문화 공간 또는 유적공원으로 잘 보호·보존 및 활용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 시그투나는 가족 나들이나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만나고 그 의미와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 및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그투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 등이 있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추구나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등의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문화재(유적)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개인주택의 일부분을 보수하거나 정원을 가꿀 때 유물이 나오면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해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건에 달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유적(유구)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적은 발굴조사 후 대부분 사라져 버려 일반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단지 출토된 유물을 박물관에서 관람할 뿐이다. 이제 이러한 유적을 그냥 파괴하고 버리기 보다는 시그투나와 같은 문화복합 공간 또는 유적공원 등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만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시그투나는 경주 등 우리나라의 고도(古都)와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역사도시공간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지역관광활성화를 동시에 이룬 이상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문화유산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바꾸어 말하면 문화유산으로 지역주민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유산 활용 정책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94) 켈트와 게르만계 민족들이 널리 사용하였던 문자

- 시그투나의 역사적 특징 중 하나로, 고대 문자인 ‘룬 문자’로 기록된 문화유산이 170여개에 달하여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룬 문자는 표음문자로서 그림처럼 그려져있어 신비스러움을 자아내는데, 이러한 형상을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스몰투나(Smalltuna)’라고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그투나 박물관 등에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추어놓았다.



그림 46 역사도시로서 옛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출처 : 위키백과)



그림 47 룬 문자가 기록된 룬스톤(일부)

○ 활용사례 2, 전통 및 근대 건축물의 활용 : 감라스탄(Gamla Stan) 구시가지

-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위치한 감라스탄은 스웨덴어로 ‘옛 도시’라는 뜻으로 13~19세기 사이에 형성된 시가지이며, 스톡홀름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 감라스탄 구시가지에서는 여러 곳에서 중세시대의 흔적을 볼 수 있지만, 중세시대의 건물들이 좁은 골목길 양편으로 가득 줄지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라스탄의 중심은 스토르토에트 광장이며, 주변에는 스톡홀름 궁전(Kungliga Slottet)과 18세기의 건물을 활용한 노벨박물관 등이 있다. 감라스탄 구시가지는 차가 다닐 수 없다. 옛 건물들은 대부분 각종 수공예품을 비롯한 기념품 상점이나 카페, 갤러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로 좁은 골목길이 붐비고 있다.
- 감라스탄 구시가지는 세계적으로 우수하거나 유명한 문화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옛날 건물과 좁은 길이 있는 거리이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이 작은 거리를 아끼고 잘 보호·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

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감라스탄 구시가지는 현재 스톡홀름을 대표하는 곳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스톡홀름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거쳐가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 감라스탄 구시가지의 보호·보존 및 활용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전통건축이나 근대건축물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 또는 지역개발 논리 등으로 인해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의 전통건축과 근대건축물을 이제 파괴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에 중점을 둔 정책 개발과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림 48 옛 경관을 간직한 감라스탄(출처 : Carolina Byrmo)

(4) 프랑스의 산업문화유산 활용

○ 산업유산의 정의

- 프랑스의 산업유산의 정의는 현재 프랑스 정부에서도 통일적인 정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은 본고에서 다루는 산업유산의 범위에 대해 미리 정리해 두고자 한다. 문화통신부 건축문화재국의 산업유산 특정작업담당 조사 기술자인 카토리 누·마니간 - 샤플린 (Catherine MANIGAND -CHAPLIN) 씨는 전국 산업 유산 종합 조사에 대해 "산업 유산의 특정 작업은 산업 활동을 했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의 목록을 사회 자본과 산업 활동을 위한 에너지 생산 설비 및 제조 장비를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 산업 유산의 특정 작업은 기본 필지로 지어진 건물 또는 건물 군이다. 산업시설이 여러 토지 구획에 지어진 다양한 생산 시설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전체 산업 유산의 특정 대상이 된다. 건축, 경제 또는 기술의 관점에서 공통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그 장소는 건축물의 집합체로서 다루어진다."고 말했다.
- 또한, 프랑스에서 "산업유산이라는 용어는 주로 제2차 산업을 가리키는 수많은 원료와 에너지원의 개발·가공 및 생산재·소비재 가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광업·공업에 따른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업 유산은 산업혁명 이후의 건축물이 중심이지만, 유산 중에는 그 이전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 즉, 과거의 공장제 수공업이 동일한 땅에서 산업혁명을 거친 경우 시대적으로 다른 건축물이 혼재하는 패턴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유산'이라는 용어에서 약간의 위화감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장도 산업 유산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건축물 개별 단체의 활용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의 보전과 도시 정비 관련 시책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넓게 그 시책에 포함된다.

- 이상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①광업·공업 등 산업에 관한 건축물, ②시대적 제약 없고, ③현재 운영 중인 공장, ④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건물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⑤산업 유산인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포함하는 것을 산업 유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고찰한다.

○ 문화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프랑스의 산업문화유산을 고찰함에 있어 문화행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최근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에 대한 참여를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1946년 헌법의 서문에는 "국가는 아이들과 성인 교육, 직업 교육, 문화의 평등을 수호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모호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 정책의 실시에 직접 근거법으로 인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1884년 4월 5일 집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권한 규정을 문화 시책의 근거로 삼았다. 이것은 공익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모든 분야에서 집단의회의 의결을 가지고 업무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권한 규정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분야에 이를 적용시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2년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동이 이루어졌다. 1983년 1월 7일의 법률을 보완하는 1983년 7월 22일 법에 따라 공문서 도서관과 중앙 대출 도서관의 운영 관리가 현의 사무로 되었고, 이후 새로운 지방 분권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목표로 하기 위해 국가 사무의 일부가 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일환으로

문화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2001년과 2002년에 문화통신부와 14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정이 체결된 문화유산과 고등예술교육 등에 관한 권한이 시험적으로 이양되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권한의 시범 행사」는 2003년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 되고, 또한 지방의 자유와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2004년 8월 13일 법률에는 문화 유산과 공연 예술 교육에 관한 권한의 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하에서 언급할 문화유산종합목록(Inventaire général du patrimoine culturel)의 작성에 관한 사무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은 동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2002년 1월 4일 법에 따라 문화협력공공시설법(é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culturelle, 약칭 EPCC)이 탄생하고, 문화관련 공공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다른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또는 문화협력 공공시설법인)와 국가의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화협력공공시설 법인은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문화협력이라는 목표의 실현에 공헌하는 문화 정책의 실시를 위한 도구이다. 2010년에 창설된 폼피두센터 메스(Centre Pompidou-Metz)와 2012년에 창설된 루브르랑박물관(Louvre-Lens)도 국가와 관계 자치단체로 구성된 문화 협력 공공 시설 법인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산업 유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문화에 대한 권한 이양 흐름 속에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활용사례 1, 덩케르크시의 설탕시장 창고의 재활용 사례

- 덩케르크 (Dunkerque)의 항만에 위치한 설탕 시장 창고(Halle aux sucres)는 벽돌 건물이며 19세기의 산업 유산이다. 사용할 수 없게 된 후 철거가 논의된 이 건물은 산업 유산 개별 활용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정비에 대한 연구·학습의 장으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중심 시가지와 고틀프를 연결하고, 주민과 항만과 그 역사를 이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 여기서는 그 대책을 소개한다. 덩케르크시는 프랑스 본토 최북단, 벨기에 국경에서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르아브르와 마르세유에 이어 프랑스 제3의 항구 도시이다. "덩케르크 전투"로 유명한 도시이며, 전쟁으로 도시의 대부분 소실했다는 쓰라린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1960년대 이후는 정유, 조선, 제철 등 산업 발전과 더불어 제철 회사와 석유 화학 기

업 등이 새로운 공장을 세웠으며, 인접 자치단체와 더불어 도시 일대에 임해 공업 지대를 형성하였다. 덩케르크시의 인구는 약 92,000명이지만, 이 사례의 주체인 덩케르크 도시권 공동체는 18개 집단으로 구성되며, 그 인구는 20만 명 미만이다.

- 항만 발전의 역사적으로도 덩케르크 항구는 번영과 쇠퇴를 몇 번 이고 경험하였다. 우선, 덩케르크 항구는 14세기경부터 네덜란드 및 영국과의 상업 활동으로 발전 해왔다. 17세기에는 루이 14세의 명으로 요새가 구축되었고, 상업·물류의 요충지로 여겨졌다. 그 결과 1,500미터의 운하가 정비되어 18세기에는 40척의 선박이 정박 수 있는 규모의 항구가 되었다. 또한 루이 15세의 적극적인 항만 활동에 대한 개입에 의해 마을이 발전하고 유리 공예, 도자기 제조, 직물 제조 등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역대 왕의 영향력이 없어 그 상업 활동은 크게 쇠퇴해 갔다. 19세기에서 아미앵 강화 조약 후, 영국과의 교역 활동에 의해 항만의 상업 활동은 다시 살아났다. 1882년에는 정부의 항구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라 예금 공탁 공고(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에 의해 최초의 공공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후도 순조롭게 발전하여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제3의 항구 도시로 발전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의 공습에 의해 항만의 80%가 손실되는 등 엄청난 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해외 물류 산업의 거점으로 복원되게 된다.
- 최근 선박이 거대화되면서, 물류 규모도 증가하면서 서쪽으로 장소를 옮겨 경제 활동을 확충하고 있다. 항구에는 창고나 선박 등 항만 관련 산업 유산들이 많이 있으며, 그 리노베 프로그램이 덩케르크 도시권 공동체의 큰 테마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설탕 시장 창고의 재활용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 덩케르크 시의 설탕 시장 창고의 역사와 프로젝트의 경위를 살펴보면, 현재 덩케르크 도시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덩케르크 항구 부두에 있는 모래 설탕 시장 창고를 개조하여 도시의 거점으로 정비를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 제3의 항구였던 덩케르크 항구는 크게 발전하였다. 당시 식민지 본토 설탕을 대량으로 축적할 창고가 필요함에 따라 덩케르크에 대형 창고를 제일 부두에 건설 하게 되었다. 1895년 10월 26일자 드 클레 의해 건설 허가가 내려졌다. 그리고 1897년 8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1899년 1월에 완성되었다. 4층 규모에 약 18,00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이 건물은 100

kg의 설탕 봉지를 230,000개를 저장할 수 있었다. 전쟁 중 공습으로 파괴된 북측의 일부 5,000m² 잃어버린 나머지는 복구되어 현존하고 있다. 설탕에 이어 저장고에 커피 및 콩 등 다양한 제품이 저장되어 한층 덩케르크 상공 회의소의 본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항만의 교통량이나 이용 빈도의 감소에 따라 이 창고도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창고 철거도 논의되었지만 한때 항구 노동자 등에 의한 요청에 따라 창고의 존치를 결정하고 그 활용 방법이 고려되었다.

- 처음에는 고문서 관 및 도시 역사 기념관으로의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노르파드 칼레 주 학습 센터로의 활용이 계획되어, 현재의 복합적인 형태로 활용되게 되었다. 건축가 피에르 루이 화로시(Pierre LOUIS FALOCI)의 설계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노베이션 설탕 시장 창고를 활용한 「학습 센터 구상」을 비롯한 전략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 더불어 이 창고는 1988년에 문화 유산 목록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

- 「도시권의 중심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1980년대 말 덩케르크시는 산업 부지가 된 항만 공간을 재사용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수도권의 중심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인근 항만 공간을 활용하여 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흐름을 이어 설탕 시장 창고 정비 프로젝트는 센터의 입구에 위치하고, 제일 부두에 존재하는 광대한 공간 활용을 구상하였다. 이 부두는 도시와 항구의 경계에 있으며, 주요 도로 및 고속철도역 및 대학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 기능의 관점과 관광·문화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지리적인 장점으로 인하여 수도권 중심의 활성화, 그리고 미래에 살 집, 인근 시설, 공공 서비스,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내용으로는 설탕 시장 창고 규모에 적합하게 제일 부두에 파크 & 라이드용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고 무료 셔틀 버스로 시내 중심가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170개의 유람선용 계류링이 설치되었다.

- 이러한 활동은 덩케르크 도시 지역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근거한다. 그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덩케르크 도시권 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기치로 삼아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시·자동차의 이용을 제한하며 대중교통과 친환경 이동 수단(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이 우선되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이 원활한 도시·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다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의 공생을 촉진하는 도시·

새로운 생활양식, 가구 규모 축소, 육아 세대 및 정작 노인을 위한 도시 문화, 교육, 직업 훈련, 고용, 주거, 의료, 레저,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사회 통합이 실현되는 도시·품질 환경 및 에너지 이용을 보편화 함으로써 자연 공간이 재생되는 도시·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도시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의 합의 형성이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모색하게 되었다.

- 2012년 2월 덩케르크 대도시 공동체는 공간 정비·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Projet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약호 PADD)을 포함한 공동체의 도시 개발 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자원의 유효한 활용과 생활이 조화 공존함으로써 균형잡힌 지역 개발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하나가 설탕 시장 창고 프로젝트이다



그림 49 설탕 시장 창고의 옛 모습



그림 50 설탕 시장 창고의 현재 모습
(출처 : www.lamm.it)

○ 활용사례 2, 뷔세루란 공원의 대처 사례

- 유스란-뷔세루란 마을(Husseren-Wesserling)에 있는 "뷔세루란 공원"(Parc de Wesserling)은 프랑스의 산업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장소이다. 그 이유는 뷔세루란 공원이 17세기 공장제 수공업, 경영자와 노동자의 집, 19세기 및 20세기의 공장 및 관련 시설, 사회 복지 시설이 일체가 된 산업 유산 집합체이며 보존 상태는 물론 정비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그 대책을 소개하기로 한다.
- 산업 유산의 보존 활동은 1986년에 소유자 부작이 사망한 후 토지와 산업자

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현이 산업 자산을 제외한 전체를 매입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현에 의한 인수를 통해 샤토 주변 12헥타르의 공원과 정원, 농장 5헥타르, 강변의 상류 부에 해당하는 자연 지역 30헥타르(강변과 르 세이 뒤 루베스 습지)가 현의 관리대상이 되었다. 그 후, 1998년에 공원의 건축물이 역사적 건설 구조물 보충 목록 12에 등록 된 것을 계기로 현과 협회인 공원 운영협의회에 의하여 산업 유산의 집합체인이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 우선, 현 및 프로젝트 멤버는 산업 유산의 집합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다면적으로 이용하는 정비 방침을 세웠다. 건물의 일부는 주택, 탁아소 등의 대민 서비스에 사용하며 일부는 관광 발전을 위해 매력적인 상업 시설 등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건물의 주요 부분은 현의 소유물로 남겨 공원 운영협의회 및 현이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프로젝트 발족 당시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①뵘세루란 공원을 알자스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로 만들기. ②농장 내에 산간 농업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③나염을 중심으로 한 알자스 지방의 섬유 산업 박물관으로 발전시키기.
- 그리고 중점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이룸으로써 공원 전체가 대규모 에코 뮤지엄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였다. 에코 뮤지엄은 "일정한 문화권을 구성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 문화 및 사회 환경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연구하고 그 유산을 현지에서 저장 및 육성, 전시함으로써 해당 지역 사회 모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야외 박물관"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운영은 주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 박물관과 달리 지역 내에 핵심 시설(정보·연구 센터)과 자연·문화·산업 등의 유산을 전체를 한눈에 보기 위한 위성(안테나), 새로운 발견을 위한 지역(디스커버리 트레이르) 등을 배치하여 방문자가 지역 사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코 뮤지엄의 역사는 의외로 새로운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방 문화의 재확인 과 중앙 집권 배제라는 사상 속에서 탄생하고 있다. 그 용어는 생태(Ecology)과 박물관(Museum)에서 합성어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박물관에서 고안된 것이다.
- 뵘세루란 공원의 세 가지 목표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뵘세루란 공원을 알자스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공원 내 정원의 보수 공사는 1999년에 정원의 정비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2002년 지중해식 테라스가 19세기의 설계도에 따라 개조된 영국식 정원이 정비되었다. 2003년에는 운영 협회가 프랑스식 정원에서 “하이브리드 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한정된 기간 동안 정원에서 아티스트의 전시와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걸리버'가 테마였다. 2013년에는 뷔세루란 공원을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위 페스티벌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원은 문장 화성에 의한 라벨 제도인 “훌륭한 정원”(Jardin remarquable)에 등록되어 있다.

- 둘째, 농장 내에 산간 농업 지역에서 농작물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농장의 정비는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원하는 공법으로 실시되고 정비 완료 후 2005년 여름부터 공개되고 있다. 현지 농가를 모아 조직된 협회 “농업 · 경관 협회”와 협력하여 농장은 서서히 산간 농업과 경관, 계곡의 생태계에 대해 많은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장소, 산간 농산물 판매 및 「맛」에 관한 계몽 활동의 장으로 발전되어갔다. 에코 뮤지엄은 '농업'과 '산업'의 관계를 배우는 페스티벌 실시 공간으로서 농지에는 안정과 축사 등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으며, 옛날에는 자재 및 제품 운반 등에 말이 이용되었고, 사라사 무명염색 행정에서는 가축의 소변이나 대변이 이용되고 있으며, 과거의 산업 시스템에서 '산업'과 '농업'과의 관련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셋째, 나염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알자스 지방의 섬유 산업 박물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알자스 섬유 산업 박물관 프로젝트는 현재 박물관에 인접한 1819년 건물에 19세기에 존재했던 생산 설비를 재현하고, 당시의 섬유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박물관에만 지원되는 보조금과 거의 동일한 지원금을 현으로부터 지원받아 약 30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 샬레, 공장, 정원, 농장이라는 요소로 구성된 공원 17헥타르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약 10개의 협회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공원에 관여하거나 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현 집단 공동체 유스란 = 뷔세루란의 대표와 함께 이러한 모든 협회는 뷔세루란 공원 운영 협의회 정식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현 등에 의한 일련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단 공동체는 2003년 부삭 공장의 완전 폐쇄 후, 그 다음 해에 24헥타르의 토지와 60,000제곱미터의 건물을 인수했다. 집단 공동체는 지역의 경제 발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집단공동체가 산업 자산 전체를 인수하고 경제 발전의 맥락에서 건조물 군의 재정비가 시작된 것이다. 부삭의 공장 폐쇄 전에도 지역에서 섬유 공

학 장 폐쇄가 잇따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행정상 공장 흔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선택 사항도 있지만, 건물 철거 및 토양 정화가 필요하게 되어, 그 비용은 더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집단 공동체는 부속 공장 폐쇄 후 신속하게 공장을 인수하여, 보육과 기업 임대 사무실 등 기업의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유효 이용 종합 계획」라는 계획의 틀 안에서 2005년에는 섬유 분야의 중소기업, 수공업, 상점 등 약 20명의 임차인들이 16,000 평방미터의 공간을 임대받아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프로젝트 예산의 총액은 약 1,500만 유로로 EU 국가, 주, 지방, 자치단체공동체 등에 의해 출연된 자본이다. 집단 공동체는 기업의 정비와 병행하여 박물관의 정비도 진행했다. 먼저 공장 청산에 의한 경매시 공원 운영협회는 20세기 말의 나염 생산 라인 전체를 매입하였고, 집단 공동체는 2만 점 이상의 섬유 샘플 및 인쇄 자료 등 공장 내에 남아 있던 수만 물품을 공원 운영협회에 양도했다. 이러한 자료 제공을 통해 공원 운영협회는 공장의 도면, 패턴 북, 직물, 사무 서류, 산업 기계 등 섬유 관련 매우 풍부한 컬렉션의 관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집단 공동체는 현과 공원운영재단에 현재 박물관 근처 나염 생산 라인 전체를 설치할 수 있는 3,000평방미터의 「토라이언구 르」라는 산업유산을 제공하고, 해당 산업유산은 1840년의 상태로 남아있었다. 아름다운 산업 유산과 오래된 증기 플랜트 19 세기 수력 종합 시설이 있는 산업 유산의 일부를 제공했다. 그 시점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 즉 벤테루란 공원 대한 현 프로젝트와 기업 임대 사무실에 대한 집단 공동체의 프로젝트 사이에 시너지 효과로써 현과 공원 운영협회는 건물과 물품의 매우 풍부한 컬렉션을 바탕으로 대규모 섬유 공장 박물관을 유스란 = 벤테루란 공원으로 확장 할 수 있었다. 또한 박물관 외에 극장(120명 수용)을 포함한 문화 · 기업 공간, 심신 안정을 위한 음악 학교, 구 주택을 이용한 보육, 섬유 창작, 패션 아트 및 가든 아트를 중심으로 한 공예 센터, 예술가의 아틀리에 등을 정비하고 있다.

- 산업유산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이 사례 연구의 큰 특징은 산업 유산의 활용을 지역 경제 발전에 연결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업 정비의 노력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강변의 붉은 지붕의 큰 건물이 있는 지역은 기업 용지로 하고, 나염 공장을 개조한 건물에서 실제로 기업 활동이 영위되고 있다. 건평 35,000㎡ 중 30,000㎡가 임대 면적으로, 그 중 25,000㎡를 중소 영세 기업(직원 10명 ~ 15명 정도)인 약 90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

다. 그 중 섬유, 크리에이티브와 관계된 20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 전 지역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의 재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 현재 약 230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으며, 고용목표 수치인 공장 폐쇄시 직원까지 도달하고 있다. 임대료는 한 달에 기업 아티스트는 2유로, 상업자 2.35유로(관리비 제외) 정도이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임차료를 결정하고 역산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예산 총액(1,500 만 유로)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집단 공동체는 보육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10~15%가 실패한다는 위험이 고려되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집단 공동체 의장은 집단 공동체 구성원 및 공원 관리 협의회의 대표이기도 하다. 프랑수아 타카루(François TACQUARD)씨에 따르면 지방 기업 유치의 철칙은 "저렴한", "깨끗한", "기능성이 있는"이라고 역설한다. 참가 기업은 법인세 감면, 일부 보수 비용 부담 등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 경관, 관광 활력 산업 유산 활용에 의한 역사적·문화적 이미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관 보호·유산 활용은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개조에 관해서는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수리는 1,000~1,500유로/m², 신축의 경우에는 800 유로/m²이다.

- 뵘세루란 공원 내 건물의 수리는 300유로/m²정도로 실현하고 있다(현재는 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석면 처리에 100유로/m²정도이기 때문에 400유로/m² 정도). 코스트 다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고 협조적인 우수한 건축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건물 리모델링시에는 건물의 특징, 특히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비용 절감 동시에 요구된다.
- 본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발전, 고용 창출, 에코 뮤지엄의 정비라고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토지 관리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지방자치단체(현 및 집단 공동체)가 공원 내 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41 헥타르의 토지 전체의 관리가 용이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산업유산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비의 퀄리티가 높다. 뵘세루란 공원의 건조물 군을 역사적 건조물 보충 목록에 등록하고 일관된 유산 보호 공법으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충 목록 등록 이전에 착수된 공사도 해당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관성은 공원의 전체 이미지를 보증한다. 공원 내의 공동 공간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운영 협의회가

담당하고, 공장은 집단 공동체가 저장을 담당한다.

- ③ 결단력과 유연성을 함께 가진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 미션이 공유된 현 집단 공동체와 웨세루란 공원 운영협의회는 지역 주체에 의해 전개된 프로젝트이다. 특히 웨세루란 공원 운영협회에 가맹하는 약 10개 협회의 협동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은 공원 전체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④ 기업을 유치하여 특징적이고 매력적인 부동산 상품의 제공하고, 부동산 상품의 특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단 공동체는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각 요구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공원의 문화·역사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안하고 있다. 집단 공동체는 알자스 지방의 기업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매우 경쟁력이 높은 1 평방미터당 매월 2유로에 가까운 임대료를 제시했다. 이 가격은 접근이 용이한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 ⑤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된다. 웨세루란 공원에 입주하는 기업은 관리 사무소, 물류, 청소, 비서 업무, 회의실, 리셉션 회장, 쇼룸 등 공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웨세루란 공원에는 기업 및 그 종업원이 가능한 레스토랑, 탁아소 보육 곳, 문화 센터, 상점 등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 ⑥ 섬유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섬유 기업은 공원의 역사적 이미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섬유 박물관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관광 관련 기업은 연간 10만명의 관람객을 통해 웨세루란 공원의 이미지를 즐길 수 있다. 공간(공예 센터, 예술가의 아틀리에) 프로젝트는 다양한 같은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퀄리티 전세'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며, 각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의 창조와 시너지 상승효과가 있다.
- ⑦ 지역의 틀을 넘어선 확장 교류 지역, 국가의 틀을 넘어선 EU 차원의 교류가 존재하고 있다. 유사한 해외 산업 유산 시설과의 교류를 검토하고, 해외 모드 섬유 학교와의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EU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4)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국내 법령과 유사입법례의 분석

(1)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며, 문화재 활용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도 주지하듯이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활용과 관련된 주요 조항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활용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 개발, 조사 심의, 그리고 보조금과 경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활용사업의 추진·기본방향 설정·지원내용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화되어있지 않다.

조항			내용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 6 조 의 2	문화재의 연구 개발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제9조	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 4 장 국가지 정문화 재	제 5 1 조	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조항			내용
제 5 장 등록문 화재	제 5 2 조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 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5 3 조	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 5 8 조	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 8 장 국외소 재문화 재	제 6 7 조	국외소재문화 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6 9 조의2	국외소재문 화재 환수 및 활 용에 대한 의 견 청취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6 9 조의3	국외소재문 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 9 장 시·도 지정문 화재	제 7 1 조	시·도문화재 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2 조	경비부담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1 1 장 보 칙	제 8 2 조	권한의 위임·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8 4 조	국·공유재산 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표 34 문화재보호법의 활용 관련 조항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진흥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함에 있다.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무형유산의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보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추세이나, 무형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조항이 거의 마련되어있지 않다.

조항			내용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 22 조	정기조사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제 31 조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②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부칙	제4조	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표 35 무형문화재법의 활용 관련 조항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이 법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의 목적성만 명기되었을 뿐, 활용전문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양성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조사, 관리를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매장문화재의 관리에 초점을 두어 활용문제는 다루어지지 않다.

(5) 문화재보호기금법

○ 이 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함임(제1조). 기금의 용도는 제5조에 명시하였는데,

- 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 ② 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③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과 손실보상,
- ④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 ⑤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 ⑥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 ⑦ 그 밖에 문화재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함이다. 즉, 문화재보호기금은 보존관리적 차원에서의 기금으로 해석된다.

(6)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국내 유사 입법례

○ 국내의 유사입법례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정책 등의 “활용”을 위한 입법의 상세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총 여섯 가지의 쟁점 중 ‘문화재활용의 정의’를 제외한 다섯 가지의 쟁점에 관하여 관련된 유사 법률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았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Ⅲ.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항목에서 다루고자 한다.

5. 문화재 활용 개선을 위한 과제와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1) 활용 법령 개선 방향

- (1)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는 지금까지의 문화재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행정력 등 공공 자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 (2) 그동안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양적 성장, 최소한의 활용 기반 구축,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인식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주체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룩해온 문화재 활용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활용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3)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문화재 활용은 다음의 사항을 현실화 해야 한다.
 - ① 활용의 개념과 성격 확립을 통한 가치 중심 활용 실현,
 - ②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활용 대상 확대와 활용 방법 다양화 등으로 실질적 활성화 추구,
 - ③ 전문인력 양성과 실행 주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활용 역량 강화 및 활용 수준 향상,
 - ④ 활용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현장 중심 활용 및 보존에도 기여하는 활용 실현,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학교 등 주체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재 활용 체계화,
 - ⑥ 교육 콘텐츠 확충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와 보존·활용 기반 강화
 - ⑦ 이상의 활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와 조직, 인력 등 기반 마련 및 강화

(4)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그것이 보존에도 기여하며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활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의 활용 정책 방향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5) 위와 같이 문화재 활용 관련 법령과 활용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로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①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정의
- ② 활용진흥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③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 ④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및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
- ⑥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이 활용진흥에 필요한 사항

(6) 이에 따라 6가지의 활용 진흥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문화재 활용의 정의 이해가 갖는 중요성 인식

(1) 문화재 활용 조항의 필요성

-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 계승, 활용이라는 ‘문화재보호의 3대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제2조 정의조항에 ‘활용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활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되어있지 않다. 이를 정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활용 현황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사항이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보면, 활용주관기관·지자체·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갖지 않고 진행하는 것도 다수 보인다. 이는 프로그램의 단순한 재미만을 추구하거나, 문화재 보존 또는 문화재에 담겨 있는 가치의 발현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문화재 야행은 일반 문화유산 관광체험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를 명확히 해야 함은 당면과제이다.

- 바꾸어 말하면, 왜 문화재 활용만큼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야 하며, 문화재 보존과 해당 프로그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 및 가치의 전승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타 부처에서 실시하는 문화관광 등과는 차별성을 가져야만 한다.
- 이를 위해서 ‘문화재 활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활용관련기관 모두가 정확히 인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2) 문화재 활용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문화재청

-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타부처에서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육성정책은 국내관광지출 28조원(2017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액 2,000달러(2017년) 등을 목표로 하는 문화재청보다 더 큰 규모의 유사사업(문화유산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추진과제 중 권역별 역사·문화·생태자원(문화재를 포함한) 연계개발 관광자원 확충사업으로 2017년 2,251억원이 투입된다.
-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담당하는 문화청보다도 문화재 활용 유사사업은 농림수산성⁹⁵⁾ 등에서 더 많은 예산과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타부처에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유사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효과적인 면에서 더 큰 목표를 갖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활용정책 및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라 ‘보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부처도 문화재를 통한 관광 등 다른 행위를 할 때마다 ‘보존’의 원칙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타부처는 문화재를 일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같은 ‘관광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존의 개념이 선제적으로 검토되지 못함으로써 잘못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활용하는 모든

95) 예를 들어 일본 농림수산부의 식문화정책 중, 일본식(和食)의 활용사업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추진사업 등(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登録, 和食文化の保護・継承 등의 사업)

부처는 ‘문화재 활용의 정의’를 숙지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정책에 따라 각종 활용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보존에 기반한 활용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정의조항과 함께, 문화유산이 어떤 방향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의 필요성

- (1) 양질의 문화재 활용을 가능케 하려면 프로그램의 재미와 의미 전달력을 모두 갖춘 기획과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개별문화재의 효율적인 가치 전달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로 민간단체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에 문화재 활용 기획, 추진, 교육 및 교수법, 다양한 콘텐츠 전달 장치, 개별 문화재의 특성 전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조사와 연구,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 (2) 문화재 활용사업은 근본적으로 공모사업인만큼, 사업주관 희망단체의 자체적인 기획과 개발이 이루어졌었다. 이는 사업주관 희망단체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며, 질적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주관 희망단체의 자체역량 외에 이 밖에 민·관·학에서 정기적으로 활용연구에 대하여 논의되는 자리는 그간 마련되지 못하였다. 즉, 활용연구의 기초연구 차원에서의 활동이 부족한 상태이다.
- (3)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생생문화재와 향교서원활용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체험 중심의 기획이 많다. 또한 해당 활용사업의 설문조사를 보면, 활용사업을 잘 모르는 40대 여성과 자녀층이 지인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활용사업은 이른바 ‘가족단위 매니아층’이 주된 참가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활용사업은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되었다는 특징이 있어, 다양한 수요자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문제

- (1)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 참여인력 및 단체의 전문화, 향후 참여하게 될 인력 및 단체의 전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현 참여인력과 단체가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기획분야, 진행분야, 홍보분야, 수익창출분야 등)을 양질의 인력 양성과 배치로 점차 전문화해나가고자 한다.
- (3) 그간 정기적이며 다양한 주체가 추진하는 문화재 활용연구가 부재하였듯이,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육성 등에 대한 활동도 부재하였다.
- (4) 현재 문화재 활용에 관한 수익 시장은 초기단계이며, 생생문화재와 향교서원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영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이다. 경제효과와 일자리창출을 비영리단체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영리기업의 육성과 지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 (5) 지역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생생문화재를 중심으로 보면 대도시 및 인근지역에 활용 프로그램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소도시에도 문화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양성과 마을기업 육성 등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6) 현역 문화재 활용 인력에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도 부족하여 활용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자격증제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제 등을 도입하여 활용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이수제는 인문계열 전공 출신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의 필요성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민간단체를 연결하고 소통 지원할 지원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의 입장차이를 연결하면 서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활용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콘텐츠 개

발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또한 활용단체 대표자, 실무자 등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창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는 중앙이나 광역단위의 활용사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민간단위의 활용단체연합회를 지원 또는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조직을 설립 또는 지원할 경우 지원조직에 대한 규모와 임무, 예산, 조례 등 세부사안을 마련 시행토록 해야 한다.

6)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 (1) 문화재 활용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문화재의 원형보존 문제가 항상 결부되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창의성과 가치 전달성 등을 요구하는 문화재 활용 분야에서는 여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활용주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국가와 지자체는 활용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 (2)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문화재 활용주체와의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지원주체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현재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와 조사 등에 관한 문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와 같이 문화재 활용진흥에 제반 해결사항이 여럿 보인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활용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

7)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의 필요성

- (1) 문화재 가치의 전달은 문화재 활용의 목적 중 하나로, 효율적인 가치 전달을 위하여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등 학생 또는 일반인, 더 나아가서는 중장년층 주부 또는 노인 등, 수요계층을 고려한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지원사항 등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2) 위의 현황과 같이 문화재 활용사업의 주 참가자는 ‘교육과 학습을 원하는 40

대 여성과 자녀층'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통한 교육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현재까지 마련되어있지 않고, 이 또한 활용기획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3) 교육에 필요한 교수법(教授法), 교구와 교재 활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학교교육과 현장학습의 연계방안 등 실증적인 교육방안, 또는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특히 향교서원활용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인 교육콘텐츠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 문화재 활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1. “문화재 활용”의 정의조항 신설

1) 개정이유

(1) 문화재 활용의 개념에 관한 규정 미비에 따른 정책적·행정적 불안정 해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여러 주체들이 문화재 활용을 점점 활성화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활용에 관한 법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데 따른 혼란과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예산 등 공공자원을 지원해오고 있음에도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해와 혼란이 야기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2) 문화재 활용에 관한 구체적 법률 조항 신설에 필요한 근거 마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 사업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충실하게 정의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 문화재 활용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이를 토대로 활용 사업과 활용 지원 사업 등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

(3)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 실현

- 문화재 활용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문화재 활용을 실현한다. 문화재를 활용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으면서 그것이 보존에도 기여하게 하는 등 문화재 활용이 부작용 없이 순기능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 무엇이 문화재 활용인지를 법률로 규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을 구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문화

재 활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4)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재 활용 활성화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시대, 문화재 유형, 입지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한 다채롭고 창의적인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한다. 무엇이 문화재 활용인지를 분명히 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방하기 수준을 넘어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개발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5) 문화재의 가치 증진에 역행하는 활용 시도 예방

- 근래에 문화재 활용은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으나,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여 활용이 활성화될수록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문화재 활용은 보존과 달리 그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자칫 문화재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문화재 활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활용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보존과 함께하는 활용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다.
- 문화재는 다른 시각에서는 지역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으로 인식하여 여러 방면에서 활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문화재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중점을 두는 ‘문화재 활용’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문화재 활용은 그것을 일반적인 지역자원이나 문화자원, 관광자원으로 보고 활용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재 활용의 개념을 규정하지 못한 채 활용 정책 집행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활용의 개념에 관한 조항을 두지 못한 채로 ‘보조금 지급’ 등 활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활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 사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등 불안정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무엇이 활용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활용 사업을 펼치고 활용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활용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모순이 있고, 이로 인해 문화재 활용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지 않는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2) 활용의 정의에 대한 통일된 공론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

- 다양한 연구자들이 나름의 논거를 들어 문화재 활용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공론으로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문화재 활용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에 대한 뚜렷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일반 문화체험형 관광과 차별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3) 주요 개정 내용

(1) ‘문화재활용’ 개념정의의 신설

- 「문화재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 계승, 활용이라는 ‘문화재보호의 3대 목적’이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제2조 정의조항에 ‘문화재 활용’의 정의가 없어 문화재 보존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문화재 활용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올바른 활용정책을 위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 문화재가 갖는 다양한 가치를 누리고,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문화재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재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면서도 문화재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그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증진할 수 있어야 문화재 활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삶의 질 향상(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인간 개발 또는 발달(human development), 가치 증진(improving the value of heritage) 등을 문화재 활용에 관한 중심적 요소로 집약할 수 있으며, 문화재 활용의 개념은 이러한 요소들을 포괄하여 정의할 수 있다.

- 문화재 활용이란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일을 말한다. 이로써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과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문화재를 활용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개방·공개를 통한 관람 등은 물론이고, 문화재를 잘 가꾸어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자긍심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등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이면 모두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다.
- 문화재의 가치 증진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재를 적절히 정비하고 잘 가꾸어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는 것과 그 문화재를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관념적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문화재 활용에 해당한다.
- 궁극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일이 문화재 활용이므로, 문화재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는 활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문화재 활용' 주체의 명시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조항에 '문화재 활용'의 정의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존의 관점에서 이를 추진할 주체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 문화재보존 및 가치의 전승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재청"을 문화재 활용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하는 주체임을 명시한다.

(3) 문화재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행하는 보존적 역할의 강조

- 문화재 활용의 주 목적도 「문화재보호법」의 목적과 같이 '문화재 보존'에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 향후, 활용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문화재 활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 중 제반 여건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일상관리(활용 후 바로 점검)와 일상적 정기 모니터링 행위를 마련해야 한다.

4)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⑧ 생략 <u>< 신 설 ></u>	⑨ 이 법에서 “문화재활용”이란 문화재보존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기대효과

(1) 문화재 활용의 성격에 관한 규정 확보

-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어떤 것을 문화재 활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허용할 수 있는지 등 문화재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틀에 관한 법적 규정을 확보할 수 있다.
-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 확보는 실제 행정과 활용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2) 문화재 활용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 신설에 필요한 토대 마련

- 문화재 활용과 활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항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의의가 있다.

(3) 보존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활용 실현

- 문화재 활용의 개념과 성격 혼동에서 오는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보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직한 활용을 실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문화재의 가치 증진이 문화재 활용이므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는 활용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된다.

(4) 보존과 활용 간 적절하고 명확한 관계 설정

-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명확히 활용이면서도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것은 보존과 활용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복잡하고 불분명한 보존과 활용 간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 문화재 활용은 보존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활용되는 것이며, 활용을 통해서 보존가치가 더욱 증진되는 것이므로, 활용으로 인해 문화재의 훼손이 이루어진다면 보존환경이 나빠진다면 하는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1) 문화재 활용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의 정의 제안

- 기존 연구자의 안
 - 심승구(2006년) : 문화재의 단순 이용이 아니라, 가치나 기능(능력)을 살려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지속가능한 이용=효율적 사용)
 - 장호수(2006년) : 문화재의 가치를 찾아내 새 숨을 불어 넣거나 변용해 새 가치를 창출
 - 류호철(2014년) :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
- 문화재 활용의 정의(안)
 - (1안) 문화재를 개방·이용함으로써 가치를 전달하며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 (2안) 문화재의 가치를 누리고 나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일
 - (3안) 문화재의 가치를 교육하고 향유하여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일

구분	키워드	내용	장점	단점
기존 안 (심승구)	가치, 지속가능성 (보존 등)	문화재의 단순 이용이 아니라, 가치나 기능(능력)을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	문화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문화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	-보존적 차원에서의 활용 언급이 없음 -문화재 가치에 집중하고 있어, 문화재들 '이용'하는 행위와 유사
기존 안 (장호수)	가치, 광범위한 가치창출 (관광콘텐츠 등)	문화재의 가치를 찾아내 새 숨을 불어넣거나 변용해 새 가치를 창출		
기존 안 (류호철)	가치, 긍정적 영향 (보존, 향유 등 광범위)	문화재로부터 긍정적 효과 또는 영향을 얻는 모든 일	문화재 활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효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가짐.	긍정적 효과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보존'은 효과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음
신규 제안	가치, 보존	문화재를 개방, 이용함으로써 가치를 전달하며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활용의 궁극적 목적이 보존임을 명시 -활용을 위해 문화재를 개방하여야 함을 명시	활용에 대한 협의의 관점에서 문화유산 콘텐츠의 탄력적 활용은 다소 경색될 수 있음
신규 제안	가치, 향유	문화재의 가치를 누리고 나눔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일	-활용의 목적이 가치 증진과 향유에 초점을 둠 -활용에 대한 광의의 관점으로 문화유산 콘텐츠의 탄력적 활용 등 허용	활용은 보존에 있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활용주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신규 제안	가치, 교육, 향유, 보존	문화재의 가치를 교육하고 향유하여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일	활용의 목적이 가치 증진과 보존에 있음을 명시	활용의 범위가 교육 및 향유(관광)로 좁혀질 수 있음

표 38 문화재 활용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에서의 정의 제안

(2) 유사 입법례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문화재를 보존 및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일본 국토교통성 2014년 문화재활용관련 보고서 상의 정의 : “문화재의 활용은 각 지역에 현존하는 문화재의 매력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재 보존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의 귀중한 자원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교육·홍보하여 관심을 환기하는 것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 이를 정책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미국의 문화재 활용관련 법제는 연방정부 소유의 문화재산을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그 가치의 활용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 그러면서도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적절하고 타당한 집행 주체를 정하는 것이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속적인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조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주정부의 역할임이 강조되고 있다.

(3)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문화재 활용’이라는 정의가 없어도 적절한 활동반경에 따라 문화재청 및 각 부처에서 활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의를 규정짓게 된다면 오히려 활용활동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저하시키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 문화재 활용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제하여 문화재의 ‘보존’을 전제로 둔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내용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감독과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활용을 주관하는 총괄부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활용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을 마련하는 것과 같다.
 -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를 개방하고 이용하거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사람들을 부르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하며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문화재의 가치마저 왜곡시키는 잘못된 방식의 문화재 활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활용의 정의를 내려 목적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목적성 없이 재미성만 추구하는 문화재 활용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데, 관아문화재에서 주로 실시하는 ‘곤장맞기 체험’, ‘형벌 체험’이 대표적이다. 관아는 오늘날 시·군청 등 행정기관과 같이 향촌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자 지역문화의 중심지이나, 무분별한 ‘곤장맞기 체험’으로 관아는 ‘형벌 내리는 곳’, 관아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지 ‘형벌 주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게 되었다. 물론 송사(訟事)와 처벌은 관아의 기능 중 한가지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것만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면 올바른 활용이자 올바른 보존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림 51 낙안읍성 곤장맞기 체험



그림 52 해미읍성 곤장맞기 체험

- 또한, 문화재 활용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특히, 목조 건축물 문화재는 멀리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조 건축물은 사람이 드나들어야만 더욱 오래 보존할 수 있으며, 잘 지어진 공간이라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폐가가 되기 때문이다. 기록물이나 무형문화재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료에 기록물이나 무형요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기 쉽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그림 53 입장이 폐쇄된 문화재(좌)와 공개된 문화재(우)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 · 개발

1) 개정이유

(1) 문화재 활용을 통한 산업규모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활동은 OECD에서 ‘인간 · 문화 ·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는 연구활동으로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얻고, 개발활동으로 상업적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 설계 등에 연구성과를 접목한다. 이 때문에 모든 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산업활성화를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 문화재 활용 사업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영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 반대로, 연구개발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큰 규모로 성장하기 어렵다.
- 앞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문화재 활용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존 산업구조의 개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의 하나로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산업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연구개발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2) 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적 효율성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 문화재 활용이 보존적 관점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기능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하며,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동반되면서도 최대 효율의 보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여야만 한다.
- 건조물 문화재의 경우에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드나들 때 보존관리가 되고, 건물 외부에서 바라보게끔만 할 때는 오히려 폐허가 되는 사례를 여럿 확인할 수 있다. 건조물 문화재를 직접적 ·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존하고 있는 사례로,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고택숙박사업인 홀리데이 코티지(Holiday Cottage) 프로그램,

미국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보존정책인 프리저브 아메리카 정책 등을 앞서 소개한 바 있다.

- 앞서 서론에서 본 사례와 같이, 건조물 문화재 활용으로 다음과 같이 보존효과를 거두게 된다. 건조물 문화재 안에 관람객이 들어오게끔 하면, 관리인이나 활용주체가 지속적인 관람객 맛이를 위해 건조물을 깨끗이 쓸거나 닦고 수리해야 할 사항을 수시 발견하며 보수하게 된다. 또한 관람객은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보다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관람객에게서 발생하는 수익은 문화유산 관리활동과 운영 인력의 임금으로 지불되며, 양질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역 문화재 활용단체 양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기록유산과 공예품 등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내용과 기법, 문화적 관습과 의미 등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전달될 때 문화재는 보존·보호되고 미래세대에 전달될 수 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야만 한다.
- 문화재는 1차적으로는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보존 대상이면서도 활용 가치를 가진 유산이므로, 문화재를 활용할 때는 보존의 테두리 안에서 보존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개발·개선이 필수적이다.
- 문화재는 유형과 지역, 입지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므로, 보존·정비는 물론이고 활용도 이러한 특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유형별, 지역별, 특성별로 차별화된 문화재 활용을 통해 문화재 활용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여 지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3) 문화재의 가치증진을 위한 방법론 등의 연구개발

- 한국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부여와 삼한, 삼국시대, 고려시대 등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문화재도 이러한 시대상을 간직하고 있다. 세계에서조차 한국의 지역문화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2017년 현재 총 47가지의 유네스코 지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조선시대 궁궐문화재’

활용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문화재 전반을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문화재 활용 시도가 전례 없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 궁궐과 근대문화유산 등 일부 유형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도 궁궐활용사업에 2017년 기준 약 124억, 생생문화재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약 111억을 투자하고 있어 궁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재의 다양한 가치를 내·외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선왕실문화만을 소개하는 ‘궁능 문화유산’이라는 좁은 관점을 넘어서서,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였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전반적으로 소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대별·유형별 문화재에 대해 활용 대상 유형 분석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개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정·등록문화재에 더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조사, 활용 대상 우선순위 결정, 활용 방법 연구, 예상 효과 분석, 활용 정책 개선 연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4) 문화재 체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관람객 만족도 향상은 지속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생생문화재 관람객 만족도를 예로 보면, 2015년에 87.3점(100점 만점), 2016년 88.0점으로 양호 수준이나, 설문조사 현황을 보면 주된 참가자는 이른바 매니아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반계층에 대한 만족도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우며 매니아층에 비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 부지가 넓고좁은 문화재의 활용방안, 고대·중세·근대·현대 등 시대별 고증과 활용방안, 무형문화재(공예, 공연 등)의 활용방안, 동산문화재와 기록유산 등의 활용방안, 인접문화재와의 구체적인 연계 활용방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문화재의 전문 활용방안, 도심과 가까운 문화재의 생활밀착형 활용방안, 지역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등에 대한 문화재 특성별 고민, 또한 어린이(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40~70대 전업주부층, 매니아 계층, 노인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활용의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야하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부족하며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 문화재 활용사업의 참가자 동향 조사는 특정양식의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조사기법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보존적 효과 분석	수요에 관한 자료	공급에 관한 자료
문화재 직접적 활용횟수(건물 내 활용 등) 문화재 활용 횟수당 보존관리 횟수 비교수치 - 무형문화재의 연습량, 제작량 - 건조물, 동산문화재의 관리횟수(청소 등 일상관리에서부터 보수활동·정밀모니터링까지) - 기록물문화재의 공개량(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중매체에 해당 이야기를 공개하였는가)	관람객 수 관람객 지출 관람객이 머문 기간 관람객이 온 곳(지역, 외지역, 내·외국인) 방문목적 교통수단 숙박장소여부 관람객의 성격(나이, 성별, 방문횟수, 교육수준, 직업, 여행에 관한 성향, 여행기간 동안 하는 활동, 단체·가족 여부 등)	활용 프로그램의 유형과 내용 관광장소의 성격(건조물문화재, 박물관, 공원, 사적지 등) 관광부대장소의 방문의향 또는 성격(쇼핑몰, 레저시설, 오락시설 등) 숙박시설과 종류(호텔, 모텔, 전통한옥, 지인의 집 등)

표 39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수집해야 할 주요 통계자료

(5) 활용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민간기관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이 문화재 활용사업에 더욱 적극 뛰어들어 활용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형태이나, 활용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볼 수 있는 창구는 문화재청이라는 관에서만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민간 및 학계에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야만 한다. 활용 지원조직에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재 활용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역할 분담은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활용 품질 향상, 활용 방법 다양화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문화재 보존·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관이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은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활용 지원 조직 등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조사·연구에 기초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입안 체계 미흡

- 문화재 활용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이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수적이거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활용 정책과 사업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조사·연구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문화재 활용 정책과 사업 개선은 행정 역량 이외에는 일회성 연구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2) 활용사업에 참고가 되는 연구성과의 부족

- 문화재 활용 관련 연구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제8항에 따라 보존·관리·활용 5개년 계획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넓은 범위에서의 정책방향 수립 정도로, 기획·운영 등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 기획과 운영, 기초자료 조사 등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대부분 활용 수행단체의 자체역량에 의지하는 형태이다.
- 게다가, 문화재 활용 전반에 관한 통계나 분석자료도 전무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할수록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이지만, 이를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문화재 활용 단체와 인력의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조직 규모, 조직의 사업 운영 성격, 근로만족도, 근속연수, 급여상황, 시장확장 가능성 등)도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 활용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다.

(3) 법적 근거 불충분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활용에 필요한 자원 조사, 사례 조사, 활용 사업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정책 및 사업 개발 등을 포

괄하기 어렵다.

- 문화재 활용에 관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내부규정 등으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일반 문화관광과 차별성이 부족한 문화재 활용

- 현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민간이나 타 부처 등에서 수행하는 유적관광, 콘텐츠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 타부처 등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유적관광은 문화재를 소재로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활용사업은 문화재에 직접 들어가서 보다 생생한 체험을 하며, 행사 준비기간에 일정수준의 문화재 관리활동도 동반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 ‘문화재 활용이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성을 수행단체·지자체·문화재청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문화재를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안전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5) 의미성 또는 재미가 결여된 활용 프로그램 설계

-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문화재 보존활동에 연관이 되거나 국민에게 문화재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도록 해야하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 의미의 전달력이나 개연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의 개발진행 또는 의미만을 추구하다보니 전달력이 부족한 프로그램 개발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활용 프로그램간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문화재 활용 수요자 또는 향유자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문화재 활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순 관람 중심의 활용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천 전곡리 선사축제’나 ‘서천 한산모시문화재’,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등과 같이 수요자 또는 향유자가 단순히 관람객으로만 머무르는 수준을 넘어 행위 주체가 되어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문화재 활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재미를 느끼며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일부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앞서 관아문화재의 곤장체험 사례와 같이 문화재의 기능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증진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와 같이 수요자 또는 향유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 활용 방법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주요 개정 내용

(1) 연구·조사의 시행 및 지원근거 신설

구체적으로 지정·등록문화재에 더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조사, 활용 대상 우선순위 결정, 활용 방법 연구, 예상 효과 분석, 활용 정책 개선 연구 등의 시행, 수행기관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해 지원기관 설치

문화재는 특성상 보존과 활용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4)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00조 (문화재활용계획의 수립과 기초조사)</p> <p>① _____은 문화재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재활용기본계획(이하 “활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_____은 문화재활용의 현황, 실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_____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문화재활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_____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기초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5) 기대효과

(1) 연구개발에 기초한 문화재 활용의 수준 향상

- 문화재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은 활용 대상 문화재의 유형과 특성, 관련 조건, 사회적 상황 등에 적합한 활용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의 수준을 높이는 등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그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활용 정책 및 활용 사업 개발·개선을 실현할 수 있다.

(2) 문화재 보존활동 및 안전관리기능 강화

-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통합적 인식 제고, 보존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 문화재 활용이 일반 문화관광과는 다른 차별성과 함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 조사·연구에 기초한 적절한 방법, 적절한 수준의 활용으로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문화재 활용을 실현할 수 있다.

(3) 새로운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각계에서의 다각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기초조사 연구성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활용제도의 개선방안이 지속 논의된다.

(4) 활용 프로그램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활용사업 브랜드 가치 제고

- ‘딱딱한 내용 또는 개연성 없이 어설픈 문화관광’에서 ‘의미와 재미를 둘 다 발견하는 문화재 향유’, ‘보존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활용사업’으로서 발돋움할 것이다.

-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활용사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때, 영국·미국 등 문화선진국과 같은 산업적 기반 마련도 기대할 수 있다.

(5) 민·관·학의 연구개발 교류 활성화

- 민간 실무조직에서의 활용사업 시행오류 등의 공유를 활용연합단체 등 정기적인 연구개발모임이 활성화되어 발전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 관과 학계에서의 활용연구 및 연구정책 관련 제도 개편과 가이드라인 개발, 민·관·학의 견해 교류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에 대한 보충자료

- 문화재 활용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례 : 미국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정책에 서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조사사업

- 미국의 프리저브 아메리카 정책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한 부분으로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교육과 훈련 프로젝트는 교육 목표와 도구, 자료개발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계획, 문화유산 보존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적 향상을 위한 활용 개발전략과 계획 등 문화유산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은 반드시 전통문화전문가, 경제활성화 사업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해당 사례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신규 브랜드 개발과 육성, 개별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마련, 추진 및 실체화 등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모든 분야의 연구가 진행된다.
- 기초연구 이후에는 지역 도시재생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유산 보존 방안과 활용 사업이 추진된다. 미국에서는 문화유산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추진하는 ‘메인스트리트 아메리카(Mainstreet America)’사업도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메인스트리트 아메리카에 관한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사업명	실버톤 타운의 건축문화유산 기초조사 목록화 사업 ⁹⁶⁾	마켓&옥타비아지구 역사자원 보존계획 ⁹⁷⁾	농촌 지역유산 개발사업(연구, 조사, 기록 및 해설 등) ⁹⁸⁾
지역	실버톤 타운	샌프란시스코	아칸소 주
법적 근거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행정명령 13287)		
사업비(달러)	35,530	83,529	100,000
사업내역	실버톤 타운의 수백개의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목록화 작업. 이 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조사단계로서 시작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내 문화유산 소유주들이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보조금, 이 사업은 문화유산 보존과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행위를 문화유산 소유주와 기업, 단체에게 알려주는 교육방안이 포함된다.	아칸소 델타 지역을 위한 지역 문화유산 개발 계획으로, 음악유산,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산과 역사, 농촌문화와 역사라는 세가지 테마의 조사, 연구, 문서화 사업.

표 41 미국 지역문화유산 기초연구조사사업 사례(일부)

96) Town of Silverton Cultural Resources Survey

97) Market and Octavia Historic Resource Preservation Project

98) Rural Heritage Development: Survey, Research, Documentation and Interpretation

- <표 40>에 제시된 사례는 미국 지역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조사사업 사례의 일부분이다. 해당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 기초연구조사사업은 한 공간의 문화유산 산포지구를 분석하여 도시재생적 측면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 <표 40>에 제시된 내용은 사업규모가 가장 기초적인 목록화에서부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제적 활용 등에 대한 교육방안 개발, 음악유산 등 지역의 특정문화유산을 특화하여 향후 신규브랜드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종합적 조사사업 등 사업내용을 종류별로 나열하였다. 미국의 기초연구조사사업은 결국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해 특성과 활용방안 등을 파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존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 <표 41>은 위에서 제시한 ‘마켓&옥타비아지구 역사자원 보존계획’의 단계별 추진과 관련한 내용이다. 사업내용은 ‘역사보존자원의 목록화와 분석→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사업 설명회 실시→추진→실행과 활용’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자원 기초조사 주요 과정	항목	내용	비고
1단계	역사보존자원 목록화와 분석	상징성, 보존적 온전성, 역사적 중요성, 문화재 테마(정치, 사회, 경제 등)에 대한 목록 작성	
2단계	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	계획 수립, 문화유산 개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	
3단계	사업 설명회 실시	지역주민, 문화유산 소유주 등 대상의 사업 설명회 실시, 개선안 마련	조사 이유 등에 관한 설명, 잠재적 편익분석 등에 관한 소개
4단계	추진	세계혜택 마련, 문화유산 소유주 대상의 우대혜택과 규제완화, 역사지구의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지원사업 추진,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추진 등	도시재생적 측면과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문화유산 활용 추진
5단계	실행과 활용, 지역활성화	2017년 현재 옛날 네온사인투어 등 유료관광프로그램 운영	다른 역사지구와 연계 운영

표 42 ‘마켓&옥타비아지구 역사자원 보존계획’에서의 역사자원 기초조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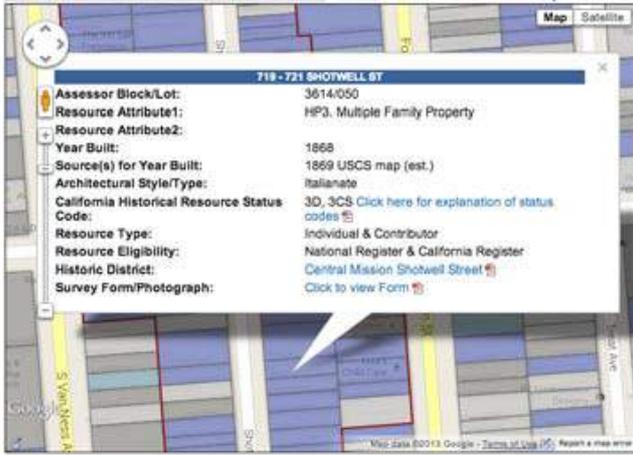


그림 54 기초연구조사로 목록화된 역사유적



그림 55 테마 문화유산에 따른 역사지구 설정



그림 56 마켓&옥타비아지구 보존, 활용 및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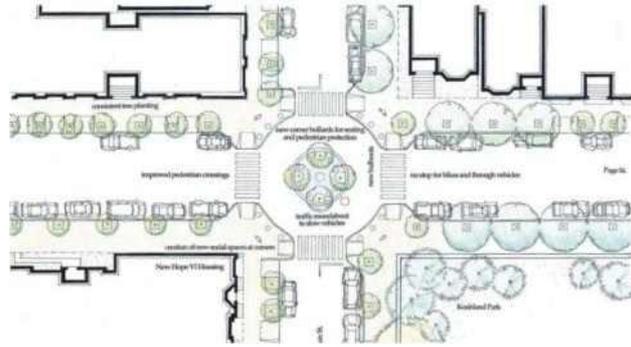


그림 57 마켓&옥타비아지구 문화유산 주변 경관정비계획 세부사항 마련

TOURS

Spend an evening under the neon glow with SF Neon authors Al Barna and Randall Ann Homan. Tours feature local history with architectural and graphic design insights to San Francisco's unique legacy of surviving neon signs. Photography and a lively Q&A are encouraged. Be prepared to walk 2 miles for approximately 2 hours, with rest stops. Tours start just before twilight, rain or shine (neon looks best on a rainy night!). Contact us for questions or to request a private tour for up to 15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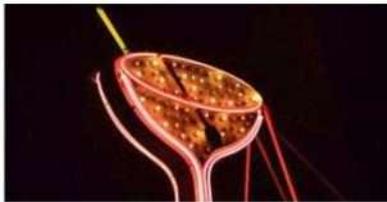
Tickets: \$20 Regular and \$10 Students/Teachers/Seniors. Purchase tickets via Ticketleap. Please include your cell number in case of any last-minute changes due to obstructions or storms.



UNION SQUARE-DOWNTOWN TOUR

Tickets

This tour will surprise you with hidden neon gems that still light up the night around Union Square, plus Market, Bush, California, and Front Streets. The dominating brilliance of San Francisco's downtown neon lights is now a dim memory, but it was a rich era of the city's history. Meet at Front Street near California.



MARKET-MISSION-CASTRO TOUR

Tickets

Flow through corners of three neighborhoods, from the stunning Castro marquee to the city's largest neon martini glass at the 500 Club. Historic neon glows on corner stores, corner bars, coffee shops, groceries stores, and cinemas—all places where neighbors congregate. Meet at It's Tops Coffee Shop on Market Street near Octavia.

그림 58 샌프란시스코 역사지구별 옛날 네온사인투어 안내 홈페이지
(하단부분 : 마켓지구 투어 안내)

(2) 유사입법례

○ 해외의 유사입법례

- 일본의 문화청은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의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차세대 상속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⁹⁹⁾ 이를 위해 문화예술훈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대상사업은 ①역사문화기본구상책정사업¹⁰⁰⁾, ② 역사문화기본구상개정사업¹⁰¹⁾등이다.¹⁰²⁾

99)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地域文化遺産活性化事業）国庫補助要項

100) 지역의 역사적 배경, 자연환경, 사회적 상황, 문화재의 상황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

101) 사회정세의 변화와 지역 내의 새로운 조례 등의 제정과 관련된 행정계획 등의 변경 등을 근거로 기존의 기본구상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02) 文化遺産総合活用推進事業（歴史文化基本構想策定支援）国庫補助要項

-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Preserve America)”에서는 연방정부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지역 간의 협력과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¹⁰³⁾ 해당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이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연구·조사할 것을 정하고 있다.¹⁰⁴⁾
- 연구·조사의 내용은 NHPA 제110조(a)(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의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은 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계획에는 관리 대상인 문화재의 목록이 열거되어야 하며, 그 유지 및 관리방식은 해당 문화재의 특수한 역사적, 고고학적, 건축학적, 문화적 가치에 적합한 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¹⁰⁵⁾
- 더불어 “프리저브 아메리카(Preserve America)”을 통해 연구조사와 목록화 사업(Research and Documentation)부문 5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국내 유사 입법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선진국을 지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①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를 거쳐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② 정부는 종합계획에 의한 연도별 기초과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

103) Preserve America Sec. 4(*Improving Federal Agency Planning and Accountability*)

104) *Ibid.*

105) 2003년 행정명령에는 2004년 9월 30일까지 각 기관이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Chairman of the Advisory Council on Historic Preservation”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들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함.

- ③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등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④ 기초과학연구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정보등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⑤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기금을 확대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⑥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당해 정부투자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함.
- ⑦ 기업 또는 개인이 대학부설연구소설립지원·대학연구시설지원·대학연구장학금 지원등을 위하여 출연할 경우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조문 참고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u> 측량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u>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사권한, 세부사항 대통령령 ② 협조요청, 협조의무 ③ 전문기관의 조력 및 위탁
경관법	<p>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u>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u>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 : 조사권한, 세부사항 시행령 위임 • 단서 : 타법 조사 활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p>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고도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u></p> <p>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u>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② 조사권한 ③ 협조권한 ④ 세부사항 위임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p>을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p>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업종별·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① 조사 및 자료수집의 권한</p> <p>② 협조요청 권한</p>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p>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p> <p>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① 기초조사 의무</p> <p>② 전문기관 위탁</p>
문화재보호법	<p>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u>관련 자료의 제출</u>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u>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① 조사, 기록 권한</p> <p>② 자료요청 권한</p> <p>③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동의</p> <p>④ 세부사항 위임</p>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p>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① 계획수립시 조사의무</p> <p>② 조사업무의 위탁(가능기관 대통령령)</p>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p>제6조(기초조사)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산림복지시설의 제공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p>	<p>① 기초조사 권한</p> <p>② 전문기관 위탁</p> <p>③ 자료요청 권한, 의무</p> <p>④ 세부사항 위임</p>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p>②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산림청장은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기초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p>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9.></p> <p>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p> <p>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u>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① 조사의무, 결과제출 의무</p> <p>② 자료제출요청 권한</p>

(3)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이미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행 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가?

-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제8항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는 연구관련 조항이 있어,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문화재 활용을 포함한 2017~2021년 기본계획 등이 연구된 바 있다.

- 그러나 해당 법령으로 추진되는 연구는 넓은 범위에서의 문화재 제반 계획으로 정책분야에 해당하며, 문화재 활용의 실무 전반 대한 부분까지는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문화재 활용 정책과 실무 연구가 동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내용	추진전략	핵심과제	단위과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 수립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간다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역사문화자원 관광콘텐츠 육성
			문화재현장 국민참여 확산
			스마트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구현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재 수요 창출	문화유산 교육진흥 활성화
			왕실문화유산 연구교육 기반 강화
			전통문화교육원 연수교육 기능 강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자원 발굴
	문화유산의 지역 발전 자원화	문화유산 이야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자립형 지역경제기반 마련	
		유형문화재(건조물 및 동산) 보존관리	
		사적지 보존관리	
	보존 패러다임을 바꾼다	유형별 문화재 합리적 보존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중요민속 및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활성화
			제3섹터 역량 강화 및 활용 확대
		보존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문화재지역 적극 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관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지원 강화
	국가브랜드, 문화재로 만드다	유네스코 유산등재 및 보존, 활용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기반 강화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홍보 강화
			문화재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ODA) 다변화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	국외소재문화재 조사, 환수, 활용 활성화
			통일대비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강화
			고도유적 및 궁궐 복원 정비
			경복궁, 덕수궁, 사직단 복원 정비
	문화재 기반을 튼튼히 하다	기술변화대응 및 기록정보 고도화	조선왕릉 능제회복, 정비
			과학적, 체계적 방재 기반 확충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정보 활용기반 내실화
			문화재 자원관리 역량 강화
시대변화를 읽는 문화재행정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합리화	
		문화재 연구조직기반 활성화	
		문화재 보존활동 핵심가치 연구 강화	
		수중문화재 조사보존기반 강화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인력양성 교육 역량 강화		

표 44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추진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17~2021’ 연구내용

- 문화재청에서 이미 추진하는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 활용의 현황, 실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국단위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 등이 작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관한 모니터링,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활동은 다소 중첩되는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 현행 모니터링 체계는 보존적·구조설계적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활용 프로그램과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은 ‘활용 과정 속에서 활용대상 문화재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활용현장 안전관리), 그리고 문화재 향유층인 사람에게 전달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수집되는 정성적·정량적 데이터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보존적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데이터는 국민에게 문화재 활용의 당위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육성·지원

1) 개정이유

(1) 현장 실행 주체 확보 및 역량 강화

- 조선 궁궐이나 발굴현장 등 일부의 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 활용은 지역단체 등 민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는 궁궐문화재보다는 지역문화재활용에 더욱 중점을 두게 될 것이므로 민간의 역할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현장 실행 주체로서 활용 단체들을 육성·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활용 체계를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 지역문화재 활용은 문화재의 활용 가치와 함께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의 역량이 성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문화재 활용을 지역 단체와 그 단체를 구성원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육성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실행 주체 확보와 역량 강화는 전문인력 양성 체계와 현장 활용 주체로서 활용 단체 육성·지원 체계를 확보할 때 현실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력 양성과 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 문화재 활용 주체 확보와 역량 강화는 문화재의 특성화 활용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장에 맡겨둘 수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필수적으로 사회적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역량을 갖춘 활용 주체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간 활용의 불균형

-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내 현장 실행 주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실행 주체가 있다 하더라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활용 역량을 갖춘 인력이 미확보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문화소외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에도 활용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 등 대도시의 전문역량이 효과적으로 지역역량 강화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등 지원단체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직업의 전문직군화 기반 마련

- 활용의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육성·지원은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기 위함이다.
- 문화재 활용단체에서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활용사’ 등의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호명되지 않은 것은 아직 직업의 정착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화재 활용 전문기업과 지역단체가 등장하는 등, 활용사업시장이 초기 형성단계를 띄고 있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직업 전문화가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재 활용사업 확대에 따른 활용 주체들의 역량 강화 필요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예산이 점차 확대되어 공궐활용사업과 대등한 규모로 성장하였다. 향후에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 공궐활용사업보다 경제적 확장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규모의 활용단체와 인력에서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 문화재 활용사업의 예산규모 확대에도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인력 양성과 단체 육성이 필요하다.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궐활용 예산	74.5억	77.7억	115.4억	111억	122억
지역문화재활용 예산	30.3억	41.7억	72.9억	111억	122억

표 45 공궐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비교

(2) 문화재 활용 단체의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필요

- 기존 문화재 활용단체의 대다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단체를 운영하며,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활용 사업을 연구·기획·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과 시간적·비용적 투자는 상당한 수준이나, 현재 문화재청 등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예산으로는 다소 부족하여 양질의 사업을 꾸려나가기 어렵다.
- 즉, 문화재 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재 활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단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체의 입장로서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주요 사업의 한 분야정도로만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은 활용사업의 질적 성장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활용단체의 자생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활용예산을 보다 넉넉히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활용단체 운영 노하우 공유와 함께, 단체 운영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점들에 대해서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은 어느정도의 시장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활용단체가 문화재 활용사업만을 전문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활용사업을 안정화·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예산규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대가기준으로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내 문화재 활용단체 부족

-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통점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 대도시 및 인근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있다는 점이다.
- 바꾸어 말하면, 문화재 활용단체와 전문인력의 대다수가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소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활용단체와 전문인력의 숫자는 모자르며 그만큼 소도시 거주민과 문화재는 문화재 활용에 대한 혜택·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 문화유산 활용단체(민간단체)의 활용업무 사례

1) 사업계획단계

- 활용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의, 가치 등의 분석과 습득
- 당해 관계자 간 아이디어 회의
- 역사적 가치 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핵심 주제 수립
- 핵심 주제와 관련한 표현 요소(스토리텔링, 교육, 연극, 게임 등 각종 부가요소) 구상
- 각종 표현 요소의 가상 시뮬레이션 과정

2) 문화재 활용 사업 진행 전

- 기획 관련 :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역할별 프로그램 운영 시나리오 작성 등
- 디자인과 홍보 관련 :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포스터 작업, 리플렛 작업, 전체 현수막, 세부 프로그램 현수막, 배너 등 작업과 편집 등
- 운영 관련 : 물품 준비, 기념품 준비, 천재지변 및 부상 등에 대처하는 비상대책 마련,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여행자 보험 가입, 장소 섭외, 참가자 모객, 문의전화 응대, 현장 시뮬레이션 등

3) 문화재 활용 사업 진행 중

- 프로그램 진행 : 운영인력 지휘, 필요물품과 홍보배너 등 설치·철거, 사진촬영, 안전관리

4) 문화재 활용 사업 진행 후

- 참가자 및 예비참가자에 대한 안내사항 : 보도자료 작성, 카페에 사진 업로드
- 지자체 및 문화재청 보고사항 관련 : 행사 사진첩 정리 후 평가관리 단체에 결과보고서 제출,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사업 정산 보고서 작성_품의서, 지출 결의서 작성 및 영수증 정리 등

5) 업무 분담을 위한 최소 인력

-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특징과 의의에 대해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
 - 역사적 특징 등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기획력이 있는 자
 - 포토샵, 일러스트레이션 등 편집디자이너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
 - 문화유산 관계자 및 지자체 등에 대한 운영 능력과 협상 능력이 갖추어진 자
 -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자
- 위와 같이 필요한 업무량을 안정적, 창의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가기준 마련 등이 요구됨.

(4) 활용 인력의 역량 강화 필요

- 문화재 보존·활용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나, 공무원이 현장에서 문화재 활용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단체나 활용 기획자 등 현장 문화재 활용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시급한 일이다.
-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문화재관련학과(문화재학과 등)에 진학을 하거나 활용 수행단체에 입사, 자원봉사를 하는 것 말고는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게다가 문화재관련학과는 보존처리분야와 발굴분야에 특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활용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많지 않다.
-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주관 단체는 관련업계 및 전공자 출신이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 활용’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 또는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체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허약한 수준에 있다.
- 이러한 상태에서 활용 인력은 단체들의 자체교육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들은 실무에 적응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적응이 어려워 이탈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활용단체는 대부분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지하지 못하여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 이처럼 활용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면 관련업계 취업 및 창업자의 수는 늘어나기 어려우며, 시장성 면에서도 경색될 것이다.
- 이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활용에 대한 실무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단체 육성의 기준이 되는 자격 및 인증부여제도 부재

- 인력 양성에 관한 문제
 - 활용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싶은 인력이 개인역량강화를 위해 정보를 교류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 프로그램 이수제도, 자격증 신설 제도 등을 검토하여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 본고에서는 관련 자격증의 신설 방안은 짧은 기간 내에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어려우므로 일자리 창출 등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정 교육을 이수하는 형태의 제도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향후, 문화재 활용사업이 하나의 신성장동력을 갖춘 산업으로서 발전할 때, 양질의 인력 양성 차원에서 자격증 제도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 전문단체 육성에 관한 문제

-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함께 전문단체의 육성에 관한 문제도 필히 다루어야 할 상황이나, 현재로서는 단체 육성체계도 전무한 상황이다.
- 특히,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특화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들은 기업운영과 육성 등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활용단체가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는 전문단체 육성에 관한 실질적 혜택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발전방안으로서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인증 정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주요 개정 내용

(1) 문화재활용을 위한 교육지원 및 협력 근거 마련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량을 갖춘 활용 주체를 확보한다.

(2) 지역 문화재 활용단체 창업·운영·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문화재 활용과 보존에 뜻이 있으나 어떻게 활용,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단체와 단체수립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운영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인증 정책 실시

- 문화재 관련 영역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대부분이 관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기존 관에서만 추진하였던 문화재 관리 영역을 민간에 공개하여, 관의 인력이 투입되었던 인력을 민간의 일자리로써 변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이때, 문화재라는 것은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문제라는 특수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활용단체 모두가 문화재를 쉽게 다루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이나 업력, 인력구성 등이 갖추어진 활용단체에게 문화재의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등급을 나누고 이들에게 문화재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즉, 문화재를 보존, 활용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 ‘문화재형 사회적기업’과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활용단체에게 세제·융자·경영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하여 기업환경을 향상시킨다.
- 기업의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 각종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 문화재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업력이나 인력구성, 성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인증한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문화재 활용 활동반경(일상관리활동과 경미한 문화재수리활동을 접목한 활용방안 등)을 넓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에게는 문화재 위탁관리 등의 권한을 줄 수 있다.

4)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00조 (문화재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p> <p>① _____은 문화재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p> <p>② _____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5) 기대효과

(1) 문화재 활용 시장의 활성화

-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양성 등으로 양질의 활용단체가 육성되고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 활용 시장의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문화재 체험 만족도 향상 및 보존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특히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해당 단체의 활동반경을 넓혀줌으로써 기존 관에서 주도하였던 문화재 보존과 활용사업을 수익형 사업모델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재 활용사’가 새로운 전문직업군으로 성장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은 지역단체 생성 및 육성, 지역 인재의 채용 등

지역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3) 문화재 활용의 질적 향상

전문인력 양성과 단체 지원·육성을 통해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획과 사업 구성, 실행 등 모든 과정에서 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문화재 활용 체계를 갖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문화재 활용의 다양화와 특성화

역량을 갖춘 지역 문화재 활용 주체를 확보한다는 것은 각 지역이 갖는 특성을 살려 문화재 활용을 다채롭게 하고, 나아가서 문화재를 지역 자원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에 대한 보충자료

○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자료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2017.10.18. 국정과제 발표)

· 새정부 사회적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제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세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수를 1/2이상으로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모색,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정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목표로 두었고, 2017년 10월 18일에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조는 ①민간·지자체 역할 강화, ②정책대상 확대, ③맞춤형·간접 지원, ④컨트롤 타워 구축의 4가지이며, 사회적경제 3법 입법 후 5년간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해당 정책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활동 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 실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 활성화’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59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10.18.)

- 문화재청의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항
 - 전문적인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 사례 전파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인건비, 사업개발비), 행정 등 지원 강화
 -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공사업, 연구용역 위탁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 강화

-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자치단체의 과제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지원 · 문화재 사회적기업의 가치 창출에 대한 이해와 연구지원 · 문화재 전문집단과의 연계 및 활용단체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발굴육성 ·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 내일카드, 문화바우처카드와 같은 제도와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 사회적기업 금융지원기관 운영 · 방과후교실 등 문화재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제도 마련 및 적극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확보 · 문화재청 지정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확립, 체계적 선정 및 지원 ·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구성 및 적극적 활용, 관련기관 활용 협조 · 문화재관련 기업 네트워크 운영지원으로 네트워크,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내일카드, 문화바우처카드와 같은 제도를 참조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연계 · 자격증, 전문성, 인증확보 등으로 실력있는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분야 사업에 문화재청 지정 사회적기업 활용 · 문화재청의 활용사업 지원 ·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유산(비지정문화재 등), 독립박물관 등의 위탁관리 등에 문화재청 지정 사회적기업의 활용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표 48 문화재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등의 과제

- 문화재 분야 주요 일자리와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 문화재 분야 주요 일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은데, 이때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문화재를 통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 우선할 수 있는 역할,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화재 위탁경영’ 활동은 해외 내셔널 트러스트의 사례와 같이 문화재 보존과 활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위탁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홀리데이 코티지’ 고택숙박사업을 하는 문화유산만 약 500여 곳에 이른다. 이 500여 곳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상시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위탁관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위탁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시 심사숙고해

야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위탁은 ‘①적정수준의 업력과 인력을 갖춘 활용단체’가 ‘②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이라는 공익적 이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 위탁의 조건을 볼 때, 적정수준의 기업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만이 위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재 위탁관리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은 민과 관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순수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 운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 공개하여야만 한다.
- 이밖에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은 문화재를 직접 다루는 수준에 따라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만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고도지구·역사지구 지정과 종합경관정비활동, 문화재를 직접 다루어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용활동(군불때기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기존 문화유산 관광,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이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마을기업, 예술공연단체 등 다양한 민간주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여도 좋을 것이다.

구분	탐색	제조·생산	유통	소비
지정, 발굴 조사연구와 기록	조사대상 발굴 자료조사 (생활사, 지역 문서, 북한 문화재, 국외 반출 문화재)	지정조사 분석 자원조사 분석 문화재 수집	발굴문화재상품화	문화재실측기록 조사보고서DB 조사기록디지털화
보존관리	문화재재난관리 문화재상설모니터링(일반, 전문, 긴급) 문화재정기조사	문화재보수자재(목재, 기와, 안료 등) 생산 문화재보수자재관리 (구재 수집 및 관리) 문화재수리시공 문화재보존처리 문화재안전관리 문화재시공감리 예방관리(상시관리, 경미수리)	문화재 보수자재 판매 예방관리(돌봄회원제)	문화재유지관리

구분	탐색	제조·생산	유통	소비
활용 콘텐츠	원천소스 발굴 활용 기획 교육 프로그램 기획 관광프로그램 기획 해설사 교육 활용기획교육	콘텐츠 생산 콘텐츠 디자인 문화재상품화 문화유산기술(CT) 개발 고도·역사지구 개발 문화재 테마파크 개발 (문화유산 마을 조성 등)	문화재상품 판매 문화재홍보 문화유산산업 프로그램 인증 문화재위탁관리	문화재 전시·관람 문화유산교육 (찾아가는 교육) 문화유산체험 문화유산 해설 디지털 아카이브 문화재마케팅 (문화재 콘서트 등) 문화유산 관광

표 49 문화재 분야 주요 일자리 목록

○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등 단체 인증제도 관련 유사입법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생략

시행령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의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등이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38조(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 인증의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우수물류기업 또는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라 한다)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물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 생략

③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자금 지원
2.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⑤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른 자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자금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3.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을 말한다.

가. 신약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나.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계 제약기업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

구개발, 연구·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④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단체 인증제도의 시사점

- 문화재 활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문화재 활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관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므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법적 규율도 자격제도 못지않게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규율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증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제도운영 방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인증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문화재 활용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

· 문화재 활용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를 문화재활용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 또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공통적용되는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례 :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BI-NET(중소벤처기업부)

- 문화재 활용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해제, 전문인력 교육 실시방안 등 육성·양성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법령 및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 해당 사례에서의 창업보육 시스템을 문화재 활용사업에 접목시켜 활용인력과 단체를 양성, 전문화하여 양질의 활용 활동과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내의 창업보육사업은 1990년에 수립된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지원계획」 과 함께 1991년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업무 운용 준칙」 의 고시로 창업보육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입주방식의 창업보육사업은 1993년에 설립된 (주)중부산업컨설팅의 영동 창업보육센터가 최초로 운영을 시작,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당시 심각한 실업사태와 고용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되며 본격 확산. 2005년 산자부 등 유사·중복 창업보육사업이 통합,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되었다.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수는 1998년까지 30개였으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49개(전체지정된 센터의 62%)의 창업보육센터가 신규 지정되었을 정도로 건립이 본격 추진되었다.

- 2002년부터는 신규 건립 지원보다 예비 및 신규창업기업의 입주 수요가 많은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보육실 확장 건립비 위주로 지원하였다. 2005년과 2012년 유사·중복 창업보육센터의 통합 등을 통해 개별 창업보육센터의 규모 확대와 창업보육센터 운영매뉴얼 개발, 창업보육매니저의 전문성 강

화, 창업 초기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업 수요에 따른 BI별 특성화 유도 등 창업보육센터의 질적 고도화는 물론 보육인프라 및 연계지원 강화 등을 통해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
창업보육센터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제반 창업 여건이 취약한 창업초기기업 등에 사업장 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자금지원 등 종합 지원
입주기업지원	기술, 경영, 행정, 자금부문을 보육단계별로 지원.(창업단계, 기술개발단계, 상품화단계, 사업화단계)
BI 건립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BI)의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 경영 및 지속적 성장 추진
BI 운영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적인 운영비, 매니저 인건비, 성과보상금, 경영컨설팅비, 원스톱상담창구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지원실적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BI 보육역량강화사업	창업보육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의 역량별 맞춤형보육강화의 액셀러레이터 전환을 통한 선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역량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제도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
창업전문인력교육	창업보육매니저, 창업보육센터장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워크숍으로 창업보육센터 우수 운영사례 공유

표 57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BI-NET 주요 사업내용

구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합계
창업보육센터 수	150	71	94	62	377
비중(%)	39.8	18.8	24.9	16.5	100

표 58 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년도	입주기업 수(개)	매출액(억원)	고용인원(명)
1999	-	1,005	4,221
2000	2,188	3,645	6,422
2002	3,717	8,295	18,697
2004	3,972	12,023	19,387
2006	4,330	20,025	22,538

2008	4,532	23,204	22,982
2010	4,818(6,289)	24,807	21,113
2012	5,123(6,173)	16,592	17,276
2013	5,511(7,323)	16,393	16,665

표 59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매출액, 고용인원 현황('99~'13)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대학	연구소	지자체	중진공	기타	총계
1998	건립	6,300	0	0	0	0	6,300
	운영	-	-	-	-	-	-
	계	6,300	0	0	0	0	6,300
2000	건립	44,333	2,435	0	0	0	46,768
	운영	-	-	-	-	-	-
	계	44,333	2,435	0	0	0	46,768
2002	건립	17,939	2,100	600	-	-	20,639
	운영	6,012	394	-	-	22	6,428
	계	23,951	2,494	600	-	22	27,067
2004	건립	16,392	1,100	-	-	1,700	19,192
	운영	7,087	514	25	-	60	7,686
	계	23,479	1,614	25	-	1,760	26,878
2006	건립	5,500	-	-	1,500	2,000	9,000
	운영	6,768	402	53	401	175	7,800
	계	12,268	402	53	1,901	2,175	16,800
2008	건립	8,520	-	-	-	1,480	10,000
	운영	6,451	500	110	287	153	7,500
	계	14,971	500	110	287	1,633	17,500
2010	건립	20,528	1,500	-	-	1,100	23,128
	운영	7,843	580	260	220	330	9,233
	계	28,371	2,080	260	220	1,430	32,361
2012	건립	11,820	1,440	-	-	1,960	15,220
	운영	8,768	665	310	175	1,252	11,170
	사업관리비	-	-	-	-	-	70
	계	20,588	2,105	310	175	3,212	26,460
2014	건립	2,898	400	400	-	2,251	1,800
	운영	8,270	875	470	190	1,972	11,732

	사업관리비	-	-	-	-	-	60
	계	10,086	1,275	870	190	4,223	13,592

표 60 창업보육사업 운영주체별 창업보육 예산현황

연번	기업명	입주/졸업여부	졸업형태
1	(주)나이코	입주기업	
2	아이원스	입주기업	
3	(주)골프존	졸업기업	만기졸업
4	(주)나노신소재	졸업기업	만기졸업
5	(주)네오팜	졸업기업	만기졸업
6	(주)대경기계기술	졸업기업	만기졸업
7	(주)디엔에이링크	졸업기업	만기졸업
8	(주)디엔에프	졸업기업	만기졸업
9	(주)디지털옵틱	졸업기업	만기졸업
10	(주)바이로메드	졸업기업	만기졸업
11	(주)바이오니아	졸업기업	만기졸업
12	(주)빛과전자	졸업기업	만기졸업
13	(주)씨이랩	졸업기업	조기졸업
14	(주)알에프세미	졸업기업	만기졸업
15	어보브반도체(주)	졸업기업	만기졸업
16	(주)엠피씨	졸업기업	만기졸업
17	(주)이엔쓰리	졸업기업	만기졸업
18	(주)인텍플러스	졸업기업	만기졸업
19	크루셀텍(주)	졸업기업	만기졸업
20	(주)툴젠	졸업기업	만기졸업
21	(주)파나진	졸업기업	만기졸업
22	(주)프렉코	졸업기업	만기졸업
23	(주)하이소닉	졸업기업	만기졸업
24	(주)한빛소프트	졸업기업	만기졸업
25	(주)SY이노베이션	졸업기업	

표 61 입주기업, 졸업기업 중 코스닥 상장기업 현황(한국창업보육백서 2016)

○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 관련 사례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해당 사례는 취업준비생에게 문화재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면서도 특정기간과 내용의 교육을 전달, 이수시켜 문화재 활용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수제’와 유사한 내용이다.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저소득층, 중·장년층) 및 최근 지속되고 있는 청년 고용난의 해소를 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교육, 취업알선, 근속유도를 이끌어내는 사업이다.

- 해당 프로그램은 2016년 기준 총 30만명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특정계층 및 장기미취업자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측면, 능률적 측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력한 취업자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희망자에게 생소하면서도 연관된 직업을 찾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문화재 활용 관련학과 및 관심도가 높은 사람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재 활용사라는 직업을 알선할 수 있다.

- 또한 프로그램 교육 이수가 자격증 취득보다 쉬우므로 문화재 활용사 취업희망자에게는 더욱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2016년 사례		
사업명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중·장년)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대상		저소득층	중·장년층	청년층
목표(C)		130,000명	40,000명	130,000명
예산	참여자수당 (A)	109,745백만원	24,036백만원	78,117백만원
	위탁사업비 (B)	7,126백만원	21,877백만원	68,979백만원
1인당 투입비용 (A+B)/(C)		899,007원	1,147,825원	1,131,507원
법적 근거		청년고용특별법 제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시) 제4조 제5조, 제5조제6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43조의 2 등		
도입배경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 증대, 근로 빈곤층에 대한 기존 제도의 고용지원 미흡,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 근로 빈곤층에 대한 외국의 정책 흐름		
중점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서비스 강화, 적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직업 탐색 등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장년층 일자리 특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등 청년층을 분리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청년일자리 특화
사업내용		취업희망자는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나누어 관리, 개별 역량과 경제적 사정 등을 검토하여 즉시취업가능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 직업상담 심리검사 등으로 직업의 방향을 찾고(1단계)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2단계) 취업 알선과 직업정보를 제공하며(3단계) 지속적인 근로를 유도함(사후관리)		

표 6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개요(2016년)

구분	사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후관리	
생계급여수급자(1유형)	고용센터 접근성 높은 지역	즉시 취업 가능자	최소 2주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 동행면접 강화 구직기술·이력 서 컨설팅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현황 탈수급 관리 근속 유도
		2주 취업 가능성 판단	6주+예외적 4주 연장 단기문제해결·롤모델상담 직업-심리검사 (자존감·자기효능감 척도, 사회 적 바람직성척도, 일반정신건강척 도 등) EAP 연계 강화 취업애로요인(양육, 돌봄, 주거, 건강 등)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 계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 센터·자치단체 사례관리 회의 -취업애로요인별 특화 프로파일 링 실시 집단상담프로그램 원칙 취업애로요인 해소방안 포함 IAP 수립	6개월+2개월 내일배움카드 우선발급 청·장년 인턴 우선 연계 일학습 병행제 지원 확대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3개월 알선 서비스 연장 지원 동행면접 원칙 구직기술·이력 서 컨설팅 모의면접 강화 지역일자리센터 연계 구인 발 굴 지역내 틈새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현황 탈수급 관리 근속 유도
	고용센터 접근성 낮은 지역 사전단계 미실시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인 1조 밀착관리 → 주1회 대면상담 필수(1단계),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과 MOU 등 지청(센터)별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종교단체, 기타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탐색 및 연계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1단계 기간 연장(4주) 및 참여 유예 활성화	근로능력 미약자 → 자치단체 이관(자활근로 배치)			
		자활역량평가 실시 후 의뢰 → 즉시 취업가능자 프로세스 동일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직접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자치단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 립 등 전담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기초훈련 상담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 일자 리 인턴지원	지역일자리지원 센터 연계 알 선 동행면접 실시
	고용센터	1단계 서비스 현황 공유 집단상담 지원 수당지급, 행정 업무 지원	직업훈련 적정 성 판단 내일배움카드 발급	알선 및 동행 면접 지원		
일반저소득층 및 특정계층(1 유형)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가·폴리텍기 능사, 내일배움 카드, 청·장년 인턴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동행면접	3개월 구직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중장년(2유 형)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가·폴리텍기 능사 내일배움 카드 장년인턴, 창업 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일반 청년(청년 패키지)	자가진단 취업 지원 유형에 대 해 자가진 단	1주(상담 2회 이상)~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가·폴리텍기 능사 내일배움 카드, 청년인 턴, 해외취업, 창업지원	3개월+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표 63 대상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요(2016년)

- [참고사항] ‘문화재 활용사’ 자격증 제도 검토에 관한 사례 : 박물관 및 미술관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제도 운영(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제도(이하 ‘학예사 자격제도’)는 국보·보물부터 해외에서 환수한 문화재(외규장각 의궤 등), 비지정문화재 및 중요미술품까지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다루는 학예연구사(이하 ‘학예사’)을 양성, 박물관·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 학예사는 문화유산을 다루어 수집·전시·교육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도 연구 조사와 보존처리 등 다양한 기법을 거쳐 원형보존 및 기록을 하는 직업으로, 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 활용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 문화재 활용사는 문화재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학예사와 마찬가지로 원형보존 및 훼손·도난방지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직업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인력화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 활용시장은 규모가 크지 못하여, 자격증 신설을 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 활용 관련 자격제도는 향후 활용 시장이 확대될 때 검토하여야 좋을 것이다.
 -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학예사 자격제도로 근로 인력이 전문화되어 소장유물 관리와 보존, 활용, 연구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자는 업무매뉴얼과 실무경험을 빠르게 습득함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보존·전시·교육·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실질적인 정규직업으로서 취업 가능한 정학예사 자격증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특히,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경력인정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대다수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는 작은 편으로 학예사 자격증 보유자 위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무자격자 및 준학예사 시험합격자 중 무경력자는 학예사 취업시장에 진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또한 정규 학예사로 인정받는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석사학위 취득 후 인정기관 재직 2년 이상인 자’여야 하는데,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렵고, 무자격자의 경력인정 박물관 취업도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국공립박물관 및 일부 대형 사립 박물관의 취업은 소수가 가능하나, 무자격자여도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학예사 자격증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게다가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의 숫자 자체가 소수이다.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는 연간 100여명 수준이다. 게다가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도 취업 후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인원 또한 매우 부족한 편이다.
- 준학예사 자격의 경우, 시험을 치르고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3급 정학예사보다 직급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준학예사 자격공부를 시도하지 않고 ‘석사학위 취득 후 인정기관 재직 2년 이상’의 방법을 통해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 방법은 관련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낮은 임급으로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학예사 취업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

전국 박물관 ¹⁰⁶⁾				전국 미술관 ¹⁰⁷⁾			
계	국공립(A)	사립	대학	계	국공립(B)	사립	대학
826	379	351	96	219	55	150	14

국공립 박물관미술관(A)+(B)	등록사립 박물관미술관 ¹⁰⁸⁾	등록대학 박물관미술관 ¹⁰⁹⁾
434	181	79

표 64 전국 박물관, 미술관 및 학예사 자격 경력인정대상기관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총계
수험인원(명)	883	887	1,102	1,285	1,122	5,279
합격자(명)	47	85	127	121	121	501

표 65 준학예사 수험인원과 합격자 현황(‘10~’14년도)

106) 2016. 1. 1 기준(201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07) 2016. 1. 1 기준(2016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08) 2017. 5. 기준
 109) 2017. 5. 기준
 110) 3급 정학예사 38인, 준학예사 2인

구분	‘13년도		‘14년		‘15년		총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신규취득자(명)	50	40 ¹¹⁰⁾	40 ¹¹¹⁾	40 ¹¹²⁾	39	46	255

표 66 학예사자격증 신규취득자 직무교육 대상자 현황(‘13~‘15년도)

-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1관당 10명 내외의 학예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시설 수가 더 많은 공·사립 및 대학부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1관당 1~4명이 근무하는 등 채용규모가 작은 실정이다.¹¹³⁾
-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는 대체로 규모가 작은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에 취업·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작은 곳은 수익 및 예산이 부족하여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 이처럼 학예사 자격제도는 학예인력의 전문화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문화재 활용사 자격제도 도입시에는 관련 자격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자격명칭	박물관 및 미술관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증 제도			
자격 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부여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 부여			
시행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4조			
자격요건	2급 취득후 인정기관 재직 7년 이상인 자	3급 취득후 인정기관 재직 5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취득자로서 인정기관 재직 1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취득자로서 인정기관 재직 2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재직 4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취득자로서 시험 합격 후 인정기관 재직 1년 이상인 자 전문학사학위취득자(3년~2년제)로서 인정기관 재직 2년(3년제)~3년(2년제) 이상인 자 인정기관 재직 5년

111) 3급 정학예사 33인, 준학예사 7인

112) 대상자 명단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내 공고되어있지 않으며, 모집예정인원만 40명으로 명기된다.

113) 박형미, 「박물관의 기능 변화에 따른 학예사 양성체계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30p

자격명칭	박물관 및 미술관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증 제도			
자격 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이상인 자
실무경력 요건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재직경력, 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박물관의 주요업무(연구, 전시 등 학예업무)경력자]			
실무경력 시기	학부졸업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			
실무경력기간 산정	상주근무(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근무기간 2년과 근무시간 4,000시간 이상 충족하여야 함			상주근무 및 근무기간 1년과 근무시간 1,000시간

표 67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요

시험명칭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시험	
시험제도 개요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 박물관·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시험제도를 마련	
수행직무	박물관 학예사, 미술관 학예사	
시험일정	1년에 1회 시행	
시험과목	공통과목	박물관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중 택1) / 각 40문항, 총 8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 외국어 과목은 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가능
	선택과목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문학사 중 택2(13개 과목) / 각 2문항, 총 4문항, 논술형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시간	1교시 전공과목(택2, 200분), 2교시 박물관학(40분), 3교시 외국어(택1, 40분)
응시수수료	30,000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표 68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개요

- 위의 사례처럼, 학예사 자격증은 실무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주고 있으나, 전국 1천여개 정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일자리 측면에서는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입장벽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현재 문화재 활용산업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전문 영리기업의 수는 전국 박물관의 숫자보다도 훨씬 적은 상황이나, 자격증

신설로 취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상황 속에서는 문화재 활용 자격증 제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유사입법례

○ 해외의 유사입법례

- 미국립공원청은 “위원회” 및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 의무를 부담하며,¹¹⁴⁾ 개인 혹은 단체는 이러한 자료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¹⁵⁾

○ 국내의 유사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 제정이유

최근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법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의 산학협력사업과, 인력의 양성 및 공동활용에 관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114) Preserve America Sec. 4(Improving Federal Agency Planning and Accountability) (d)

115) *Ibid.*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다. 각급 학교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

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부장관은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하도록 함(법 제21조).

바.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내지 제30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

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조문 참고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건설산업기본법	<p>제87조의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략></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①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② 계획의 내용 ③ 육성에 대한 지원 ④ 세부사항 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p> <p>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① 전문인력 양성 계획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 기관지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p> <p>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p>	① 전문인력 양성의무 ② 인력양성기관 지정 ③ 인력양성기관 지원 ④ 기관지정 해제 ⑤ 해제기준 위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p>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① 인력양성 계획, 정책 수립 추진 ② 기관지정, 예산지원 ③ 세부사항 위임

(3)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현행 전문인력양성 관련 법령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하였는가?
 -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 관련법령과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교육은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 게다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1항에는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명기되어, 문화재의 직접적인 보존활동 영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문화재 활용인력 양성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16년도 교육 관련 사업명	성격	예산 (백만원)	교육내용	비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보존, 관리	9,891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대학 운영	기술과학분야, 문화유산분야 단과대학 운영
전통문화전문과정 운영지원	보존, 관리, 교양	2,235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전통문화전문과정(직무교육, 관리와 보수교육, 국제문화유산관리교육, 수리기능교육, 문화재관련 교양교육)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보존, 발굴 성과조사	800	매장문화재조사 조사 수행능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매장문화재조사분야 전문교육(200백만원, 조사연구원 양성 등 교육)

표 70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주요 전문인력 양성사업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Ⅲ.4. 문화재 활용 지원조직 설치·운영

1) 개정 이유

(1) 활용 주체 간 협력망 구축을 통한 활용 활성화 및 수준 제고

- 각 지역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문화재 활용을 실행해오던 것에서 활용 주체 간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 수준 제고, 지역·단체 간 활용 수준 평준화, 장해요인에 공동 대응, 활용 프로그램 공동 개발, 단체 운영 방법 공유 등 실질적인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활용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가 모여 시행착오를 보완, 보다 나은 활용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정례 연구 모임이 갖추어져야 한다.
- 이러한 활용 주체들 간의 협력망으로서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는 문화재 활용이 저조한 지역의 활용 단체 설립을 촉진하여 전국적인 활용 활성화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현장 문화재 활용 지원 조직 확보

- 문화재 활용은 정책이나 행정에 더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보존과 활용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문화재의 특성상 특히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 따라서 문화재 활용사업 종사자간 교류와 연구 등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등의 조직이 필수적이다.
- 문화재 활용 주체로서 지역 단체들이 충분한 역량과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 지원 조직은 더욱 필요하며, 활용 지원에 더해 인력 양성 등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사업의 보완 검토를 위한 정례 모임의 부재

- 활용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여러 시행착오에 대해 논의 보완할 수 있는 자리는 1년에 수회 진행하는 워크숍이 전부이며, 시간관계상 심도있는 논의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지원조직의 운영 등으로 활용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정보 교류 등으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행정기관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활용

- 현장 지원 조직을 갖추지 못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에 맞춰 사업비를 지원할 뿐, 지역에서의 문화재 활용은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문화재 활용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활용 주체들의 역량 강화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에 있다.

3) 주요 개정 내용

(1) 활용 지원 조직 육성·지원 규정 마련

-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등 활용 지원 조직을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된 자원을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도록 활용 지원 조직 내부 규정 등을 적절히 갖추도록 한다.

4)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p>제00조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p> <p>① _____은 문화재활용을 위한 다음 각</p>

현행	개정안
	<p><u>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활용 지원</p> <p>2.</p> <p>3.</p> <p>② 지원센터에는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③ 문화재청은 연합회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p>

5) 기대효과

(1) 지역문화재 활용수준 향상과 현장주체들의 역량 강화

-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현장에서의 문화재 활용 과정에 함께하며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을 살린 문화재 활용으로 그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현장 실행 주체들은 점진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 이러한 문화재 활용 지원은 문화재 활용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 게다가 현장 주체들의 역량 강화는 문화재 활용 환경여건의 개선됨을 의미하며, 점진적으로 문화재 활용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2) 현장중심 활용 지원 역할 수행으로 활용효과 증진과 정책 집행 체계화

-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현장

실행 기구에 해당하는 활용단체들 사이에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 및 통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행정적 측면에서 활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얻게 해준다.

- 활용단체들의 현장 활용 지원과 함께 활용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과 개선을 위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활용단체 간 원활한 의사 소통에 기여할 수 있고, 그만큼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다.

(3) 활용단체 상호 간 소통을 통한 현실적 문제 해소

- 정책이나 행정 관점에서는 알기 어려운 것으로 활용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관해 같은 위치에 있는 주체들 간에 서로 소통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이를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에 대한 보충자료

-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례 :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24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해져있다.(소상공인법 시행규칙 제2조~제7조)

- 연합회의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라 ①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②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③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④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이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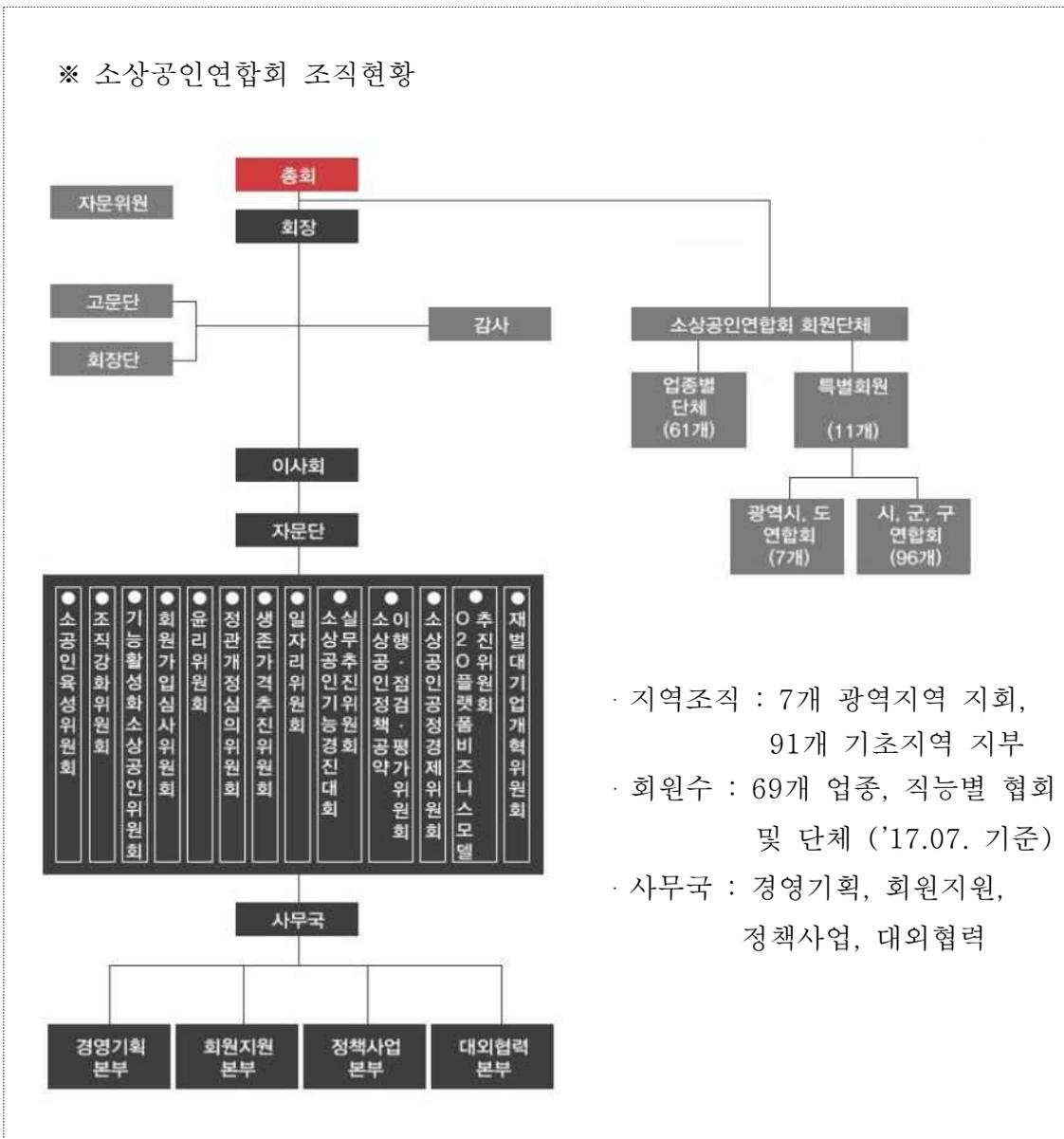
- 이때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행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 「소상공인법」 제8조~16조에는 창업·경영안정·구조 고도화·조직화 및 협업화·재해재난 피해·폐업·고용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문화유산활용연합회는 현재의 사업규모로 보아 소상공인 규모의 소규모연합회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와 교류 등을 통한 수익창출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 또한 소상공인 연합회와 같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유사한 성격의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성격과 추진 방향 등을 참고하여 운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조직현황



(2) 유사입법례

○ 국내의 유사입법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법 제1조 및 제2조)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한다.

나.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법 제5조)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 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 정부의 출연·보조(법 제14조)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한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법 제2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조문 참고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①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② 계획의 내용 ③ 육성에 대한 지원 ④ 세부사항 위임
과학기술기 본법	<p>제30조의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연수 지원 5.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p> <p>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p> <p>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① 재단설립 근거 ② 법인성 ③ - ④ 재단 사무 ⑤ 설립, 운영 경비 출연 ⑥ 국유재산 무상 양여 ⑦ 민법 적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p>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시행일 2019.2.4: 제1항제5호(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복원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p>	① 재단설립 근거 ② 법인성 ③ - ④ 국가의 출연 및 보조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해당 법령으로 정부가 문화유산활용연합회를 지원하게 될 때, 지원받은 조직은 정부의 종속적인 관계로서, 또한 특정 주요 회원사만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자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활용사업은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지속되지는 않겠는가?
 - 문화유산활용연합회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창설, 운영되어야만 한다. 연합회는 정부와 주요 회원사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활동반경 역시 독립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
 - 연합회는 감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내부 규칙을 정해야 하고, 활용단체간 기술적 공유와 공동연구개발활동, 창업 및 기타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활동 등에 집중해야 한다.

5.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

1) 개정이유

(1)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활용

- 바람직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지역사회가 문화재의 주인으로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기관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¹¹⁶⁾
-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재 활용은 지역과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활용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가 개입될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에 따른 유형에 따른 일률적인 활용에서 그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률적 활용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문화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활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내용을 내·외국인에 전달할 수 있다.
- 문화재 활용사업이 여타 관광사업과 다른 점은, 문화재를 소재로만 다루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활용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는 각각 「내셔널 트러스트 특별법(the National Trust Act, 영국 1907년 제정)」 과 「문화재 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미국 1966년 제정)」 의 법적, 정책적 지원 하에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연방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원활히 수행,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2)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명확화

- 원칙적으로는 각 주체의 성격에 맞추어 정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 및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과 현장 지원 및 일부 사업 직접 실행, 민간단체 등 현장 주체는 사업 실행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116) 류호철, 2017, 「문화재 활용, 새로운 정책 방향」, 50~51p 참조.

- 정부와 시·도, 시·군·구 등이 해야 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문화재 활용 정책이 현장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 수립과 집행 모두 문화재청이 주관

- 현재 활용사업은 정책 수립과 집행 모두 문화재청이 맡고 있는 관 주도형 형태를 띠고 있다. 문화재의 활용이라는 사업 특성상 문화재청이 활용 수행업무를 직접 추진할 때 원형보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관 주도형 활용은 활용 방법의 획일화와 지역 주민 소외, 민간의 창의성 배제 등 활용 활성화에 역행할 것이다.

(2)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혼선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9조(준용규정), 제72조(경비부담) 등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외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활용 대상을 지정·등록문화재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시·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활용 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거부하는 일도 있다.

3) 주요 개정 내용

(1) 문화재청과 지자체 민간조직의 역할 및 관계를 구체화

- 민과의 공통 업무로서 문화재 활용문화재 대상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 지정

- 문화재청의 역할 구체화 : 상향식 활용 정책 결정 및 지원 병행

(2) 지역 단체와의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운영 내실화

- 지방 문화원들 중에는 사실상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문화원들이 많고, 인적 구성도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런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 문화재 보전과 활용 주체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 또는 부담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활용에도 경비를 보조 또는 부담할 수 있다.

(4) 문화재청의 역할 부여

- 의무조항

- 문화재청은 주기적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 문화재청은 주요 활용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은 활용사업 모니터링과 활용현장 안전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한다.

- 임의조항

- 문화재청은 이 외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상향식 활용 정책 결정 및 지원 병행

- 문화재청이 사업을 결정하고 지역에서는 그에 지원하는 하향식 사업 결정과 함께 상향식 사업 결정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민간이 해당 지역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법을 개발하여 지원 신청하고, 문화재청은 심사 후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 결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를 실현하고 해당 문화재에 더욱 적합한 활용을 현실화할 수 있다.¹¹⁷⁾

117) 류호철, 2017, 「문화재 활용, 새로운 정책 방향」, 51p 참조.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여

○ 의무조항 또는 임의조항

- 시·도, 시·군·구는 정부의 문화재 활용 계획에 맞추어 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재 활용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시·도, 시·군·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도,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역 단체와의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운영 내실화

- 지역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 문화원, 문화재동호회, 민간 보전단체 등이 그런 단체들이다. 지방문화원들 중에는 사실상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문화원들이 많고, 인적 구성도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런 조직을 개편하고 지역 문화재 보전과 활용 주체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지방문화원 관계자들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에 밝은 인사들이 많다.¹¹⁸⁾

○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활용에 필요한 경비 보조 또는 부담

-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이외에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활용에도 경비를 보조 또는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4)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00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118) 류호철, 2017, 「문화재 활용, 새로운 정책 방향」, 51p 참조.

현행	개정안
	<p>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문화재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활용 촉진사업 2. 문화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문화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단체의 육성 <p>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문화재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p>

5) 기대효과

(1) 역할 분담으로 문화재 활용 효과 극대화

-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은 지역과 민간의 창의성·자율성을 존중하여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화재 보전·활용 방향이 될 수 있다.

- 또한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 활용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성화된 활용을 시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화재 활용이 훨씬 풍부해지고 다채로워질 수 있다.

(2) 문화재청과 시·도, 시·군·구 간 역할에 관한 혼란 해소

- 문화재청과 시·도, 시·군·구 등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등 역할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
- 주체 간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각 주체가 해당하는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활용 효과와 그에 관한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에 대한 보충자료

- 미국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도시재생 사례 속에서의 정부와 시의 역할
 - 미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지역 곳곳에 입지한 역사적인 건물들의 멸실을 막기 위해서 지역 보존 및 활용활동의 하나로 ‘메인스트리트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민 스스로가 역사적 환경 및 건조물을 보존하고, 커뮤니티를 보존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앞서 소개한 ‘마켓&옥타비아지구 역사자원 보존계획’ 등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 메인스트리트 아메리카 역사도시재생 활동을 수행할 때 정부와 시는 민간 추진단체의 사업계획을 존중하고,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지원에 집중한다. 지역 주민과 단체가 주체가 되어 역사도시재생과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이룸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강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생태계가 자연스레 구축된다.
 - 이때,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정적 예산을 우수한 사업계획이 세워진 곳에 우선 분배되도록 하는 경쟁방식을 채택하였고, 시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따라 예산을 분배하는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의 기술적 지원은 각 주정부의 법령에 따른 제도적 연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시의

기술적 지원은 지역 기업의 참여 또는 기부, 시정부의 재원 등을 이용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와 시의 역할		일리노이 주(정부)	보스톤 시(지자체)
행정적 운영 시스템	상위 연계조직 연계사업	총괄 독립적 운영 및 제휴를 통한 사업 추진	상위조직 관할 운영 및 이해주체간 조정식 활동 추진
프로그램 지원 체계 특성	재정지원	경쟁방식	심사방식
	기술지원	제도적 연계를 통한 지원	시정부 재원 및 기업 기부를 통한 지원

표 75 미국 메인스트리트 아메리카 프로그램에서의 정부와 시의 역할 사례
(출처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국민신탁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015.11.)

(2) 유사입법례

○ 해외의 유사입법례

-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은 “국가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재와 그 저장 기술(이하 "문화재 등"이라 한다)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재 등에 관하여 복구 방재 대책, 공개 등에 대한 지원 추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⁹⁾
- 더불어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4조는 “각 지역의 문화 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 전시 등의 지원, 지역 고유의 전통 예능 및 민속 예능(지역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민속 예능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지역”에 초점을 맞춘 국가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 국내의 유사 입법례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 제정이유

119)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3조(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법 제6조)

국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회의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둠.

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법 제10조)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두고**, 학교·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학술연구 및 조사, 교원의 연수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조문 참고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u> ②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u>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문인력활용 ② 지원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2.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육성사업 3.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사업 ③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 등 그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의 지자체 지원 ② - ④ 정부의 협의회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① 정부의 시책마련 의무 ② 지자체의 시책마련 의무 ③ 정부와 지자체의 지

<p>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정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원의무</p>
---	------------

(3)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문화재 활용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법령은, 활용 영역의 우수한 점을 찾아 뛰어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인식되지 않는지, 또는 활용사업을 영위하는 특정기업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가?

- 문화재 활용사업의 국가와 지자체가 갖는 지원 법령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재 활용의 촉진을 지원하는 근거’로서 작용되어야 한다. 특정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보존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획·추진한다면 지원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원은 특정 지원을 통한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역사적 가치 증진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해당 법령의 추진으로 문화재 활용의 국가·지자체 역할이 규정되었을 때, 오히려 현행의 ‘관 주도형 활용’이라는 활용의 방향성도 더욱 공고화되지는 않는가?

- 현재 문화재 관련 분야는 다른 문화예술과 산업분야와는 달리,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국·미국 등과 같이 시민의 손으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내셔널 트러스트 활동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적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관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 해당 법령의 취지가 관의 역할을 최소화하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최대화하는 데에 있지만, 관의 보존적 안전모니터링이나 유형별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해석결과에 따라 활용사업이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화재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지자체에서는 보존관리적 차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재 보존은 활용이 동반할 때 더욱 효율적인 보존이 가능하였음은 국내외 사례에서 여럿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활용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문화재 활용의 확대를 가능케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 적극 참여유도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민간활동에 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해당 법령은 문화재 활용사업을 보다 적극적인 접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로서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활용 활성화의 단계별로 더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의 역할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

1) 개정이유

(1) 이미 시행 중인 문화재 교육 지원사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 단체 지원을 통한 학교 연계 문화재 교육 등을 이미 시행중이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2) 문화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 학교교육과 시민교육 등 문화재 교육에 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문화재 교육은 장기적으로 문화재에 관한 인식 수준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존·활용 기반 강화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여 문화재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3) 역사·문화 관련 현장 학교교육의 체계화에 대한 고민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역사교사·교수 등이 나름의 방식으로 현장답사와 학교교육을 접목시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역사문화 현장학습모델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가 수능 시험 준비에 주된 목표를 두었고, 대학교가 취업준비에 실질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단체의 주도로 역사교사·교수와 협력·지원한 형태의 현장 학교교육 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문화유산 학교교육 확대와 수준 향상

- 초·중·고교 문화재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역사교육·문화교육 등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문화재 교육 담당자 양성이 필수적이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초·중·고교에서의 문화재 교육에서 나아가 대학에서도 문화재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이미 성인으로, 상대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문화재의 가치를 공유할 기회를 갖기 쉽고, 오래지 않아 자녀 교육을 담당할 예비 부모라는 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은 그 중요성이 크다.

참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 신문 읽기 강의 지원 사업’

(5) 문화재 시민교육 확산과 체계화

-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은 외형에 치중한 관광 수준에서 벗어나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활용에 필수적인 과정이나, 조선 궁궐에서의 강연 등 일부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다. 문화재 시민교육을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목 개발,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며, 이것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실현할 수 있다.

(6) 국민의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성

-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화재 활용을 문화재 보존과 상충된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사건은 ‘궁 스테이’ 추진 실패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에게 문화재 활용이 보존효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교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 문화재 활용의 효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하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사업에 활동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7) 지역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성

-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불편함과 함께 물질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고도지역 주민과 문화재 인접 거주 주민의 경우가 그러하다.
- 이때 지역 주민 대상의 교육으로 문화재 활용의 당위성과 경제적 이익, 향후 미래관광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여, 문화재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전통한옥숙박과 비슷한 고택·고궁 숙박은 해외 선진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활용 방식인데, 문화재 보존 면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와 같은 문화재 활용 사업을 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민의 인식이 변화되면 활용사업의 추진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 국내에서도 전통한옥문화유산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국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낙안읍성 내에 있는 전통가옥은 숙박시설로 인기가 높으며, 해당 지역의 연계관광(낙안읍성·순천만·송광사 등)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효과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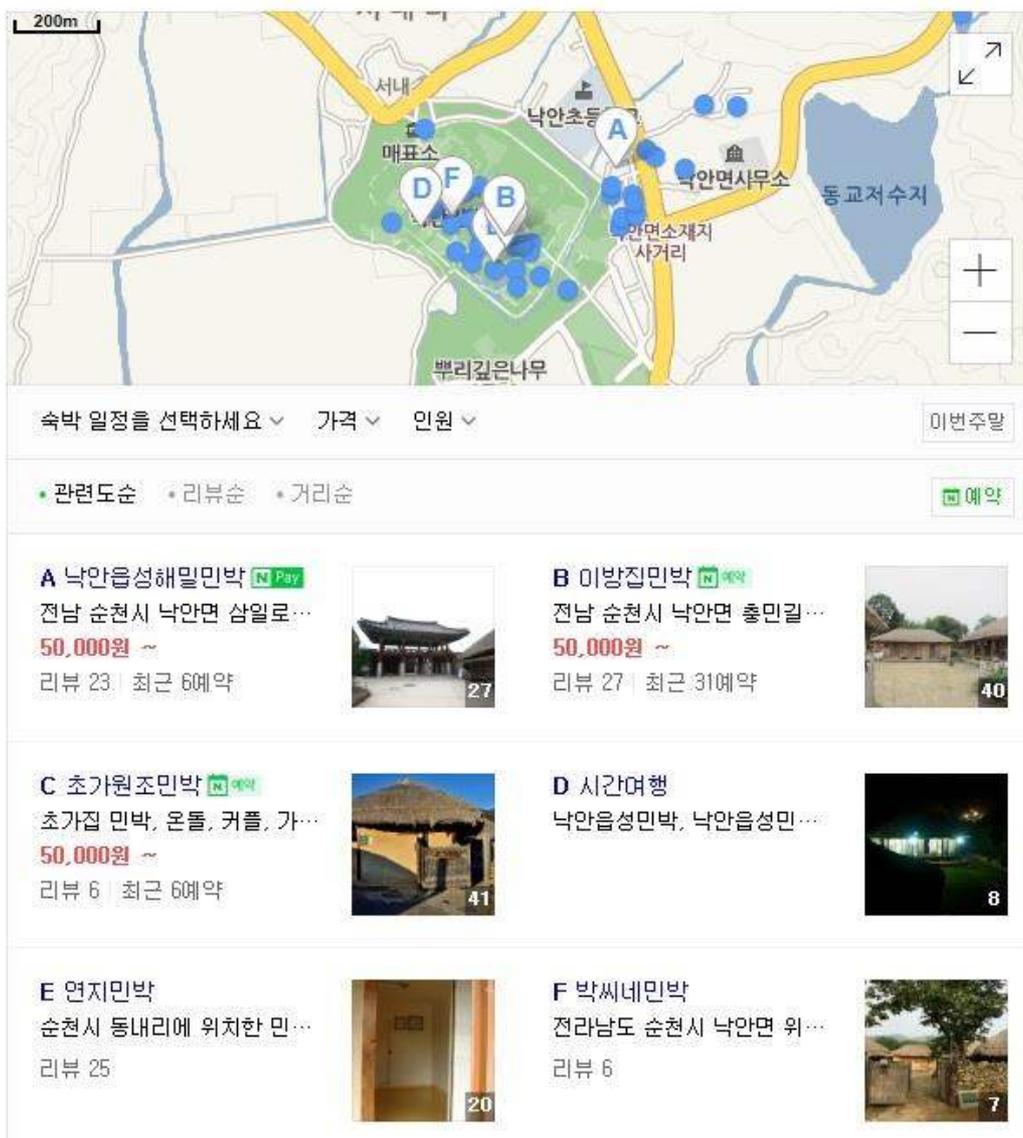


그림 61 순천 낙안읍성 전통가옥 등 숙박시설운영 현황(총 45개소)

블로그



[순천 낙안읍성 민박 새로운 경험](#) 2017.03.01.

순천 낙안읍성 민박 하룻밤 묵고 순천여행도 즐기고~ 사람이 붐비는 곳보다 이렇게 한가하게 즐기는 여행지가 더 좋더라고요 우리 아직 20대인데 취향은 올드해 ㅋㅋ...
산도's 여행, 먹방,일상 이... [blog.naver.com/sando...](#) | [블로그 내 검색](#) | [약도](#) ▾



[순천 낙안읍성 민박 연지 휴식처](#) 7일 전

순천 낙안읍성민박 집에 어떤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만끽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 낙안읍성 민박 집엔 편리하게도 냉장고 tv , 와이파이까지 초가집이라고는...
피.후.비 [blog.naver.com/kjbc4013?Redirect=Log&log...](#) | [블로그 내 검색](#)



[순천 낙안읍성 민박 추천 들어가요~~](#) 2017.10.19.

순천 낙안읍성 민박 추천 들어가요~~ 순천 낙안읍성은 사적으로 초가집들이 모여있는 민속마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초가집에서의 체험은 국내에선...
알콩달콩 다섯식구♡ [blog.naver.com/hungi911?Redirect=Log&log...](#) | [블로그 내 검색](#)



[낙안읍성숙박은 박씨네민박이라오](#) 2017.11.01.

있는 낙안읍성민박 한곳 소개해 드릴게요~ 저렴한 가격에 깔끔하고 깨끗한 박씨네민박입니다 골목길 따라 낙안읍성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고...
마음으로 [blog.naver.com/hniz3...](#) | [블로그 내 검색](#) | [약도](#) ▾



[\[순천여행\]낙안읍성 민박 이방집](#) 2013.10.29.

낙안읍성 안에는 아주 많은 민박집이 있지만 제가 이방집 민박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집이 가진 역사성 때문. 19세기 중엽에 건축된 것으로서 원래는 이 고을 할리의...
날아보자, 날마다 반짝반짝 [blog.naver.com/wings...](#) | [블로그 내 검색](#) | [약도](#) ▾

[블로그 더보기 >](#)

그림 62 순천 낙안읍성 전통한옥 숙박관련 웹 포스팅

(8)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와 지역 주민 대상 문화재 교육 필요성

- 문화재 소유자·관리자는 현장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며 그 가치를 보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 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부터 그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활용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교육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 콘텐츠를 갖추어야 한다.
- 문화재 소재 지역 주민들은 소유자·관리자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주체들이며, 문화재 활용을 실행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 관리·보호 방법과 관련

제도,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문화재 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 의한 문화재 활용을 실현하는 데도 효과적인 일이다.

- 문화재는 그 소유자·관리자와 지역 주민 등 현장 관계자들부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할 때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발점이 되므로 소유자·관리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재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

- ‘문화유산 방문교육’, ‘고고학 체험교실’ 등 문화재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법 연구개발, 교구 제작 지원 등 문화재 교육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 대다수 활용단체에서 문화재를 단순한 형태의 체험소재로만 활용

- 생생문화재 등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대체로 탁본, 투호놀이, 키트를 이용한 만들기 위주로, 이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체험이다. 이에 반해 일반 문화관광 및 콘텐츠산업에서 개발한 체험요소가 훨씬 경쟁력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이 일반 문화관광과 차별성도 없고 교육의 질적 수준도 낮으면 사업의 발전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 교안·교보재 및 체험도구, 게임 등 보다 다양한 요소의 접근기법을 개발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3) 활용단체의 자체개발에만 의존하는 교육개발

- 연구개발 활동은 많은 인력이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여 많은 자본이 투입될수록 좋은 성과를 내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 교육개발은 활용단체의 자체개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 대규모의 문화재 활용단체가 소규모인 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양질의 교

육개발을 생산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련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정보교류를 통해 개선품을 생산해내는 방법, 높은 수준의 포상과 투자활동을 통해 교육개발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4) 실질적이지 못한 학교 현장교육을 생생한 현장교육으로

-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답사, 수학여행이 교육시수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수능시험이나 전공공부에 현장학습이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러나 대학원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가 연구논문 준비 등 개인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답사를 통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학습의 효과는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역간 문화재가 갖고있는 특성이나 역사적 의미 등을 학교 교과과정에 접목하여, 학생들의 실제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3) 주요 개정 내용

- (1)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교육자료와 활용기반 여건 마련
- (2) 지역문화재 안내시설, 전시공간 등 각종 활용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체화
- (3) 콘텐츠 개발 보급 지원 근거 마련
- (4) 문화재 교육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00조(문화재활용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지원)</p> <p>① _____는 문화재활용을 위한 교육콘텐츠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_____은 관련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_____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1.</p> <p>2.</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5) 기대효과

(1) 학생 시절부터 문화재에 관한 인식 개선

- 문화재를 충분히 활용하는 교육은 문화재에 더욱 친숙해지게 하는 기제가 되며, 암기과목으로 생각하는 역사 등 문화재 관련 교과목에 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 학교에서의 문화재 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국제화된 시대에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관광이나 문화재 해설을 넘어서는 질적 활용 기반 조성

- 체계화된 문화재 교육은 단순히 문화재를 관광하거나 문화재에 관한 해설을 듣는 수준을 넘어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의미와 가치 중심 문화재 활용을 실현할 수 있다.
- 문화재 교육은 궁극적으로 문화재를 통해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재 보존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

(3) 문화재 교육 안정화와 수준 향상

- 법률에 근거를 둔 문화재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에의 제도적 수용 등 문화재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에 의한 교육 인력 양성과 교재·교구 확보 등으로 문화재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4) 시민 대상 문화재 교육 일반화와 문화생활 향상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론 강의와 현장 활동 등 시민 대상 문화재 교육을 한 층 활성화·일반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별 문화재 교육은 문화재 수요자 맞춤형 문화재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 활용 기반 마련

- 각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교육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문화재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재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6) 그 밖의 참고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기대효과에 대한 보충자료

○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관련 사례 1 :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지역박물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박물관의 교육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인프라의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문화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박물관 교육지원’, ‘소장품 정리지원’, ‘K-museums 지역순회 지원’,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교육’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 박물관 교육 부분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가입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발간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자료관리 시스템 배포 및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박물관이 소장한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아카이브 자료를 DB화하고, 아카이브 자료관리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협력망 참여에 희망하는 박물관은 가입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국립민속박물관에 제출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협력망에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1월 현재 318개 기관이 협력망 가입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 지원희망기관은 교육계획 등을 수립·추진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이들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 사례와 같이 문화재 활용사업에서의 교육콘텐츠 개발지원은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에 가맹된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희망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접수받아, 내용이 타당한 단체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사업명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 교육지원사업		
	교육개발 지원	교육운영 지원	교육보급 지원
대상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가입 기관		
사업목적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역 박물관만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도 ·지역 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박물관 교육 활성화 ·교육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문화의 균형 발전 도모	·지역박물관 교육 기반 마련 및 향후 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 배양 ·지역문화교육의 거점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보급
참여기관	10개 기관	20개 기관	4개 기관
사업내역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자체 교재 및 교보재 발간비, 자문회의 등의 내용 지원	지역박물관 운영 자체 교육에 대한 강사료, 재료비, 현수막 등 운영비 지원	국립민속박물관 개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박물관에 보급하기 위해 교육 운영에 대한 강사료, 재료비, 현수막 등 운영비 지원
참고사진			

표 78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 교육지원사업(2016)

○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관련 사례 2 :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지역특화콘텐츠’란, 지역의 전통적·역사적·문화적으로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상징성을 소재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47개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을 포함하여 전국에 풍부한 역사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자산에 창의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콘텐츠로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66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2015년도 사업설명자료)

- 2017년 총 예산 9,800백만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프로젝트, 레벨업 프로젝트, 융복합 프로젝트라는 세가지 분야에서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프로젝트는 해외투자유치, 해외공동제작, 해외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사업기간 내 완료될 예정인 글로벌 진출형 지역특화콘텐츠를, 레벨업 프로젝트는 지역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을 높이고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말한다. 융복합 프로젝트는 기 개발된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내용, 장르로 확장 개발(제작)이 가능한 융복합 콘텐츠를 말한다.
- 지원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지역기업을 포함한 곳이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청시 과제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수행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평가에 따라 선정된 프로젝트는 총사업비의 90% 이내 개발지원이 이루어진다.
- 지원사업의 평가방식은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 70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하며, 각 평가단계별 70점 미만은 과락된다. 서류평가는 프로젝트의 적합성 평가(20점), 프로젝트 기획 및 제작계획의 우수성(40점), 사업화역량 평가(20점), 컨소시엄역량 평가(20점)으로 100점이 배점되며, 발표평가는 프로젝트의 타당성(20점), 제작계획 및 사업예산 현실성 평가(40점), 사업화가가능성 평가(20점), 컨소시엄적절성 평가(20점)로 100점이 배분된다.

구분	지원 상한액	지원범위	지원비율	국고지원금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	
				자립도	매칭비
글로벌 프로젝트	800백만원 내외	4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50% 초과	30% 이상
레벨업 프로젝트	500백만원 내외	8개 과제 내외		30%~50%	25% 이상
융복합 프로젝트	300백만원 내외	8개 과제 내외		30% 이하	20% 이상

표 79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2017)

-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관련사례 : 미국의 다문화지역민 대상 교육 · 활용사업 참여여건 마련을 통한 문화유산 활용과 보존
 - 미국에서는 아시아 등에서 건너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주민들이 ‘미국인’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몸소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등에서는 교육과 활용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정체성 함양 등 인식을 변화시키며 지역유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민 및 다문화 가정에게도 한국문화와 지역문화를 습득하고 지역유산이 주민에게 주는 혜택과 장점 등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방안을 강구하여 이들에게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문화유산 활용 및 보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업명	아시아태평양 출신 지역주민대상의 지역 문화유산교육과 접대(hospitality) 교육	차이나타운을 위한 방문객 기반시설 개발
지역	로스엔젤레스	하와이
대상지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리틀 도쿄, 타이타운	차이나타운, 카우아이 원주민, 마우이 원주민
법적 근거	미국 프리저브 아메리카(행정명령 13287)	
사업비(달러)	250,000	150,000
사업내역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내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들에게 지역문화유산 보존의 당위성과 문화관광, 프리저브 아메리카 사업의 특징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국문화와 지역문화를 습득하고 지역사회에 한층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들이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역 역사에 관심을 두게 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활동에 참여하게끔 유도한다. 이때 아시아태평양 출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등도 마련한다.	

표 80 미국의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관련 사례

(2) 유사입법례

○ 국내의 유사입법례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넓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메세나협회 등이 발족되어 있지만, 외국 문화선진국들에 비해 기업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인바,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의 지원을 보다 촉진하고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 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벤처창업지원 등 인적·물적 기반 구축**, 정보통신 진흥의 핵심영역인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 정보통신융합,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장비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민간부문의 창의정신 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 정보통신의 해외진출 지원,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 등을 명시적으로 선언함(안 제3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범부처간 정보통신 정책 조정, 기본계획 확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제도의 발굴·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요 업무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벤처와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점 이수인턴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사. 유망 기술·서비스 등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유망 기술·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지원 근거를 규정하며, 편의성·안정성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기술·서비스의 공공구매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과 벤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

차.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23조).

타. 지식정보재화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개발과는 다른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국가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수요예보제 시행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29조).

하. 중소기업 및 벤처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의 구성과 지원근거를 명시함(안 제30조 및 제31조).

거.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술거래의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개발 사업 종료 시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너.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더.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9조).

- 조문 참고사례

법령명	조문내용	비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9조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의무
기상법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식보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자체의 개발시책 마련의무, 지원 근거 ②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③ 세부사항 위임

(3) 제도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 문화재 교육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재단과의 중첩성
 - 문화재의 활용 분야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제3항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에서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관련 기능에 대한 중첩성을 띄고 있다.
 - 그러나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어, 일방적인 시각에서의 개발과 연구는 한계가 있다. 민간과 학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교육방안과 콘텐츠개발 방향이 논의될 때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과 경제효과 분석

1.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마련으로 발생하는 제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관람객들이 문화재 활용에 참가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하는 지출, 활용 주관단체가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소비하는 지출 등, 향후 추진될 수 있는 계획이나 신규 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지역관광활성화, 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개선 등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향후 영향력있는 사업분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수익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 영세하다는 점, 문화재 활용 전반에 관한 규제 완화와 허가기준 마련 등, 산업기반 마련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문화재 활용사업의 확장성을 쉽게 설정하기 어렵다.

이에, 앞서 제안하는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효과인 ‘개발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문화재 활용사업 관람객 유입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주로 경제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때 ‘개발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 분야별로 사업을 제안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간접적 효과로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시장영역 확대에 따른 매출규모 산정’ 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측정할만한 근거자료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문화재 활용 활성화에 대한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때, 여러 시나리오의 설정을 통해 더욱 정밀한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측정은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이때 문화재 활용사업은 산업연관표 중 ‘문화 및 기타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는 각 산업의 평균수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문화 및 기타서비스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계수	1.885270	0.178812	0.797598	24.473717

표 8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4, 문화 및 기타서비스 항목(2016년 작성자료)

경제적 파급효과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개발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하였다.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경제적 파급효과 중 ‘개발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본고에서 제안하는 사업범위를 위주로 나타내었으며, ‘문화재 활용사업 관람객 유입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람객의 방문 수와 1인당 평균 지출액을 중심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1) 개요

- (1)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조사·연구·개발사업, 활용 전문인력 및 단체 육성·지원사업, 활용 지원조직 운영, 양성 활용단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지원 항목에 따른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 중 본고에서 제안하는 기초연구개발 등 4가지 항목에서의 10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36,294백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산출하였다. 제안한 사업의 사업비는 현행 문화재청에서 책정하는 예산에 비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으나, 문화재 활용사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산업화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예산과 연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3) 여기에서 제안하는 모든 사업은 문화재 활용사업 촉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안하는 사업별 사업비는 2019년~2023년까지의 5년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세부사업명		
기초 연구 개발	정례 활용연구 사업 추진	문화재 특성별 연구, 수요자별 연구	1,700
		활용정책 및 활용활성화 연구	400
	다각적인 모니 터링과 컨설팅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 관한 모니터링	800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595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 화	연계문화재 신규브랜드 개발	1,000
		대표문화재로서의 '궁궐' 브랜드화	1,000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1,000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개별 이야기발굴과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12,240
		'히스토리 호텔스 오브 코리아' 전통숙박시설 가맹계 약사업	
		역사도시조성과 역사관광지구 설정, 지역재생 연구 방안 마련과 추진	2,068
전국 문화재 자가체험 활성화	300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200		
육성 사업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		1,066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사업 추진		1,225
지원 조직	문화유산활용연합회 운영 지원		1,000
교육 콘텐츠 마련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방안 마련과 추진		3,400
	생애주기별 문 화유산 교육개 발 지원	학교 문화재 교육 지원	1,100
		시민 문화재 교육 지원	800
		교수법, 교과목, 교구 개발 등 문화재 교육에 필요한 연구지원	3,400
	문화재 콘텐츠 확충		3,000
합계			36,294

표 83 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안 개요(2019~2023년)

구분	세부사업명	연도별 투입 예산(백만원)					
		총사업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초 연구 개발	문화재 특성별 연구, 수요자 별 연구	1,700	200	200	300	450	550
	활용정책 및 활용활성화 연 구	400	50	50	80	100	120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에 관한 모니터링	800	100	100	160	200	240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595	90	90	105	140	170
	연계문화재 신규브랜드 개발	1,000	125	125	200	250	300
	대표문화재로서의 ‘궁궐’ 브 랜드화	1,000	125	125	200	250	300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1,000	125	125	200	250	300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개별 이야기 발굴과 전략적 활용방 안 마련	12,240	1,500	1,500	2,000	3,000	4,240
	‘히스토리 호텔스 오브 코리 아’ 전통숙박시설 가맹계약 사업						
	역사도시조성과 역사관광지 구 설정, 지역재생 연구 방 안 마련과 추진	2,068	250	250	400	500	668
	전국 문화재 자가체험 활성 화	300	60	60	60	60	60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200	60	50	40	25	25	
육성 사업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	1,066	150	150	200	250	316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 사업 추진	1,225	245	245	245	245	245
지원 조직	문화유산활용연합회 운영 지 원	1,000	200	200	200	200	200
교육 콘텐츠 마련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방안 마련과 추진	3,400	450	450	700	800	1,000
	학교 문화재 교육 지원	1,100	220	220	220	220	220
	시민 문화재 교육 지원	800	160	160	160	160	160
	교수법, 교과목, 교구 개발 등 문화재 교육에 필요한 연구지원	3,400	680	680	680	680	680
	문화재 교육콘텐츠 확충	3,000	600	600	600	600	600
합계		36,294	5,390	5,380	6,750	8,380	10,394

표 84 활성화 제안 사업의 연도별 투입 예산 개요

(3) 이때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68,423백만원, 수입유발효과는 약 6,48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8,948백만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888명으로 산출되었다.

제안사업 투입시 과급효과	총 사업비 (백만원)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수입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36,294	68,423	6,489	28,948	888

표 85 본고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투입 시 예상되는 경제적 과급효과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제안

(1) 정례 활용연구사업 추진

○ 기본방향

- 문화재 활용사업이 문화재 보존과 더욱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으면서도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문화재 활용에 대한 모든 분야가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활용콘텐츠의 원천소스 발굴, 관광·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관련종사자 교육, 콘텐츠 생산과 디자인, 프로그램 보조재 개발, 문화재 상품 판매, 프로그램 홍보방안, 활용방법론 등과 이밖에 활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 문화재 특성별 연구 추진

- 공간별, 시대별, 문화재 형태별(무형문화재, 동산문화재, 기록유산 등) 활용방안 정기 연구자료 발간, 분기별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재의 공간별 연구는 문화유산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옛 모습을 간직한 공간을 ‘역사마을(또는 역사지구)’, ‘역사도시’ 등으로 분류하여 보존,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강구해볼 수 있다.
- 문화재의 시대별, 형태별 연구는 활용의 방법론적 측면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향교서원활용’과 같이 특정 테마의 신규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67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보존 활용되고 있는 역사도시 말라카(말레이시아)



그림 68 근대건축물이 밀집되어 역사마을로 지정가능한 군산

○ 수요자별 효율적 가치전달 방안 마련을 위한 정례 활용연구사업 추진

- 모든 문화재 활용사업은 특정한 대상을 고려한 계획이 설계되며, 반드시 특정 대상의 참가자와 마주하게 되어있다. 또한 참가자는 각각의 참여 목적에 따라 ‘원하는 사항(needs)’이 다를 것이며, 활용 주관자는 이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활용단체는 참가자의 구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가치전달 방안 등을 끊임없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연령별(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등) 및 특정계층별(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여성, 남성, 학생 자녀를 둔 가족, 전공자 및 학식이 풍부한 계층, 전업주부층, 장애인층, 외국인 유학생 등) 맞춤형 활용 방안 정기 연구자료 발간, 분기별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가자가 원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밀한 수준의 통계자료가 수집,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통계자료의 수집은 현장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조사될 수 있다.

○ 활용정책 및 활용 활성화 정기 연구회 추진

- 아래와 같은 주제에 따라 활용활성화 정기 토론회를 분기별, 상~하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회의 추진은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담당할 수 있다.

- 분기별 국가지정, 시도지정문화재 대상 관련학문 연구성과 적용과 학계·활용기획가의 프로그램 공동기획과 토론회 실시
- 지역문화재와 지역학교 역사현장학습방안 마련을 위해 교사와 활용인력 간의 프로그램 공동기획과 토론회 실시
- 분기별 활용정책 제도개선 학술대회 실시
- 문화재청의 연간 활용정책 발표회 실시
- 활용프로그램 월례 세미나 및 워크숍 추진
- 문화재 활용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방안 마련

(2)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추진

○ 기본방향

- 문화재 활용 기획·운영 등에 대한 질적수준을 보완하는 동시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훼손사항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다.
- 해당 제안은 기존의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궁궐활용 모니터링 및 지역문화재활용 모니터링활동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활동이다.
- 관람객의 만족도와 더불어, 소비지출 분석 등의 통계자료 수집, 문화재의 직접적 활용여부와 보존관리 측면에서의 정량적·정성적 데이터 수집, 문화재 활용상의 안전관리 조사, 활용프로그램 기획·추진·운영 등에 관한 사업 추진 관련 모니터링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특히 관람객 관련 통계,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통계자료가 정밀한 수준으로 수집될 때에 더욱 효율적인 수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나 문화재 활용의 보존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문화재 활용에 관한 기초데이터가 관람객 만족도 이외에는 마련되어있지 않아, 위의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 문화재 활용사업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 민간 활용전문가의 주도, 학계 및 유사 전문가(문화, 관광 등) 주도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항목은 '관람객 관련',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관계성 관련', '활용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관련'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과 컨설팅

- 문화재 활용 시행의 사전·사후 안전 가이드라인과 기본사항 점검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방안'을 마련한다.
- 활용연합회 및 활용 수행단체의 자체 모니터링과 보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3)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 기본방향

- 앞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듯이, 미국의 활용정책은 문화재를 국가의 자산으로 인식, 활용은 보존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활용정책도 1차원적인 보존적 관리를 벗어나, 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 사업 등으로 양질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연계문화재 신규브랜드 개발

- 현재, 조선시대 학교시설인 향교와 서원을 특화한 활용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듯이, 역사적·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연계 문화재의 신규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아문화재와 읍성문화재, 산악명승 문화재, 산성과 성곽유적, 강변·해변 등 절경과 어우러진 정자문화재, 양반가옥 문화재 등이 있다.
- 또는 문화유산이 밀집된 특정 공간을 역사마을, 역사도시 등으로 지정하여 지역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다.

테마 문화재	관아문화재 (감영 및 읍성 포함)	산악명승 문화재	산성유적
지정문화재 개소	149	56	230
대표적 문화재	서산 해미읍성 등	설악산 대승폭포 등	대전 계족산성 등

표 86 테마 문화재의 지정 현황

○ 대표문화재로서의 ‘궁궐’ 브랜드화

- 조선시대 궁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자원으로서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국가브랜드로서 문화관광 핵심이미지 구축을 위한 ‘궁궐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의 저력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집약된 궁궐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브랜드화하고,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이를 전략적으로

로 활용한 고궁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이를 위해 궁궐별 특성에 맞는 활용전략의 정립이 필요하다. 4대궁과 종묘는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당대 최고의 역사문화공간으로, 장소적 시간적 진정성이 드러남으로써 궁궐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장소적 진정성 : 전각별 역사기록, 기능 및 위상, 스토리, 현재적 맥락 고려
- 시간적 진정성 : 당대, 복원/재현, 신축된 것 등을 구분, 격에 맞는 복원/활용

- 또한, 각 궁궐과 관련된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로 궁궐별 장소성 부각해야 한다. ‘궁궐’이라는 넓은 관점에서의 비슷한 이미지를 불식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재미, 풍부함을 향유케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궁궐에 대한 테마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경복궁 : 조선의 법궁(격식과 위엄), 왕실문화, 세종대왕
- 창덕궁 : 영정조대의 문화, 자연미/후원문화
- 창경궁 : 왕실의 여인, 조선의 천문
- 덕수궁 : 근대/대한제국 시기, 고종황제
- 종묘 : 종묘대제, 제수진설

○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다. 왕의 행차는 광화문을 통과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또한 국가에 상소를 올렸던 많은 백성들은 바로 이 광화문 앞에 모여 그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궁궐의 특성을 살려, 궁궐일대를 개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청와대의 정부종합청사이전계획에 따라 청와대를 경복궁의 후원으로 복원 계획함과 동시에, 청와대와 경복궁을 연계한 “오픈 하우스”를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청와대에서 현재의 청와대까지 오픈하는 것이다.

- 또한, ‘소통의 상징’이었던 ‘광화문 종(홍천사명 동종)’의 제자리 찾기를 통해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사업에 관한 예시 1)

* 청와대 오픈하우스 행사개요

○ 행사방향

- 청와대 본관 내부 개방으로 국민과의 소통 확대
- 소통과 나눔의 장
- 관광자원으로서의 청와대와 고궁의 가치 극대화

○ 주 제 : “청와대에서 경복궁까지, OPEN FESTIVAL”

○ 기 간 : 2019. 10. 17(토) ~ 10. 18(일), 양일간

○ 장 소 : 청와대, 경복궁 일원

○ 주 최 :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 주 관 : (민간단체 등 검토)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소요예산 : 약 10억원

○ 행사구성 : 공식행사, 중심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사업에 관한 예시 2)

* 소통의 상징 ‘광화문 종’ 제자리 찾기를 통한 광화문 주변 광장화

○ 국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은 바로 이 광화문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다. 왕의 행차는 광화문을 통과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또한 국가에 상소를 올렸던 많은 백성들은 바로 이 광화문 앞에 모여 그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 2010년 경복궁 광화문 복원이 마무리되었으나 원래 광화문 누각에 달려있던 ‘홍천사종’이 아직도 제자리로 오지 못하고 있다. 광화문 종은 조선의 수도 한양에 달려있던 3개의 종 중에 가장 으뜸으로서 시각을 알리는 역할뿐 아니라 임금의 거동을 알려 정치를 바르고 부지런히 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으며, 신문고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민의 억울한 하소연을 알리는 경종 역할도 했다.

○ 이러한 역사성을 담아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 시, “홍천사명 동종(보물 1460호)”은 1866년(고종 3) 경복궁 중건에 따라 광화문에 설치되어 광화문 종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나 경복궁 훼손에 의해 일본상인 손에 의해 팔려나갔고 그 용도를 상실한 채 창경궁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덕수궁 광명문에 옮겨져 오늘날까지 제자리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광화문 복원공사는 홍천사 종을 광화문루에 이 건해야

제대로 된 복원이 될 것이며, 광화문은 일제강점기 수난을 겪으며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비로소 완전히 찾게 될 것이다.

○ 더불어 제자리를 찾은 광화문 종은 경복궁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전통을 보여줌과 동시에 세계의 유수 역사도시들의 제야의 타종시에 등장하는 역사상징물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공간으로 다시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랜 역사를 지닌 역사도시들은 모두 새해벽두에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며 타종을 한다. 오늘날 우리의 새해타종은 보신각에서 해오다 그 수명을 다한 보신각 종은 85년을 끝으로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지금은 에밀레종을 재현한 종으로 대신 타종을 해오고 있다. 파리, 런던, 뉴욕 등을 지나 어느 나라 어느 수도보다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서울이 그 오랜 역사를 오롯이 안고 있는 광화문 종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서 전세계인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그 역사를 담은 소리를 광화문거리 전역에 울려 퍼지도록 함이 마땅하다.

○ 진정한 광화문거리의 복원은 역사현장의 복원과 함께 그 역사를 소리로 실어퍼 줌으로써 그 당찬 역사를 내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9 광화문에 걸려있던 홍천사종



그림 70 현재 덕수궁에 걸려있는
홍천사 종

○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개별 이야기 발굴과 전략적 활용방안 구성

- 전국에는 국가지정, 광역시도지정 문화재 뿐 아니라 지역 시군지정 향토유산 등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현재 해당 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적 중요성과 상관없이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전국 비지정문화재를 조사, 목록화하여 개별적 특성이 담긴 역사적 의의와 특색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재청의 활용사업, 지자체의 활용사업 또는 내셔널트러스트조직의 활용사업으로 추진한다. 이것으로 지역문화향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에 비하여 보다 탄력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구조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화장실, 객실, 전시실, 체험공간 등으로 꾸미기가 용이할 것이다.
- 해당 활동은 각국의 내셔널트러스트조직이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영국 내셔널트러스트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취득으로서 2016년 기준 연 5억 유로 이상의 수익과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시군단위별 향토유적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 등을 목록화하며 특색있는 이야기를 지역 설화·전설 등과 함께 수집한다. 부동산 문화유산은 전시실, 숙박시설, 체험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동산 문화유산은 지역박물관에서의 전시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 마련, 기념품 및 교구 개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숙박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문화유산은 ‘문화유산국민신탁’ 등 국내 내셔널트러스트조직 및 문화유산 활용단체, 지역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 제시할 ‘히스토리 호텔스 오브 코리아’ 숙박시설 연계사업에 가맹계약을 맺어 숙박 활성화를 증진할 수 있다.

※ ‘전국 비지정문화재의 개별 이야기 발굴과 전략적 활용방안 구성’ 관련 보충자료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고택 문화유산 활용 사례(Holiday Cottage)

- 영국, 미국 등 내셔널 트러스트는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유산(우리나라의 비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문화유산)을 조사·취득·매입·활용하는 단체이다.
- 문화유산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경복궁,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와 같이 이른바 ‘국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자료의 내용이 많고 적을 뿐, 모두가 상당량의 가치와 이야기자원을 함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해당 문화유산을 조사·취득·매입·활용하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에 가치를 알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특화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홀리데이 코티지(Holiday Cottage)’라는 고택 숙박체험사업이다. 이는 체험자들이 고택에서 휴가를 보냄으로서 체험자들은 해당 문화유산에 대해 쉽게 이해하게 되며 내셔널 트러스트는 체험자들을 받기 위해 수시로 고택을 관리한다. 이때 고택 주변의 식당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내셔널 트러스트는 고택에 거주하였던 인물과 가족의 역사·지역과의 관계와 함께 고택 복원과 매입과정·고택 및 지역 내 전설 등 관련한 이야기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자원은 숙박 프로그램으로서 전달한다.



그림 71 복원을 통해 숙박체험장으로 활용, 기본적 숙박시설이 갖추어진 1800년대 고택(고든스 캐빈, 출처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명	홀리데이 코티지		
법적 근거	내셔널 트러스트 특별법(The National Trust Act) 등 '시민의 유산'으로 사회적 소유, '양도불능의 원칙'보장으로 영원한 보전 가능, 상속세는 보전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대체 납부 가능		
활용 고택	476개소(2017년 10월 현재)		
사업비(천 유로)	수익(A)	지출(B)	기여금(A-B)
2017	12,049(C)	8,631(D)	3,418(E)
2016	11,091	8,157	2,934
2015	9,535	6,643	2,892
2014	9,226	6,532	2,694
2013	8,502	6,307	2,195
1개 고택당 평균 수익, 지출, 기여금(2017년, 유로)	평균수익(C/476) 25,313	평균지출(D/476) 18,132	평균기여금(E/476) 7,180
사업내역	2017년 10월 현재 476개 고택 등의 문화유산을 숙박시설로 활용, 운영 한다. 2017년 기준, 1개 고택당 평균 25,313유로의 수익과 7,180유로의 기여금이 발생한다. 고택 활용사업 수익과 기여금, 관리하는 고택 문화 유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당 사업명이 '홀리데이 코티지'이듯이 주말여가생활에 특화된 프로그 램이다. 고택 관련 인물, 지역문화 및 복원 매입 과정 등에 대해 이해하 는 기회를 가진다. 숙소는 대부분 전통방식으로 꾸며져있으나 화장실 등 기초생활시설만큼은 현대식으로 변형하였다.		
시사점	해당 사업에서 매해 3백만유로 내외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금 은 대부분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사용된다.		

표 90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의 홀리데이코티지 고택활용사업 사례

○ '히스토리릭 호텔스 오브 코리아' 전통숙박시설 가맹계약 사업

- 전국 고택과 재실(齋室)을 개방,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숙박시설 등과 연계하여 이른바 '히스토리릭 호텔스 오브 코리아(Historic Hotels of Korea)'라는 숙박 가맹계약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건조물 문화유산 및 인근의 역사적·지역적 의미가 있는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캠핑장과 가맹을 계약하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연계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내에 있는 환구단, 온양 관광호텔 내에 있는 영괴대·산정비 등과 같이 문화재가 숙박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곳들은 연계 활용하기 좋으며, 지역 인근 숙박시설에도 '관광 프로모션'을 독려하여

지역 문화재 관광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 인근 문화재에서 매일아침마다 추진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단순방문을 통한 설명회부터 전통제조, 전통한식 아침식사 및 생생문화재 등 기존 기획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해당 가맹계약에 참여하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존활동을 추진하는 숙박시설은 세금감면, 숙박시설 등급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숙박시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 또한 해당 가맹사업은 문화유산국민신탁 등 내셔널 트러스트 단체와 제휴를 맺어 회원에게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면 국민신탁운동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히스토리릭 호텔스 오브 코리아’ 가맹점 홍보를 위해 온라인 예약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 등 국내 여행전문기업 및 쿠팡·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집중 홍보하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히스토리릭 호텔스 오브 코리아’ 전통숙박시설 가맹계약 사업 관련
보충자료 : 히스토리릭 호텔스 오브 아메리카(Historic hotels of America)

- 미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1989년 32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히스토리릭 호텔스 오브 아메리카’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 기준 292개 숙박시설이 가입되어 있다. 숙박시설의 종류는 호텔, 모텔, 여관 및 농가, 목장, 오두막 등 다양하다. 또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라는 4가지의 숙박시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50년 이상의 오래된 곳이어야 하며, 국립 사적지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욕 플라자호텔 등 유명 호텔도 해당 사업에 가맹되어 있다.
- 내셔널 트러스트 회원, 공무원 및 국방관계자 등 특정계층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아멕스·아메리카익스프레스 등 신용카드와도 제휴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 특히 내셔널 트러스트 회원에게는 파격적인 할인혜택(30% 내외)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혜택은 내셔널 트러스트 회원모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은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숙박시설 및 주변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 예를 들어, 재즈로 유명한 시카고의 랜드마크인 ‘드레이크 호텔’은 객실 손님에게 100년이 넘는 역사를 다룬 ‘드레이크 뉴스 레터(자료집)’와 호텔과 지역 역사적 장소의 관광 패키지를 제공하며, 매주 목~일요일 저녁마다 재즈 등 음악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72 재즈로 유명한 드레이크 호텔의 소개(히스토리 호텔스 오브 아메리카)



그림 73 호텔 내에서의 재즈 공연(출처 : Nancy L.)

- 역사도시조성과 역사관광지구 설정, 지역재생 연구 방안 마련과 추진
 - 해당 사업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을 ‘역사도시’로 설정하여, 해당공간의 역사적 의미에 따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에서 추진 중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구를 지정하였다. 고도로 지정된 공간은 주로 고대(삼국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는데, 고려·조선·근현대 시기도 한국사(史)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공간도 ‘고도지구’와 같이 보존·활용해야 한다. 이에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된 도시도 ‘역사마을’, ‘역사도시’로 지정해야 한다.
 - 이때, 해당 지구의 지정은 역사마을과 역사도시로 등급을 지정하여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마을은 역사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일부 공간(법정동 규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역사도시는 고도 경주, 부여, 공주, 익산과 같이 도시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 또는 여러 법정동을 합한 규모로 지정하는 방안이 있다.
 - 해당 도시공간과 어울리는 역사적 테마를 설정하여, 역사적으로 가치있는공간을 보존하고 주변정비계획(역사지구 주민지원사업 등)을 마련함으로써 테마 역사관광지구 조성, 관광객 유치와 도시재생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사업대상지로 전주와 안동(조선시대 양반문화), 군산과 대구(근현대 문화) 등 문화유산이 집중 분포된 도시를 위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문화재 야행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 위주로 시범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 해당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연계 확대할 수 있다.
- 전국 문화재 자가체험 활성화
 - 문화재 자가체험을 위한 ‘전국 문화재 셀프 가이드북’, ‘셀프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개발, 개정하여 온라인(앱, 웹페이지 등)·오프라인(자가체험 서적, 스탬프투어 등)으로 출시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 이는 시대·특징 등 테마 문화유산 연계답사방안을 연구하여 일반인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약용과 차(茶)문화 : 다지순례(茶地巡禮)’라는 주제의 자가체험으로 차문화 산지와 정약용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체험관광 코스를 개발하거나, ‘한국의 실크로드 탐험대’를 주제로 신라시대 수도였던 경주에서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주요관문으로 추정되는 화성 당성까지 답사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문화재 100선’, ‘2018년에 반드시 가봐야 할 문화유산 20선’ 등 테마를 설정하여 안내하는 방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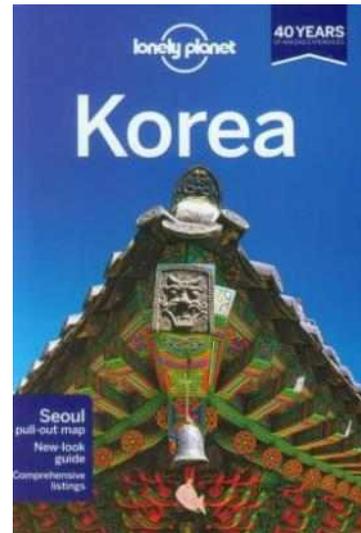


그림 74 자가체험관광 가이드북, 론니플래닛 한국편

- 현재, 국민의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로 국내관광은 조금씩 소외받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문화재 자가체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내여행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재 자가체험방안을 제안하여 주말 및 여가생활에 대한 문화유산 향유를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4)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 기본방향

- 문화재를 소재로만 삼는 것이 아닌, 안전가이드 및 활용활동 허가지침에 따라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다루어 활용사업 참가자에게 말 그대로 ‘직접적인 체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그간의 문화재 활용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문화재에 직접 들어가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를 직접 만지거나 들어가서 활용하는 것은 보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도 쉽게 이를 허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문화재청에서 활용활동 허가지침을 마련하여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문화재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보존활동과 함께 더욱 생생한 문화재 체험을 가능케 할 수 있다.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재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좋은 문화재 활용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활용활동을 한다면 더욱 좋은 보존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해왔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군불때기’는 전통가옥의 난방방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며 건물의 유지보수면에서도 필요하다. 실제로 문화재 돌봄사업에서도 문화재의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일상관리로 군불때기를 시행한다. 또한, 예부터 선조들은 군불때기를 통해 일상생활을 하여왔으나, 화재는 주의사항만 환기하였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활용적 측면에서도 이를 직접 하거나 느껴보지 않고서는 관람객에게 생생한 체험을 시켜줄 수 없다. 그러나 활용단체에서는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문화재 돌봄사업단의 일상관리 활동[각종 청소작업(실내·실외·배수로 등), 넝쿨 및 잡초제거, 경관정비, 예초작업 등 잔디관리, 철물방청작업, 부분적 창호도배, 군불때기 등]을 문화재 활용활동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문화재를 직·간접적으로 다루어 보존활동에도 도움을 주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일인 만큼,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및 안전가이드라인 숙지 등 활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 또는 인증단체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 활용 활동의 허가지침은 문화재 관련 업력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특정한 전문인력을 가진 단체에만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를 직접 다루는 수준에 따라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만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의 활용활동 허가 : 문화재 위탁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용활동 허가내용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용활동 허가 : 일상관리활동, 경미한 문화재수리활동과 접목

○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관련 사례 1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기술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문화재에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활동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자격자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 ‘경미한 문화재수리’는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현상유지면에서는 매우 큰 효과를 주고 있다. ‘경미한 문화재수리’사항에 근거하여 문화재 활용 주관단체에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게다가 이 항목에 근거하여, 시민의 손으로 지역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 돌봄사업’이 추진 중이기도 하다.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 지침과 인력 활용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p>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p> <p>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p> <p>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p> <p>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p> <p>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p> <p>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p> <p>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p> <p>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p> <p>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p> <p>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p> <p>타.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p> <p>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p>

	<p>하. 기존 너와·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p> <p>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p> <p>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p> <p>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p> <p>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p> <p>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p>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p>	<p>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p> <p>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에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p> <p>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p> <p>라.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p> <p>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p>

표 9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미한 문화재수리(제4조제1항 관련) 2017.7.11. 일부개정

○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관련 사례 2 - 문화재 돌봄 사업의 활동영역

-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영역은 크게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등 세가지이다. 문화재 모니터링과 경미한 보수 활동은 업무내용에 따라 고도의 수준을 요하기는 하나, 부분적으로는 모든 활동이 문화재 활용사업과 접목 가능하다.
- 일상관리 활동은 안전가이드라인만 숙지한다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균불때기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나, 선조들이 예부터 생활하며 해왔던 행위로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 경미한 수리 활동과 모니터링 활동은 문화재와 관련한 기술을 요하나, 임시 실습시설을 마련하여 체험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적 과정을 체험해보는 정도는 가능하다.
-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활동에 대해 안전수칙을 활용단체에 알려주어, 적극 활용해볼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재 관리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영향을 얻게 될 것이다.

구분		활동 내역
모니터링	전문 모니터링	생물피해 : 전문장비(계측기 등)를 활용하여 가해충(흰개미 등)의 서식과 문화재 안전성을 측정 보고, 문화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 측정 보고 목조 : 전문장비(계측기 등)를 활용해 균열·기울음·처짐 피해 등 변위를 측정 보고 석조 : 전문장비(계측기 등)를 활용 박리·박락·균열 등과 생물피해를 측정 보고
	정기 모니터링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 경미수리를 목적으로 대상문화재 전체를 모니터링
	긴급 모니터링	태풍, 폭우, 폭설, 산사태, 화재 등 자연·인위적 긴급재해 시 피해조사
인상관리	실내 외 청소	환기, 먼지털기, 방/마루청소, 문살청소, 마루밑청소, 기단쓸기, 거미줄제거
	주변쓰레기청소	쓰레기줍기, 불법현수막철거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문화재 지정구역 내)
	기존배수로 청소	흙/낙엽/이물질제거
	안내판 청소	물걸레닦기, 이물질(스티커등)제거
	담장 넝쿨제거	담장 넝쿨제거
	주변 경관 정비	잡목제거, 고사목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주변 조경 관리	조경수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지붕위잡초제거	지붕 위 잡초제거(안전관리 유의)
	제조작업	예초기, 승용잔디깎기, 자주식잔디깎기 등을 이용한 제조작업
	김매기	낮, 호미등을 이용한 풀뽑기 작업
	잔디관리	잔디보식, 잔디밭기, 잔디떼밥주기 등
	CCTV 점검	영상확인, 녹화확인
	소화기 관리	압력/약제확인, 소화전내용물정리, 소화기 관리 및 교체
	제방·제설 작업	제설작업, 처마고드름제거, 대상물보온조치
	철물 방청작업	녹제거, 피막처리
	부분적창호도배	극히 부분적인 창호의 구멍메우기 등
	군불때기	군불때기(인화물질 확인)
	경미수리	도배작업
목부재 기름칠		콩담, 생들기름칠, 오일스테인칠, 방부·방충·방염제 도포 등
창호보수		창 또는 호의 목재·철재부착물 등의 파손 시 보수작업
마루·대문 부분보수		쪽마루·뿔마루 아래 등바리 설치, 받침목 설치, 탈락한 청판끼우기, 벌어진 청판 틈새보강, 부식된 청판 갈아끼우기, 문문테 보수, 빗장·빗장문테 보수, 탈락한 마루난간 고정, 결구보 보강(썰기, 축, 산지보강)
목공작업		부식 파손된 목재·뿔마루(귀틀, 청판)·마루난간·대문·창호·활주·수장재 부분교체, 협문·중문 부분보수, 보조기둥 등바리 이음, 지붕부 부연·개편 부분교체
석조보수		지의류 제거 및 세척(물로 하는 방식으로 한정)
벽체보수		부분적으로 훼손된 벽체·당골막이·처마양토 등의 외역기, 황토바름, 회미장 작업
기와보수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극히 부분적인 보수작업
기와고르기		수키와를 해체하고 홍두깨흙부터 재시공하는 작업, 태풍·폭우 등으로 부분적으로 유실된 지붕마루(용마루,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재시공하는 작업
안내판 정비		안내문 오류수정, 음각글씨 충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부착
안내판 보수		안내판·경도관·유도간판·표석 등을 재설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보호휀스 보수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 교체, 쓰러진 휀스 정비
온돌 보수		부분적인 구들, 연도, 굴뚝, 아궁이 수리
담장 보수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 원형대로 수리
계단기단석축보수		계단수리, 기단바닥면수리, 기단면석고정, 방전·박석·전돌·석축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배수로 보수		부분적으로 훼손된 배수로를 원형대로 수리
이영잇기		이영보강, 이영교체
인공수지 작업		극히 부분적으로 갈라진 목재의 갈라짐, 벌어진, 천공 등의 에폭시작업
지반 정비작업		석조문화재 주변 쿡자갈·마사토 깔기, 목조건축 마당 마사토 깔기, 기단부 복토작업 등
주변시설물보수		관리사무소,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보수, (화장실·벤치·파고라·탐방로 등)

표 93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 범위

3) 활용단체와 인력 육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 제안

(1)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

○ 기본방향

- 문화재 활용을 실행하는 현장 주체들이 문화재와 문화재 활용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한다.
- 현장 활용 주체들이 문화재 활용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 등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활용 주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 실업률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활용분야를 통해 실업률의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른바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를 통해 문화재 활용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문화재 활용사 취업패키지’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해당 제도는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문화재 활용사업 종사자와 취업희망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주요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문화재 활용사 교육과 양성을 위해 취업준비생에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방안을, 기존 문화재 활용사업 종사자에게는 실무에 관한 심화과정 이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취업패키지 제도는 저소득층, 지역인력, 경력 단절자 및 다양한 출신과 경력을 가진 인력이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실무교육과 취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기존 문화재 활용사업 종사자에게도 해당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교육을 통해 해당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활용사업의 지속적 근속을 가능케 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이수제의 교육내용으로는 활용 문화재의 연구조사 방안, 역사적 가치의 발현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획 방안,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추진, 현장 실습, 문화재 안전관리 등 활용사업의 실무를 중심으로 한다.
- 취업준비생 대상 : 문화재 활용사 취업패키지 운영
- 기존 문화재 활용사업 종사자 대상 : 해설사 등 현장 인력 표준 교육과정 마련, 지역 대학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협력, 지역대학·문화원·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재활용 교육 정례화, 광역 시도단위 문화재 활용 단체 및 인력, 해설 및 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정례화

(2)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사업 추진

○ 기본방향

- 문화재 활용사업은 영국, 미국 등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장형성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대체로 활용단체의 매출액은 5억원 미만이며 직원 수는 10명 내외, 평균 연봉은 3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된다.
-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으로 문화재 활용사업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활용 프로그램 추진 및 일자리 마련을 도모해야 한다.
- 활용 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활용 단체들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이들이 자생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재 활용과 보존에 뜻이 있으나 어떻게 활용,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단체와 단체수립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운영 보육지

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창업운영 보육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단체연합 및 활용지원재단을 통한 육성 지원,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으로의 창업 및 육성지원, 활용 수행 및 단체운영 등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과 인력·기술 지원,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연계 활용, 임대사업장 확보·공동범용설비 활용, 경영·기술 컨설팅 등이 강구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지원센터(BI-NET)’의 문화유산활용기업 전문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등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제안

○ 기본 방향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결합된 ‘(가칭)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문화재 활용 활성화에 효율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 사업내용

- 회의체 운영(실무위원회 사업위원회 등 : 사업관련 정책토론과 정보교류, 활용사업 정기 워크숍, 실무사항 논의)
-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사업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
- 활용사업 통합 홍보방안 마련(통합 홍보채널 운영, 대국민 정기 문화재활용 소개자료 발간 및 연간보고서 등)
- 민·관·학 공동활용사업 연구와 추진 협력도모
-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운영
- 지역 권역별 포럼 운영(권역별 우수사업 선정과 논의)
- 문화재 활용 관련인력 교육 지원, 양성과정 운영
- 문화재 활용사업 발전(전문화, 다양화, 산업화)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 회원단체를 위한 정부 활용사업 및 단체간 사업정보 제공, 해외 문화유산활용단체와 교류 및 협력방안 모색

- 활용 교육 및 세미나, 문화유산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지역 문화재 활용의 운영계획 수립 지원
- 회원교류 및 공제조합 운영
-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체계 마련(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금 집행과정, 사업운영 진행사항 및 추진실적 등 점검), 연합회 내부 운영 지침 수립 등

5) 교육콘텐츠 마련을 위한 사업 제안

(1)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방안 마련과 추진

○ 기본 방향

- 영국, 미국과 같은 문화선진국은 내셔널트러스트 조직의 활성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역사도시재생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져 산업화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다.
-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 보존 관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문화선진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활동은 “보수, 관리활동에 전념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의 접근을 허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기존의 보수관리활동과 함께할 때 보존적 효과는 배가된다는 것은 여러 문화선진국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문화재청도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문화재활용국이 편성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현재까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접근 외에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효과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 이에, 문화재 활용이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교육·홍보자료로 개발하여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 주요 사업내용

-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재 활용을 통한 보존 효과를 입증시키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활용 횟수에 따른 연습량 및 준비기간 증가(무형문화재), 일상관리실적 증가(유형문화재)’에 관한 자료가 될 것이다.
- 교육과 홍보자료는 우선적으로 학교 교과에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및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채널에 방영하거나, 문화재 활용사업 참가자에게 사전 공통교육으로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애주기별 문화유산 교육개발 지원

○ 기본 방향

- 문화재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공부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여가생활을 즐기고 교양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문화유산 교육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학교 문화재 교육 지원

- 학교 문화재 교육 지원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의 문화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내고장의 문화재로 역사와 문화를 쉽게 배우는 ‘1문화재 1학교’ 연결, 연계 교육안 마련으로 해당 문화재를 학교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 유아, 초등교육 : 문화재에 대한 친숙함을 갖기, 내고장 바로알기

· 중등교육 : 역사교과서와의 연계, 수능대비 현장학습

· 대학교육 : 교양 및 전공수업과 연계

- ‘1문화재 1학교’ 연계교육안은 문화재청 및 학계의 연구성과를 통한 “교수법, 교과목, 교구 개발”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거나, 지역학교 교사와 활용단체의 연계안, 학교내에서 자체 개발·운영·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 시민 문화재 교육 지원

- 역사관광과 문화재 해설, 그리고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화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시민 문화재 교육 지원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문화재 현장에서 해당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 교수법, 교과목, 교구 개발 등 문화재 교육 교보재 연구 지원

- 문화재 교육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교수법과 교과목 개발, 문화재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구·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특히, 문화재 활용 현장에서는 자체개발 교구, 교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구개발의 질적 상향평준화와 장려를 위해 ‘교구개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개발지원사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문화재 유형별·수요자 대상별 교육 교재와 교육 지침서 개발,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지원한다.

(3) 문화재 교육콘텐츠 확충

○ 기본 방향

- 문화재 관련 콘텐츠는 정보이용서비스에서부터 만화·게임·영상(영화, 사극, 다큐멘터리 등)·음향 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까지 다방면으로 제작·활용되고 있는 추세로, 사람들의 관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역사유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도나 교육콘텐츠 개발은 상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 흥미로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문화재 교육콘텐츠 확충으로, 국민에게 교과서나 서적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보다 능률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 영상 프로그램 제작

- 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 유형별, 지역별, 활용 테마별 다큐멘터리·어린이와 학생대상의 교육영상물·문화재 현장학습 관련 예능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반영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 영화 촬영지 및 세트장 활용의 적극 협조 및 안전 가이드라인 보강

- 사극, 역사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 기획물 등 촬영 시 문화재를 직접적·적극적으로 활용·촬영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종사자에게 더욱 권장하여 문화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문화재가 관광명소화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 이때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강하여 훼손을 최소화한다.

○ 초등~중학생 대상 문화유산 정보이용서비스 확대

- 문화재청은 홈페이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 전공자를 위한 문화재 현장 확인 정보서비스 확대

- 문화재를 방문하거나 관찰하지 않고도 문화유산의 제반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공자의 학습능률을 높이고 학교의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중요 문화재만을 중심으로만 소개되어있어 다른 문화재를 대상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록물이 담긴 문화유산의 경우, 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내 ‘문화유산정보’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한국고전종합DB’ 등 기존 아카이브를 개편·링크하거나 부족한 정보는 추가연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건조물 문화재의 내부 모습과 현황을 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카카오톡에서 72건의 국보문화재 등 중요문화재의 정보와 건조물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음 헤리티지뷰(문화유산지도)’를 서비스 중인데, 이와 같은 정보시스템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원·협력 또는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75 다음 문화유산지도 현황



그림 76 다음 헤리티지뷰(경회루 내부 모습)

6) 제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위에서 제시한 사업을 책정한 예산에 따라 모든 사업이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추진될 경우 아래와 같은 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단위 : 백만원, 명)
소수점은 표현하지 않음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백만원)	생산 유발효과 (백만원)	수입 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백만원)	취업 유발효과 (명)	
		세부사업명						
기 초 연 구 개 발	정 례 활 용 연 구 사 업 추 진	문화재 특성별 연구	1,700	3,204	303	1,355	41	
		활용정책 및 활용 활성화 연구	400	754	71	319	9	
	다 각 적 인 모 니 터 링 과 컨 설 팅	문화재 활용 프로 그램 기획, 운영 등에 관한 모니터 링	800	1,508	143	638	19	
		활용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595	1,121	106	474	14	
	문 화 재 활 용 을 통 한 관 광 활 성 화	연 계 문 화 재 신 규 브 랜 드 개 발 대 표 문 화 재 로 서 의 ' 궁 궐 ' 브 랜 드 화 궁 궐 일 대 문 화 유 산 광 장 화 전 국 비 지 정 문 화 재 의 개 별 이 야 기 발	연계문화재 신규브 랜드 개발	1,000	1,885	178	797	24
			대표문화재로서의 '궁궐' 브랜드화	1,000	1,885	178	797	24
			궁궐일대 문화유산 광장화	1,000	1,885	178	797	24
			전국 비지정문화재 의 개별 이야기발	12,240	23,075	2,188	9,762	299

(단위 : 백만원, 명)
소수점은 표현하지 않음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백만원)	생산 유발효과 (백만원)	수입 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백만원)	취업 유발효과 (명)
	세부사업명						
	굴과 전략적 활용 방안 마련						
	역사도시조성과 역 사관광지구 설정, 지역재생 연구 방 안 마련과 추진		2,068	3,898	369	1,649	50
	전국 문화재 자가 체험 활성화		300	565	53	239	7
	문화재 활용활동 허가지침 마련 및 개선안 연구		200	377	35	159	4
전 문 인 력, 단 체 육성	문화재 활용사 교육·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제		1,066	2,009	190	850	26
	활용단체 창업운영 보육지원 사업 추진		1,225	2,309	219	977	29
활 용 지 원 조 직 운영	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운 영 지원		1,000	1,885	178	797	24
교 육 콘 츠 런	문화재 활용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방안 마련과 추진		3,400	6,409	607	2,711	83
	생애 주 기 문 화 유 산 교 육 개 발 지 원	학교 문화재 교육 지원	1,100	2,073	196	877	26
		시민 문화재 교육 지원	800	1,508	143	638	19
		교수법, 교과목, 교 구 개발 등 문화재 교육에 필요한 연 구지원	3,400	6,409	607	2,711	83
	문화재 교육콘텐츠 확충		3,000	5,655	536	2,392	73
합계			36,294	68,423	6,489	28,948	888

표 94 제안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2.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문화재 활용사업의 시장규모 추정

(1) 시장규모 측정 방안

- 문화재 활용에 관한 모든 활동을 살펴보면, 문화재청 활용정책과가 추진하는 궁궐·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교육 등 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는 문화재 활용 관광사업 등이 있다. 이 중 ‘문화재 보존적 차원에서의 활용사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청의 사업을 중심으로 시장규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 문화재 활용 시장규모의 측정 근거 지표로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관람객 수와 관람객의 지출액, 문화재 활용단체의 매출 규모를 확인할 것이다. 이밖에 검토할 자료로 문화재 활용사업에 관한 예산인데,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수집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는 문화재청 등의 예산자료와 모니터링 자료가 사실상 전부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상세한 수준에서의 통계 집계되지 않아, 정밀한 수준의 시장규모의 측정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관람객 유입 수치와 관람객 지출비 등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도 나타나있다. 이 때문에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예측할 수 밖에 없다. 향후 문화재 활용에 대한 제반 통계적 수치를 정밀한 수준으로 수집하여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측정 근거지표	근거자료	내용
관람객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관람객수 산정, 관람객 지출액
주관단체		주관단체의 매출 규모
예산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활용 사업	타부처의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표 95 문화재 활용산업의 측정 근거지표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관람객 수 산정

-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사업은 활용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궁궐활용·지역문화재활용사업과 무형문화재 활용사업 등 타과의 사업이 있다. 2015년 메르스 여파로 생생문화재 등은 관람객이 일시 감소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측정이 어려우며, 2016년도의 사업을 중심으로 관람객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때 타과의 사업은 문화유산교육사업, 무형문화재 관련 활용사업 외에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굴현장 공개사업 등 타과의 기타 사업 관람객의 총계는 1만명으로 설정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참가 수가 집계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모두 내국인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 문화재 활용사업 참가자의 성향(내·외국인 여부, 지역민과 외지인 여부 및 해당 유형의 사람들이 지출한 지출액 등)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도 다르고 참가 목적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정밀하게 조사되지 않은 바, 이번 분석에서는 참가자 모두를 내국인으로 가정할 수 밖에 없었다. 향후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시 해당부분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 문화재 활용사업 중 궁궐활용사업의 관람객 실적은 생생문화재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우며, 수치상으로 사실상 신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궁궐활용사업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모인 ‘수문장 교대의식’ 공연의 관람객은 2016년 연간 6,050,428명, 회당 19,146명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공연이 열리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로 보인다. 이는 경복궁 입장객 전부에 대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문장 교대식 참여를 위해서 경복궁을 방문한 사람들의 비율’ 등 방문목적에 따른 특정 인원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현재 자료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관람객의 총계는 가상의 시나리오대로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본고에서는 궁궐활용프로그램의 참가자 수치를 신뢰하여 산정할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관람객의 총계는 8,710,281명으로 집계된다.

'16년도 주요 활용사업	내국인	외국인	합계
공궤활용사업	3,933,656	3,044,236	6,977,892
생생문화재	297,471	3,896	301,367
향교서원활용	115,669	4,671	120,340
문화재 야행	1,050,000	-	1,050,000
문화유산교육	110,699	-	110,699
대한민국무형문화재대전	23,897	-	23,897
무형유산교육, 공연, 전시	116,086	-	116,086
기타사업 합계 추정치	10,000	-	10,000
총계	5,657,478	3,052,803	8,710,281
총계 비율	64.95%	35.05%	100%

표 96 2016년도 주요 문화재 활용사업의 관람객

(3) 관람객의 지출액 산정

- 문화재 활용사업에 참가하는 관람객은 주로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각 주요사업별 평균 숙박비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람객의 평균 숙박비 지출액은 생생문화재 65,187원, 향교서원 23,028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중 행사전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 행사참여의 주체가 지역민으로 조사되었던 점, 1박 2일 프로그램이 당일프로그램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본고에서는 생생문화재와 향교서원활용사업의 숙박비를 신뢰하지 않고 문화재 야행에서의 숙박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 문화재 활용사업의 관람객은 공궤 활용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궤활용사업 모니터링자료 등에서 참가자의 평균 지출내역이 집계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된 사항과 같이, 문화재 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관람객 수가 현재로서는 집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람객이 실제로 어느정도를 지출하였는가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이에따라 활용 참가자의 1인당 평균지출은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야행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 향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지역민과 외지인의 지출내역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데이터가 산출될 것이다.
- 본고에서는 문화재 활용사업 참가자 1인당 교통비를 15,572원, 숙박비를 8,270원, 식음료를 18,447원, 총 42,289원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해당 수치로는

문화재 활용사업 참가자의 연간 예상지출액으로 386,349백만원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단위 : 원)

'16년도 주요사업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비고
생생문화재	22,050	(65,187)	26,269	생생과 향교서원의 숙박비는 오류로 확인되어, 숙박비의 평균은 야행 숙박비인 8,270원으로 산정함
향교서원활용	14,052	(23,028)	14,300	
문화재 야행	10,616	8,270	14,773	
평균	18,051	8,270	20,284	
합계	42,289			

○ 유사사례로, 아래의 표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관광축제에서 1인당 관광객들이 사용한 10년간의 평균 비용이다. 문화관광축제 1인당 평균 비용은 4만원~5만원 내외이며, 해마다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참가자 증감률을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1인당 지출비용을 4만원~5만원 선으로 측정함이 적정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연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2006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2012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2013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2014	11,135	21,099	5,548	13,233	5,445	56,460
2015	9,478	16,144	4,978	10,607	6,924	48,131
2016	9,688	16,987	6,140	13,275	5,833	51,923
최근 3년 평균	10,003	18,212	5,412	12,042	5,906	51,574

표 98 문화관광축제의 연도별 소비지출 변화('06~'16)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활용사업 참가자의 예상 지출액
 $8,710,281\text{명} \times 42,289\text{원} = 368,349\text{백만원}$

(4) 문화재 활용사업의 예산

-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활용사업은 활용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공궐 활용과 지역문화재 활용이 있으며, ‘발굴현장 공개사업’ 등 타과의 사업이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규모는 2016년 기준 총 68,66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여기에서 지역문화재활용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문화재 활용 민간단체의 주요 매출규모의 총합이라고 여길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문화재청 타과의 활용사업	활용정책과 활용사업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규모
	공궐활용	지역문화재활용	
32,632	12,435	23,600	68,667

표 100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규모

(5) 기타 문화재 활용단체의 매출규모

- 위의 “문화재 활용사업의 예산”항목에서 언급한 지역문화재활용사업 예산은 문화재 활용단체 대부분의 주요 매출로 간주된다. 이에, 기타 문화재 활용단체의 매출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 문화재 활용사업 및 활용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7년까지 36개 업체가 지정되었다. 이 36개 업체는 문화재 활용사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단체라 할 수 있다.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매출규모와 직원 수, 직원 평균 연봉을 중심으로 확인해본 결과, 연간 매출액은 작게는 2억 미만에서 크게는 10억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직원수는 대체로 5~10명 내외로 확인된다. 직원 평균 연봉은 대체로 3,0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아직 문화재 활용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각 단체의 사업이 안정화 되었음을 가정할 때, 평균 매출액을 5억원으로 설정한다면 문화유산 활용단체의 총 매출규모로 약 180억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기타 문화재 활용단체의 매출규모
36개 업체 × 5억원 = 18,000백만원

(6) 타부처의 활용사업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문화재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넓은 범위에서의 문화재 활용사업이며 활용 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이번 경제효과 분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정책예산을 중심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간접적 영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도 문화재를 소재로 하는 사업을 일부 실시중이나, 문화재는 사업소재 중 일부 정도로만 사용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문화재를 활용하는 활동에 투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아래의 표에 근거한 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을 계산하였을 때 404,800백만원이 산출된다.

부문	사업내용(2017 예산)	예산(백만원)
문화예술	이야기할머니 활동지원	7,800
	전통종교유산 보존	28,300
콘텐츠	창업지원 등 콘텐츠 산업 진흥 환경 조성	62,200
관광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36,400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5,600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8,800
	핵심관광지 육성	24,000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169,600
	한강 관광자원화	19,500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18,900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7,200
관광안내체계 구축	6,500	
총계		404,800

표 102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활용 관련 사업

2)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산업연관분석은 해당 산업의 투입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이용가능하다. 위에서 계산한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매출액을 합산한 결과 859,816백만원이 산출되었다.

구분	추정 매출액	소계(백만원)
직접매출	관람객의 연간지출예상	368,349
	문화재청 활용사업규모	68,667
	문화유산 활용단체의 총 매출	18,000
	타부처의 활용사업(문화체육관광부)	404,800
총계		859,816

표 103 문화재 활용사업의 매출액 합산 규모

(2) 현재 문화재 활용사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초기 시장 형성단계로 보고 있으나, 사업이 안정화되어 직접매출과 간접매출로서 약 859,816백만원의 사업규모로 정착된다면, 1,620,98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153,745백만원의 수입유발효과, 685,787백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1,042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수입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합계	1,620,985	153,745	685,787	21,042

표 104 문화재 활용사업 전반의 경제적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소수점은 표현하지 않음

문화 및 기타서비스	생산유발효과 (백만원)	수입유발효과 (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백만원)	취업유발효과 (명)
농림수산물	16,054	3,575	8,873	398
광산품	489	44,768	276	1
음식료품	41,871	5,017	6,650	125
섬유 및 가죽제품	18,399	4,116	4,296	81
목재 및 종이, 인쇄	17,423	4,205	4,717	84
석탄 및 석유제품	30,405	14,868	1,974	2
화학제품	85,243	16,516	16,860	119
비금속광물제품	3,544	1,438	981	8
1차금속제품	26,201	7,427	3,601	21
금속제품	19,812	2,398	6,025	51
기계 및 장비	18,398	6,841	5,228	62
전기 및 전자기기	46,527	13,848	12,731	75
정밀기기	3,933	2,423	1,127	14
운송장비	65,038	4,742	14,534	127
기타 제조업제품 및 임가공	19,692	3,907	8,338	139
전력, 가스 및 증기	53,915	7	14,421	41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7,373	0.8	3,404	35
건설	3,134	1	1,080	25
도소매서비스	56,211	568	28,482	788
운송서비스	23,534	2,869	8,416	25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39,195	643	14,766	667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36,471	1,924	15,968	202
금융 및 보험서비스	39,990	880	21,260	215
부동산 및 임대	26,570	828	19,800	9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15,228	3,870	8,677	164
사업지원서비스	20,381	5,260	13,684	491
공공행정 및 국방	4,926	83	3,642	38
교육서비스	539	4	398	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3,058	3	1,559	43
문화 및 기타서비스	877,421	705	434,004	16,653
합계	1,620,985	153,745	685,787	21,042

표 105 문화재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2017)

발행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042-481-4743 <http://www.cha.go.kr>
연구처 :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2길 3, 3층
☎ 02-719-1495, (FAX) 02-719-1497
인쇄처 : 피오디나라
발행일 : 2017년 11월 24일

© 2017·문화재청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